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Ⅳ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임길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조명식 예산분석관
안은주 예산분석관
우형규 예산분석관
문소희 예산분석관

지 원 | 장유진 행정실무관
강채현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Ⅳ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차 례

CONTENTS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I. 예산안 개요 / 5

1. 현 황 ····· 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0

II. 주요 사업 분석 / 12

〈일반회계〉

1.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 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 ····· 12
2. 공공협력사업(ODA)의 사업일정 개선 및 예산 조정 필요 ····· 15
3. K-라운지 구축 사업의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 18
4. 국별협력사업(ODA)의 예산 조정 및 사업관리 내실화 필요 ····· 21
   4-1.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및 사업관리 내실화 필요 ····· 22
   4-2.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 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25
   4-3.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28
5. 국별협력사업(ODA) 과목구조 개편 타당성 검토 필요 ····· 30
6.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인원 확대 및 선발방식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 37
7. 외교정보 데이터 추가 탑재 사업의 법적 요건 및 추진가능성 검토 필요 ····· 42

CONTENTS

[재외동포청]

I. 예산안 개요 / 47

1. 현 황 ····· 4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4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49

II. 주요 사업 분석 / 51

〈일반회계〉

1.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 회계연도 내 추진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직무구성 개편 필요 ····· 51
2.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증액 편성에 부합하는 결과보고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필요 ··· 57
3.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예산 확정 전 지자체 사전선정 방식 개선 필요 ·· 61

[통일부]

I. 예산안 개요 / 67

1. 현 황 ····· 6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7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73

CONTENTS

II. 주요 사업 분석 / 75

〈일반회계〉

1. 한반도 평화데이터의 차별성 확보 및 공개방안 구체화 필요 ····· 75
2. 동북아평화자료원 기획전시실 설치 예산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 80
3. 제2하나원 기능 전환에 따른 사업 운영의 적정성 검토 필요 ····· 86
4.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 점검 및 운영체계 정비 필요 ···· 93

〈남북협력기금〉

5. 교육·학술 협력사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필요 ····· 102
6. 경협기반(융자) 사업의 증액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 1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 예산안 개요 / 111

1. 현 황 ····· 11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1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12

CONTENTS

국방위원회

[국방부]

I. 예산안 개요 / 117

1. 현 황 ····· 11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2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23

II. 주요 사업 분석 / 127

〈일반회계〉

1. 군인 처우개선 현안분석 ····· 127
   1-1.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군인 처우개선 정책 추진 필요 등 ····· 129
   1-2. 적금 미가입자에 대한 2년차 정부지원금 감액 필요 등 ····· 140
   1-3. 병 단체 상해보험 추진 시 고려사항 ····· 146
2. 국방부 인공지능 프로그램 현안 분석 ····· 154
   2-1. 사전타당성 검토 미진행 상태에서 국회 제출된 다족형 로봇 사업 문제점 등 ····· 155
   2-2. AI기반 의료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연계한 군 의료 AI 활용계획 구체화 필요 ····· 164
   2-3. 국방 드론 인증기술 및 제도 운영관련 고려사항 ····· 168
3. 군구조개편 예산안 분석 ····· 176
   3-1.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 추진 시 고려사항 ····· 177
   3-2. 상비예비군 예산안 적정규모 조정 필요 ····· 182

CONTENTS

4. 군배상금 예산안의 규모 검토 필요 ····· 186
5. 장비획득 사업의 계약 체결 현황을 고려한 감액 필요 ····· 193
6.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급여 관련 고려사항 ····· 198
6-1. 공무직근로자 적정임금 보장과정에서 체계적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201
6-2.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등 ····· 207
7. 광주 군 공항 임시배치를 위한 시설사업 예산안 분석 ····· 212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8.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예정부지 내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예산안 분석 ···· 223

[병무청]

I. 예산안 개요 / 229

1. 현 황 ····· 22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3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231

II. 주요 사업 분석 / 232

〈일반회계〉

1. 에이전틱 AI기반 상담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 232
2. 사회복무요원 지도교육 계획인원에 대한 면밀한 추계 필요 ····· 238

[방위사업청] / 243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외교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국제교류기금으로 구성된다.

외교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4,49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69억원(3.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746억원, 국제교류기금 753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57,381	363,931	363,931	374,596	10,665	2.9
- 일반회계	357,381	363,931	363,931	374,596	10,665	2.9
기 금	65,188	69,028	69,028	75,310	6,282	9.1
- 국제교류기금	65,188	69,028	69,028	75,310	6,282	9.1
합 계	422,569	432,959	432,959	449,906	16,947	3.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외교부

외교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조 7,03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64억원(2.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조 6,518억원, 국제교류기금 515억원이다.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107,895	3,562,057	3,563,735	3,651,770	88,035	2.5
- 일반회계	4,107,895	3,562,057	3,563,735	3,651,770	88,035	2.5
기 금	66,209	53,120	53,120	51,486	△1,634	△3.1
- 국제교류기금	66,209	53,120	53,120	51,486	△1,634	△3.1
합 계	4,174,104	3,615,177	3,616,855	3,703,256	86,401	2.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외교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외교부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외교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3,746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7억원 (2.9%) 증가하였다.

[2027년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57,381	363,931	363,931	374,596	10,665	2.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외교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3조 6,51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80억원 (2.5%) 증가하였다.

[2027년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107,895	3,562,057	3,563,735	3,651,770	88,035	2.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외교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제교류기금으로만 구성된다.

외교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581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222억원(16.4%) 증가하였다.

[2027년도 외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제교류기금	115,345	135,806	135,806	158,051	22,245	16.4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외교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다.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16억원을 예탁하고, 639억원의 예탁원금 및 예탁이자를 회수한다.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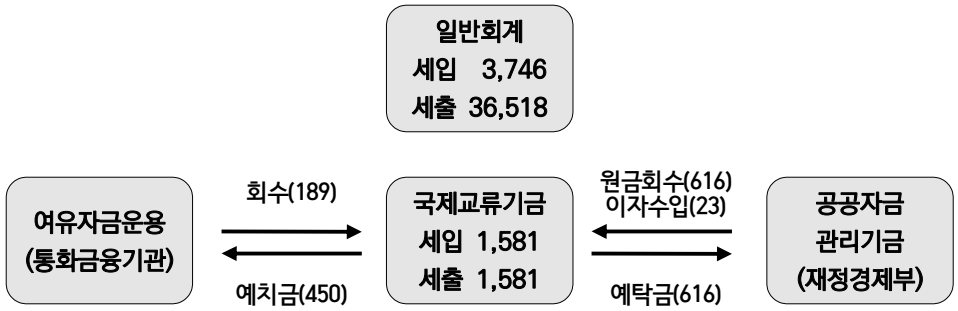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자료 : 외교부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외교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ODA 예산이 감액되었고(2026년 2조 1,861억원 → 2027년 2조 1,642억원), ② K-이니셔티브 기반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6년 323억원 → 2027년 384억원), ③ 2028 G20 의장국, 2027년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29차 환경보호위원회 예산 등 국제회의 개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다(61억원).

2027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별협력사업(ODA)은 집행실적 및 공정률이 저조한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사업종료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별 공정률과 추진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관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은 지방청년 및 재외공관의 수요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고, 지역별 지원·추천 현황에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규모 및 선발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 추가 탑재 사업은 해외 인물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와 관계기관의 데이터 제공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 추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규모 및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외교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61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2027년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29차 환경보호위원회 개최' 사업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환경보호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및 제29차 환경보호위원회(CEP)의 개최를 위한 사업이고, '2028 G20 의장국' 사업은 우리나라의 2028 G20 의장국 수임을 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G20 준비기획단의 운영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2027년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29차 환경보호위원회 개최	3,852
	2028 G20 의장국	2,281
합 계		6,133

자료: 외교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공협력사업,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등이 있다.

①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은 외교·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② 공공협력사업에는 KOICA 중심 무상원조 사업·예산 통합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③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은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관련 분담금 확대에 따라 증액되었다.

[외교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1)]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개)	정상 및 총리외교	28,993	28,993	65,328	36,335	125.3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1,644	11,644	26,240	14,596	125.4
	공공협력사업	33,778	33,778	64,280	30,502	90.3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58,526	58,526	110,515	51,989	88.8
	중동·중앙아 지역 국별협력사업	55,537	55,537	100,222	44,685	80.5
	글로벌 보건 기여	55,200	55,200	89,400	34,200	62.0
	재외공관 시설정비 및 관리사업	6,117	6,117	9,728	3,611	59.0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3,021	3,021	4,607	1,586	52.5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1,789	1,789	2,684	895	50.0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2,488	2,488	3,478	990	39.8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961	961	1,314	353	36.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Ⅱ 주요 사업 분석

1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 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사업[1]은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의 폐지(2025.1.1.)에 따라 항공권 구매 시 미리 지불한 출국납부금 환급 및 환급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8억 8,300만원(93.6%)이 감액된 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	11,630	11,630	747	△10,883	△93.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외교부는 출국납부금 환급 시스템이 10월에 개통되고, 확보한 개인정보가 당초 예상한 600만건의 25%에 불과하여 2026년도 예산의 상당액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7년도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3.)에 따라 외교부 소관 출국납부금의 부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출국납부금은 3,000원을 감면하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5-405

였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국한 사람에게 출국납부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6월 말 환급시스템을 개통하여 출국납부금을 반환하고 있는 반면, 외교부는 환급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2026년 7월 말에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스템은 2026년 10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사업 진행 경과]

구분	일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청	2026.3.5.
개인정보 관련 법령 검토 및 자문	2026.5.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2026.7.22.
환급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2026.7.31.~2027.7.31.
개인정보 영향평가	2026.8.3.~9.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2026.8.20.
환급 시스템 오픈 및 환급 개시	2026.10.

자료: 외교부 제출 자료 재구성

외교부는 2026년도 예산 편성 당시 환급대상을 약 600만명으로 예상하여 환급금 6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확보한 개인정보는 145만 7,596건으로 당초 예상 규모의 약 2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환급금은 최대 약 15억원이며, 시스템 구축비 등을 포함하여 2026년도 예산 116억 3,000만원 중 약 70억 7,2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부는 출국납부금 환급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월 예산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6·2027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사업 예산(일반용역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예산안
	예산	집행(예정)액	이월예상액	
환급 시스템 구축비	5,030	2,458	2,572	747
출국납부금 환급금	6,000 (1,000원×600만명)	1,500 (1,000원×150만명)	4,500	-
징수위탁수수료	600	600	-	-
계	11,630	4,558	7,072	747

자료: 외교부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환급청구권에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를 고려하면 향후 수년간 시스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환급 규모와 향후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급시스템 구축·운영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하고, 환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공협력사업(ODA)의 사업일정 개선 및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공공협력사업(ODA)[1]은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 및 우리 정부 ODA의 가시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내 공공 파트너와의 협력 기반 통합적 ODA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5억 200만원(90%)이 증액된 64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공공협력사업(ODA)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협력사업(ODA)	13,865	33,778	33,778	64,280	30,502	90.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공공협력사업(ODA)은 약정 체결 및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사업비 교부 시기와 실집행 시기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일정을 개선하는 한편,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7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공부문이 한국국제협력단 플랫폼을 활용하여 ODA 사업에 참여하고, 선발된 공공기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이 사업을 공동 수행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1-405

이러한 통합적 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함께 공공협력사업의 공모 경쟁률이 높고 공공부문의 참여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는 2027년 공공협력사업을 예비사업 40건, 본사업 51건 등 총 91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도 공공협력사업(ODA) 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 본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공협력사업(ODA)		33,778	64,280	30,502	90.3
공공협력 예비사업	소계	7,458 (33건×226.0백만원)	6,000 (40건×150.0백만원)	△1,458	△19.5
	신규	2,850 (20건×142.5백만원)	3,000 (20건×150.0백만원)	150	5.3
	계속	4,608 (13건×354.5백만원)	3,000 (20건×150.0백만원)	△1,608	△34.9
공공협력 본사업	소계	24,520 (21건×1,167.6백만원)	56,100 (51건×1,100.0백만원)	31,580	128.8
	신규	15,000 (12건×1,250.0백만원)	33,000 (30건×1,100.0백만원)	18,000	120.0
	계속	9,520 (9건×1,057.8백만원)	23,100 (21건×1,100.0백만원)	13,580	142.6
융합ODA 연계 지원		1,800 (1식×1,800백만원)	2,180 (1식×2,180백만원)	380	21.1

자료: 외교부

그러나 2026년 공공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8월 말 기준 예비사업 31건 중 18건, 본사업 18건 중 14건 등 전체 49건 중 32건은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액이 없는 예비사업 18건은 모두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본사업도 집행액이 없는 14건 중 9건이 약정 미체결 상태로, 전체 49건 중 절반 이상인 27건이 아직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2026년도 8월 말 기준 공공협력사업(ODA) 집행액 0원 사업 현황]

(단위: 건)

구분	사업수	집행액 '0'원 사업(약정 미체결)
예비사업	31	18(18)
신 규	18	18(18)
계 속	13	-(-)
본사업	18	14(9)
신 규	9	9(9)
계 속	9	5(-)
계	49	32(27)

자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은 공공협력사업의 발굴부터 착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예비사업(Q-DEEP)-파일럿사업-본사업의 3단계 추진체계를 2026년부터 예비사업(Q-DEEP)-본사업의 2단계 체계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추진체계 개편 첫해인 2026년 8월 말 현재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이 약정조차 체결되지 않은 것은 추진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사업 착수 지연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예비사업은 후속 본사업의 발굴 및 구체화를 위한 단계라는 점에서 예비사업의 추진 지연은 향후 본사업의 적기 착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은 3분기에 공모가 진행되었고, 4분기에 약정체결이 예상되는 만큼, 약정이 체결되면 공공기관에 1년분의 사업비를 일시에 교부할 계획이므로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분기에 약정을 체결하고 1년분의 사업비를 일시에 교부하면, 당해 연도 집행액에는 반영되나 공공기관의 실제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은 다음 연도로 미뤄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예산 회계연도와 실제 사업 집행 주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공공협력사업의 공모 및 약정 체결 시기를 앞당기는 등 사업 추진일정을 개선하여 예산이 편성·교부되는 회계연도와 사업비의 실집행 주기를 일치시키고, 이를 토대로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7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K-라운지 구축 사업의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K-라운지 구축 사업[1]은 재외공관의 공용공간을 한국 감성과 문화를 소개하는 K-라운지로 리모델링하여 재외공관의 K-컬처 수출 지원 및 K-이니셔티브 확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K-라운지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2,126	2,488	2,488	3,478	990	39.8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	767	804	804	1,294	490	60.9
K-라운지 구축	-	-	-	600	6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외교부는 K-라운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2개 재외공관의 출입통로, 대기실, 민원실 등 공용공간에 한국 콘텐츠, 라이프 스타일 및 감성을 소개하는 LED 월, 전통문양으로 꾸며진 상품 전시공간 등이 있는 K-라운지를 조성하고, 한국 가구, IT 가전, 인테리어 소품, 뷰티 상품 등을 배치하여 우리 기업 상품을 홍보하는 쇼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631-401의 내내역사업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현지인의 문화체험 및 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 30개국에서 35개 한국문화원과 7개 문화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특히 2026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 중국 베이징·상하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등 6개 재외문화원에 글로벌 K-존을 조성하여 K-푸드, K-패션, K-뷰티 등 다양한 소비재 상품을 전시·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스웨덴, 스페인, 독일, 인도네시아 등 4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외교부도 재외공관 접견실 등에 한국의 미술품·공예품 등을 전시하는 재외공관 문화 전시장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한국 문화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유사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시 콘텐츠 및 홍보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K-라운지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K-라운지 사업과 유사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K-라운지	재외공관 전시장화 사업	글로벌 K-존
수행주체	외교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내용	재외공관 공용공간에 한국 가구, 가전, 뷰티 상품 등 전시	재외공관 접견실 등에 한국의 미술품·공예품 등 전시	한국적 문화상품, 패션, 뷰티 상품 등 전시·체험, 문화예술 행사
2026년도 사업추진 실적	-	108개 공관, 953점 (국립현대미술관 임차)	6개소 조성
2027년도 예산안	600 (2개 공관×300)	350 (110개 공관×3.2)	12,600 ·기존 K-존 운영 및 개선: 6,000 ·신규 K-존 조성: 6,600

자료: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K-라운지는 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운영·관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컬처는 콘텐츠와 유행의 변화가 빠르므로 전시·체험 콘텐츠의 주기적인 교체·보완이 필요하고, LED 월 등 시설·장비의 유지·보수에도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문화 전시장화 사업 및 글로벌 K-존 등 유사 사업과의 연계·차별화를 통해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향후 콘텐츠 교체 및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등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국별협력사업(ODA)의 예산 조정 및 사업관리 내실화 필요

가. 현 황

아시아·태평양지역,[1] 아프리카지역,[2] 중남미지역,[3] 중동·중앙아시아지역[4] 국별협력사업(ODA)은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일치하는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국가별 협력전략 기반의 맞춤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해당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1,700만원(0.6%)이 감액된 4,58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국별협력사업(ODA)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별협력사업(ODA)	189,340	200,492	200,492	186,135	△14,357	△7.2
아프리카지역 국별협력사업(ODA)	147,496	154,513	154,513	124,480	△30,033	△19.4
중남미지역 국별협력사업(ODA)	42,968	50,498	50,498	47,586	△2,912	△5.8
중동·중앙아지역 국별협력사업(ODA)	61,354	55,537	55,537	100,222	44,685	80.5
계	441,158	461,040	461,040	458,423	△2,617	△0.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1-401

2) 코드: 일반회계 2431-402

3) 코드: 일반회계 2431-403

4) 코드: 일반회계 2431-404

4-1.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및 사업관리 내실화 필요

가. 현 황

한국국제협력단이 2027년도에 추진할 국별협력사업은 총 285건으로, 이 중 9건의 신규사업을 제외한 276건의 사업은 2026년에 이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7년도 계속사업의 2026년 8월 말 기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276건의 사업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201건(72.8%)이며, 이 중 집행률이 25% 미만인 사업은 149건(54.0%)으로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도 계속사업의 2026년 8월 말 기준 집행률 현황]

(단위: 건, %)

구분	사업수	비율
집행률 50% 미만	201	72.8
집행률 25% 미만	149	54.0
집행률 1% 미만	54	19.6

자료: 외교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분석의견

한국국제협력단은 국별협력사업[1]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향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7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사업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별 공정률과 추진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1)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프리카지역, 중남미지역, 중동·중앙아지역 국별협력사업만 해당

2026년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1% 미만인 54개 사업 중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협의의사록 체결 및 사업수행자 입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의 지연에 따른 31건의 사업은 관련 절차가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 일정이 차년도로 순연되고 2026년도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는 등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6년도 8월 말 기준 집행률 1% 미만 사업]

(단위: 건, %)

집행부진 사유	사업수	비율
수원국, 사업수행자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활동 지연	14	25.9
사업수행자 입찰 지연	9	16.7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8	14.8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 부진	23	42.6
계	54	100

자료: 외교부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2027년도에 사업 종료 예정인 사업은 총 67건으로, 2026년 8월 말 기준 공정률[2]이 50% 미만인 사업이 19건이다. 이들 사업은 남은 사업기간에 비해 공정률이 저조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초 계획된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ODA 사업은 평균 3~5년간 수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기간, 예산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종료예정 당해연도 혹은 직전년도에 계획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기간별 공정률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관련 절차가 연내 완료될 수 있는지와 2027년도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한편, 사업 종료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별 공정률과 추진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관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2) 총사업비 중 사업 시작연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투입된 사업비 비율

[2027년 종료계획 사업 중 공정률 5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

연번	수원국	사업명	공정률
1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 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23~'27/1,395만불)	9.9
2	인도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21~'27/200만불)	10.6
3	피지	피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육 역량강화사업('23~'27/977만불)	15.8
4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도로청 관리대상 전역 교량 스마트 유지관리기술 역량강화 ('24~'27/885만불)	24.0
5	피지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22~'27/1,000만불)	20.8
6	카메룬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22~'27/823만불)	49.7
7	파키스탄	파키스탄 펀잡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탄시 홍수방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24~'27/1,000만불)	19.7
8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가죽 및 가죽제품 경쟁력 강화 사업('22~'27/1,000만불)	40.0
9	페루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3~'27/850만불)	25.1
10	캄보디아	캄보디아 ICT 분야 직업기술훈련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환경구축 사업 ('23~'27/800만불)	45.0
11	피지	피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23~'27/700만불)	35.6
12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펠릭스 우푸에 부아니대학교 ICT 교육역량 강화 및 ICT 혁신센터 설립 사업('23~'27/995만불)	29.6
13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린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전기차 전환사업 ('24~'27/1,100만불)	16.3
14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가축 품종개량 및 인공수정인력 역량강화사업('23~'27/750만불)	32.6
15	베트남	베트남 국가계획 집행 모니터링평가(M&E) 개선 컨설팅 및 IT 시스템 구축사업('22~'27/300만불)	20.7
16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 ('24~'27/700만불)	20.4
17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시설 구축을 통한 경찰역량 강화사업 ('23~'27/600만불)	32.3
18	케냐	케냐 여성 고용 증진 및 친환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사업('25~'27/850만불)	43.9
1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25~'27/300만불)	11.0

주: 1. 2026년 8월 말 기준

자료: 외교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2.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 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 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1]은 우즈베키스탄 상하원 방송시스템 구축, 지역·시군의회 연계방송·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관계자 역량강화로 의회 디지털전환·투명성·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억 8,900만원(172%)이 증액된 8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 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동·중앙아지역 국별협력사업(ODA)	61,354	55,537	55,537	100,222	44,685	80
일반프로그램	8,513	9,862	9,862	16,191	6,329	64.2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 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	1,794	3,308	3,308	8,997	5,689	17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1-404의 내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 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 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은 2023년에 착수한 사업으로, 당초 하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수원국이 상·하원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후 2025년 2월에 사업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예산 집행액은 1백만원이고, 사업 착수 이후 2026년 8월 말까지의 누적 집행액은 17억 9,800만원으로 총사업비 180억 7,500만원 대비 공정률이 9.9%이다.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 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

(단위: 백만원, %)

착수연도	종료연도	총사업비	2026년			2027년 예산안	누적 집행액[1]	공정률[2]
			예산현액	배정액	집행액[1]			
2023	2027	18,075	3,308	3,308	1	8,997	1,798	9.9

주: 1) 2026년 8월 말 기준
2) 총사업비 중 사업 시작연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투입된 사업비 비율
자료: 외교부 제출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26년 말까지 기자재 대금 13억원과 사업수행기관에 지급할 기성금 15억원 등 총 28억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누적 집행액은 45억 9,800만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약 25.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러한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사업 종료연도인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 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3]
예산액	50	757	1,814	3,308	8,997	3,185
배정액[1]	50	21	1,814	3,308	-	-
집행액[2]	2	2	1,794	1	-	-

주: 1) 외교부에서 한국국제협력단에 실제 배정한 금액
2) 2026년은 8월 말 기준
3) 사업 연장 시 예산액
자료: 외교부 제출 자료 재구성

외교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8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80억원은 상·하원 및 지역 14개 의회에 설치할 전산 기자재 구입비다. 기자재는 발주 이후 제작·납품, 현지 운송 및 설치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외교부는 단계별 추진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 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상·하원 및 지역 14개 의회 전산 기자재	8,000
물류비	600
PMC 전문가 파견	397
계	8,997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4-3.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1]은 국립재활센터 구축 및 재활의료 전문인력 강화를 통한 피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100만원(47.1%)이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별협력사업(ODA)	189,340	200,492	200,492	186,135	△14,357	△7.2
보건회복력 프로그램	25,454	32,214	32,214	41,833	9,619	29.9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	428	3,399	3,399	5,000	1,601	47.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은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기간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 추진일정과 연차별 재정소요를 토대로 예산액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에 착수한 사업으로, 2023년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에 환차손에 따른 시공예산 초과에 따라 수원국 분담사항 변경 및 협의의사록 수정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현지 시공사 계약 유찰 등으로 추가 지연되면서 2025년 12월에 시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1-401의 내내역사업

그러나 2026년도에 집행된 예산은 8월 말 기준 2억 5,200만원으로, 사업 착수 이후 2026년 8월 말까지의 누적 집행액은 23억 4,700만원으로 총사업비 113억원 대비 20.8%이다.

외교부는 2026년 말까지 시공 기성금 및 감리비 등 총 21억 8,0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2]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해당 금액이 모두 집행되더라도 누적 집행액은 45억 2,700만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약 40.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5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총사업비의 4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과거 집행 실적, 2026년 말 예상 공정률, 외교부가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7년도에 편성된 50억원을 회계연도 내 실제 집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을 반영한 연차별 공정계획과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연도별로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 사업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3]
예산액	50	817	1,300	3,380	3,399	5,000	1,270
배정액[1]	50	759	879	429	3,399	-	-
집행액[2]	49	744	874	428	252	-	-

주: 1) 외교부에서 한국국제협력단에 실제 배정한 금액
2) 2026년 8월 말 기준
3) 사업 연장 시 예산액
자료: 외교부 제출 자료 재구성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 사업]

(단위: 백만원, %)

착수연도	종료연도	총사업비	2026년			2027년	누적	공정률[2]
			예산현액	배정액	집행액[1]	예산안	집행액[1]	
2022	2027	11,300	3,399	3,399	252	5,000	2,347	20.8

주: 1) 2026년 8월 말 기준
2) 총사업비 중 사업 시작연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투입된 사업비 비율
자료: 외교부 제출 자료 재구성

2) 2026년 10월 10일 기준

5 국별협력사업(ODA) 과목구조 개편 타당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국별협력사업(ODA)[1]은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일치하는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국가별 협력전략 기반의 맞춤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6억 4,400만원(4.8%)이 증액된 5,35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국별협력사업(ODA)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별협력사업(ODA)	475,729	511,024	511,024	535,668	24,644	4.8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별협력사업(ODA)	189,340	200,492	200,492	186,135	△14,357	△7.2
아프리카지역 국별협력사업(ODA)	147,496	154,513	154,513	124,480	△30,033	△19.4
중남미지역 국별협력사업(ODA)	42,968	50,498	50,498	47,586	△2,912	△5.8
중동·중앙아지역 국별협력사업(ODA)	61,354	55,537	55,537	100,222	44,685	80.5
공공협력사업(ODA)	13,865	33,778	33,778	64,280	30,502	90.3
소규모 무상원조(ODA)	20,706	16,206	16,206	12,965	△3,241	△2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1-401, 402, 403, 404, 405, 406

나. 분석의견

국회는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해 ODA 예산을 '국가 단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였고, 집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전용·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정부는 집행 신축성 등을 이유로 이를 다시 '지역 단위 세부사업'으로 상향 통합하였는데, 이는 부처의 자체 예산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정부 내부의 재정규율 및 국회의 예산심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별협력사업은 수원국을 특정하여 추진되는 양자 ODA 사업으로서, 아시아 및 태평양·아프리카·중남미·중동CIS 등 지역별 국가원조로 4개의 단위사업과 31개의 국가별 세부사업, 개별 ODA 프로젝트는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 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외교부는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2026~2030)」의 4대 전략목표인 ① 기술·디지털 혁신, ② 보건회복력, ③ 기후·에너지 대응, ④ 지속가능·안전 지역개발에 대한 재원배분 및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7년부터 국별협력사업의 사업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4개의 지역별 단위사업을 하나의 '국별협력사업'으로 통합하고,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중앙아 등 4개 지역을 세부사업으로, 각 지역별 세부사업 아래에는 4대 전략목표에 따른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내역사업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개별 ODA 프로젝트는 내내역사업으로 관리하게 된다.

[ODA 사업구조개편 중 국별협력사업 부분]

개편 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아·태지역 국가원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세부사업 13개[1)]	ODA 프로젝트
아프리카 국가원조	가나, 에티오피아 등 세부사업 8개[1)]	ODA 프로젝트
중남미 지역 국가원조	콜롬비아 등 세부사업 5개[1)]	ODA 프로젝트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우즈베키스탄 등 세부사업 5개[1)]	ODA 프로젝트

개편 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국별협력 사업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별협력사업	4개 지역 공통 ○ 기술디지털 혁신 프로그램 ○ 보건회복력 프로그램 ○ 기후·에너지 대응 프로그램 ○ 지속가능·안전 지역 개발프로그램 ○ 일반 프로그램
	아프리카지역 국별협력사업	
	중남미지역 국별협력사업	
	중동·중앙아지역 국별협력사업	
	공공협력사업	○ 공공협력 예비사업 ○ 공공협력 본사업 ○ 융합 ODA 연계 지원
	소규모 무상원조	○ 아시아태평양지역 ○ 아프리카지역 ○ 중남미지역 ○ 중동중앙아지역

주: 1) 다자성양자 사업,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 소규모무상원조사업, 개발패키지형성컨설팅 사업은 제외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거 한국국제협력단 예산은 1개의 단위사업 아래 전액 출연금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전용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체전용을 통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9년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이·전용 과다 (주의)	○ 과도한 이·전용 및 예산의 초과집행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침해 ○ 외교통상부의 이·전용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ODA와 국제기구분담금을 외교통상부 예산과 별도로 계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의 전용 규모가 예산의 10%에 달하는 것은 규모가 과다하여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외교통상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내부의 예산조율 및 예산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전용률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원국별 재원배분과 사업별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통제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2011년도부터 국가별 협력 단위사업 아래 4개 지역별 원조를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2013년도부터는 4개 지역별 원조를 단위사업으로 상향하고 수원국별 원조를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과목 구조를 개편하였다.

[국가별 ODA 사업 과목구조 개편 추이]

<table>
<tr><th colspan="2">2010</th><th colspan="2">2011~2012</th><th colspan="2">2013~2026</th><th colspan="2">2027</th></tr>
<tr><th>단위사업</th><th>세부사업</th><th>단위사업</th><th>세부사업</th><th>단위사업</th><th>세부사업</th><th>단위사업</th><th>세부사업</th></tr>
<tr><td rowspan="2">한국 국제 협력단 출연</td><td>한국 국제 협력단 출연</td><td rowspan="4">국가별 협력</td><td>아·태지역 국가원조</td><td>아·태지역 국가원조</td><td>국가 ODA</td><td rowspan="8">국별 협력 사업</td><td>아·태지역 국별협력</td></tr>
<tr><td>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추진</td><td>아프리카 국가원조</td><td>아프리카 국가원조</td><td>국가 ODA</td><td>아프리카 국별협력</td></tr>
<tr><td></td><td>중남미 지역 국가원조</td><td>중남미 지역 국가원조</td><td>국가 ODA</td><td>중남미지역 국별협력</td></tr>
<tr><td></td><td>중동CIS 지역 국가원조</td><td>중동CIS 지역 국가원조</td><td>국가 ODA</td><td>중동중앙아 지역 국별협력</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공공협력 사업</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소규모 무상원조</td></tr>
</table>

자료: 외교부 제출 자료 재구성

그러나 국별협력사업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전용조정 규모는 2022년 1,225억 3,700만원에서 2025년 2,549억 7,800만원으로 108.1%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그 규모가 당초 본예산 6,238억 9,600만원의 40.9%이다.

[2022~2026년 연도별 국별협력사업 전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수)	본예산 (A)	전년도 이월액	전용·조정액 증액(B)	전용·조정액 감액	전용·조정액 전용·조정규모(B-A)	추경 및 미교부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년 (377건)	428,284	4,668	+61,875	△60,662	1,213 122,537	△41,860	392,305	371,534	1,368	19,403
2023년 (394건)	518,988	1,368	+82,316	△92,856	△10,540 175,172	△32,922	476,894	455,493	2,586	18,815
2024년 (423건)	602,050	2,586	+98,955	△99,663	△708 198,618	△50,820	553,109	537,214	2,865	13,030
2025년 (445건)	623,896	2,865	+121,251	△133,727	△12,476 254,978	△21,870	592,414	563,603	4,632	24,180
2026년 (437건)	580,008	4,632	+39,076	△39,076	0 78,152	-	584,640	268,609	-	-

주: 1.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사업시행계획 기준에 명시된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 기준
2. 소규모·분쟁취약·사업효과성·사업행정비 제외,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 및 실집행액 기준
3. 2025년 사업 445건 중 취소사업 20건 포함
4. 전용조정규모: 전용조정증액과 감액의 절댓값의 합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이에 국회는 결산심사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원국의 정정 불안, 협정 미체결 등에 따른 연도 중 사업 취소, 과다한 이월·불용 및 부처·시행기관의 자의적 사업계획 변경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와 같이 국별협력사업은 국회의 실효성 있는 예산심의와 집행과정에서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의 세부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세분화해 왔으나, 최근 국별협력사업의 규모 확대와 함께 전용·조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국별협력사업 관련 시정요구사항]

구분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2024 결산	국별협력사업의 집행부진 원인 및 사전검토·현지 관리 강화 필요 (제도개선)	○ 외교부는 국별협력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법·제도 요건 및 선행절차, 현지 정세, 행정절차 소요기간,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예비조사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사업 일정에 반영할 것
	국별협력사업의 종료보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규정 개선 필요(제도개선)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국별협력사업 종료보고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종료연도의 ODA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것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원국으로부터 제출받는 평가자료의 접수 및 검토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국별협력사업 종료보고 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2023 결산	국가별 협력사업(ODA) 예산의 조정 최소화 필요(주의)	○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연도 내 집행가능한 금액을 추계하여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과도한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것
	국가별 협력사업(ODA)의 철저한 사업관리방안 마련 필요(시정)	○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 ODA 사업의 실질적 집행정보를 제공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 배정하는 방식을 시정하며, 사업의 지연요소를 면밀히 관리할 것
2022 결산	ODA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예산 조정 최소화 필요 (주의)	○ 한국국제협력단은 면밀한 예산 검토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조정을 최소화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에 적정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외교부는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원국 사업추진 여건 및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조정을 최소화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적정 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ODA 사업관리의 강화 필요 (제도개선)	○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국가별 협력사업의 명목집행률과 실제 진행상황 간의 괴리를 면밀히 확인하고 실질적인 집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ODA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부터 지역별 단위사업을 하나의 '국별협력사업'으로 통합하고 지역별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하향할 경우, 지역 간 재원배분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부처의 자체적인 예산 조정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 내부의 재정규율 및 국회의 예산심의·확정에 따른 구속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외교부가 추진하는 4대 전략목표별 재원 배분 및 성과관리는 예산과목을 통폐합하지 않더라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분야별 집계·관리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별협력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대규모 전용·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가별 재원배분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과목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예산안 심사 시 수원국별 세부 예산배분계획을 함께 제출하고, 회계연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조정 및 사업비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산 심사 시에는 수원국별 당초 예산액, 변경액, 실집행액, 이월액 및 불용액 등을 포함한 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실효성 있는 예산심의 및 사후 감독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별 예산·집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할 필요가 있다.

6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인원 확대 및 선발방식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가. 현 황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1]은 재외공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과 지방청년의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4,600만원(60%)이 증액된 1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외교 역량강화	14,599	18,857	18,857	20,883	2,026	10.7
국민 공공외교	2,163	3,945	3,945	3,891	△54	△1.4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	910	910	1,456	546	6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첫째,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은 지방청년 및 재외공관의 수요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고, 지역별 지원·추천 현황에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규모 및 선발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631-403의 내내역사업

외교부는 2026년부터 지방청년을 재외공관에 6개월간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파견인원을 5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재외공관의 파견수요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선발규모를 50명에서 35명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전체 지원자 109명 대비 선발인원 35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약 3대 1로, 다른 유사 청년 해외파견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과 유사 사업의 2026년도 경쟁률]

(단위: 명)

구분	외교부			KOTRA 해외무역관 청년인턴사업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KOICA 영프로페셔널(해외)	
선발인원	35	100	51	39
응시인원	109	1,802	968	185
경쟁률	3:1	18:1	19:1	5:1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외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5명 내외의 지방청년을 추천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서울은 15명이 지원하여 5명이 추천됐지만, 세종·강원·충북·충남 등은 지원자 전원이 추천되는 등 지역별 지원자 수와 추천 현황에 편차가 나타났다. 특히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5개 지역(31.3%)은 지원자 수가 외교부가 요청한 추천 인원인 5명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 청년의 지원수요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별 지원수요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5명 내외를 추천하도록 할 경우, 지원자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에 추천 단계에서의 경쟁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외교부의 최종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추천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시·도별 지원자·추천자 및 파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지방자치단체		파견자	구분	지방자치단체		파견자
	지원자	추천자			지원자	추천자	
서울	15	5	2	부산	10	5	3
대구	6	5	2	광주	11	5	2
대전	7	5	2	울산	5	5	3
세종	1	1	1	경기	8	4	2
강원	4	4	2	충북	2	2	1
충남	4	4	2	전북	8	5	2
전남	7	5	2	경북	11	5	3
경남	2	1	1	제주	8	5	3

주: 선발인원 35명 중 2명이 파견을 포기하여 실제 파견인원은 33명
자료: 외교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외교부는 2013년부터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통해 매년 약 100명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의 재외공관별 배치·활용 현황과 지방청년인재 파견자와의 업무 차별성, 재외공관의 추가적인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청년인재 파견규모를 2027년 8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과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 비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th><th>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th></tr>
<tr><td colspan="2">연혁</td><td>2013년부터 시작</td><td>2026년부터 시작</td></tr>
<tr><td colspan="2">목적</td><td>공공외교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td><td>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활동 지원 및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한 지역인재로의 성장 도모</td></tr>
<tr><td colspan="2">선발인원</td><td>100명 내외</td><td>(2026년) 50명 내외/(2027년) 80명 내외</td></tr>
<tr><td colspan="2">활동기간</td><td colspan="2">파견일로부터 6개월</td></tr>
<tr><td rowspan="2">지원 자격</td><td>공통</td><td colspan="2">-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자
- 비자취득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td></tr>
<tr><td>추가</td><td></td><td>-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재 우선 선발</td></tr>
<tr><td colspan="2" rowspan="2">선발기준</td><td>(서류)
- 어학성적
- 가점부여사항 관련 서류
- 공관요청사항(컴퓨터 활용능력, 현지어 구사 등), 자기소개서 등

(면접)
-인성 및 기초소양
-업무능력, 어학능력
-현지적응, 공공외교 이해도</td><td>(공통 요건)
- 19세 이상 34세 이하
- 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영어시험 점수 보유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2외국어 공인시험점수(B1) 보유자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
- 각 지자체 소재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
- 학과 성적이 100점 환산 기준 80점 이상인 자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계획서 제출
- 자기소개서

(지역별 요건) 지자체 자체 결정
※ 지자체 청년프로그램 참여이력 등</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colspan="2">왕복항공료, 체재비,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의료지원비</td></tr>
</table>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파견수요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지방청년의 경쟁률이 다른 유사사업에 비해 낮으며 지역별 지원·추천 현황에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공공외교 현장실습원과의 업무 차별성 및 추가적인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 및 선발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파견자에게 왕복 항공료, 체재비, 의료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외교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청년에게 재외공관 근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브랜드의 해외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효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귀속된다는 점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외교부는 사업의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수혜 정도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 지원 금액 기준]

(단위: 만원)

권역	왕복 항공료 상한액	체재비(월)	의료지원비(월)	특수지수당(월)
동북/동남아시아	50	200~220	40~70	15~25
오세아니아/중앙아시아	90			
유럽/중동	130			
미주/아프리카	170			

자료: 외교부

7 외교정보 데이터 추가 탑재 사업의 법적 요건 및 추진가능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데이터 추가 탑재 사업[1]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 타 부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정제·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데이터 추가 탑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외교정보 DB 확장(정보화)	-	1,000	1,000	1,142	142	14.2
데이터 추가 탑재	-	-	-	320	32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데이터 추가 탑재 사업은 해외 인물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와 관계기관의 데이터 제공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 추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규모 및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2026년부터 분산되어 있는 해외 인물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외교정책 수립 및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031-507의 내역사업

2027년에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의 AI 활용·분석 기능 및 보안체계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품질관리와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타 부처 및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재국 전문가 등 해외 인물 데이터 10만 건(추정)을 추가로 정비·적재하기 위해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외교정보 DB 확장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내역사업명	외교정보 DB 2단계 확장	외교정보 DB기능 고도화	데이터 추가 탑재
예산액	1,000	822	320

자료: 외교부 제출 자료 재구성

그러나 동 사업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해외 인물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외교정보 DB에 적재·활용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정보의 제공·수집·이용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12. 개정)에 따르면 외국인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관계기관이 보유한 주재국 전문가 등의 해외 인물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지,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2]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한, 타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제공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2027년에 실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범위 및 규모가 불확실하며,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 인물정보의 제공·수집·이용에 관한 법적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확보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범위 및 규모를 구체화한 후, 이를 토대로 2027년도 사업의 추진가능성과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여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청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재외동포청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재외동포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0억 1,9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백만원(0.4%) 증가하였다.

[2027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53	1,015	1,015	1,019	4	0.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368억 7,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41억 5,900만원(21.4%) 증가하였다.

[2027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6,054	112,716	112,716	136,875	24,159	21.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재외동포청

한편, 재외동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재외동포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폐합 및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출연금 내 일부 사업이 감액된 한편(2026년 238억원 → 2027년 111억원), ② 고려인 강제이주 역사 재조명과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2026년 103억원→ 2027년 234억원), ③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6년 195억원 → 2027년 255억원), ④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다(34억원).

2027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예산 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이 재현되지 않도록 사업일정을 회계연도 내 완료가 가능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안정적 취업을 통한 재외동포청년의 국내정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직무구성을 교육대상자의 수요 및 취업시장 동향과 연계하여 재설계하고,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은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사후관리 미흡이 거듭 지적되어 왔고 개선 노력에도 미해소된 사항이 있어, 지원 규모 확대에 상응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과보고 이행·심의 반영체계의 개선계획을 확인하고 집행·관리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국회 예산 확정 이전에 차년도 지원 지자체를 사전 선정함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가 선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정체계를 재정비하여 성과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재외동포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108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은 동포DB 기반의 재외동포 커뮤니티, 통합민원 포털, 양방향 소통플랫폼을 종합 지원하는 서비스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26년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에 따라 센터에서 수행하던 재외동포 인재육성 및 재외동포 기록·전시사업이 기존 출연사업으로부터 분리 편성되었다.

[재외동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정보화)	3,421
	재외동포 인재육성	6,364
	재외동포 기록·전시사업	1,054
합 계		10,839

자료: 재외동포청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등이 있다.

①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사업은 '27년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 계기 정부 주도 기념사업 개최와 우즈벡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고, ②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대상 확대 및 사업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③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18년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통합전자 전자행정시스템(G4K)의 정보자원을 교체하는 내역사업이 신규 반영되었고, ④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동포사회의 권익신장 활동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재외동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1]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개)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377	377	1,114	737	195.5
	동포간담회 개최	1,799	1,799	5,927	4,128	229.5
	재외동포 기록·전시사업	154	154	1,054	900	584.4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6,796	6,796	9,499	2,703	39.8
	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구축	334	334	500	166	49.7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11,101	11,101	18,518	7,417	66.8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7,801	7,801	13,605	5,804	74.4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6,358	6,358	10,567	4,209	66.2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 강화	60	60	516	456	76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재외동포청

Ⅱ 주요 사업 분석

1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 회계연도 내 추진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직무구성 개편 필요

가. 현 황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1]은 인구절벽·산업 인력난에 대응하여 재외동포청년의 '선발-교육-취업-정착' 전(全)주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국내에 유치하여 취업훈련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과 동일한 8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외동포 인재육성	3,960	7,164	7,164	6,364	△800	△11.2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	-	845	845	845	-	-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재외동포청

나. 분석의견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은 국내 취업 및 정착을 희망하는 만 19~39세 재외동포청년을 대상[2]으로 국가·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교육·훈련과 숙식, 생활비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5032-302의 내역사업

2) 해외체류동포(① 외국 국적 보유자로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 ② 대한민국 국적 또는 거주국 영주권 보유자로서 거주국에서 초·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예정)한 자)를 우선 선발하되, 국내체류동포(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실제 체류 중인 자)도 요건 충족 시 10% 이내에서 선발 가능하다.

(월 30만원 이내), 편도항공료, 자격증 응시료 등을 약 10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종료 후 2년간 국내체류를 조건으로 부과한다. 2026년에는 26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027년 지원대상 계획은 32명이다.

첫째, 동 사업은 2026년과 같이 예산 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이 재현되지 않도록 선정절차와 교육기간을 압축하는 등 2027년도 사업 착수 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전체 사업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일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6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6년 2월까지 정책연구·사업준비를 거쳐 3~7월간 훈련기관 선정공고·심사 및 훈련생 선정을 마쳤다. 교육은 8월부터 운영 중이며, 10개월 과정에 따라 2027년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위탁기관과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60%인 선금 7억 2,100만원을 지급하였고,[3] 계약 종료시점인 2027년 6월에 지급 예정인 잔금 4억 8,1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된다.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 2026년 회계연도 추진 일정]

구분	추진 일정	소요기간
~'26년 2월	정책연구 진행, 사업 준비	2개월
'26년 3~4월	직업훈련기관 선정공고	5개월
'26년 4~5월	직업훈련기관 선정심사·선정 / 훈련생 신청 접수	
'26년 6~7월	직업훈련기관 계약 / 훈련생 심사·합격자 발표	
'26년 8월~**'27년 6월**	교육운영	10개월

자료: 재외동포청

3) 2026년도 공고금액은 1,321,900천원으로 당초 본예산(845,000천원)을 476,900천원 초과하였으며,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이 차액을 동일 세부사업 내 국내정착 학업지원 내역사업의 출연금을 전용하여 충당하였다. 실제 계약금액은 1,201,727,270원으로 공고금액 대비 120,172,73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위탁기관이 비영리법인(교육기관)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에 따른 것이다.

2027년도 사업이 2026년 사업 종료 후 착수되거나 2026년과 동일한 추진일정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이 회계연도를 넘겨 2028년 중반에 종료되는 구조가 재현되어 당해연도 예산이 사실상 익년도 상반기까지의 집행을 전제로 편성되는 방식이 매년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회계연도를 걸치는 설계는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4)]

2026년에 신규로 추진한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는 준비기간이 다소 소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향후 사업에서는 사업내용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자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위탁기관·참가자 선정절차 또한 2026년도 소요기간(약 5개월)보다 압축적으로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단축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은 총 10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며,[5)] 재외동포청은 일정 시간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교육기간을 설정하였다.[6)] 다만 10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법정 최소요건은 아니며, 교육과정을 재검토할 경우 단축될 여지가 있다. 현재, 교육과정은 주 5일(1일 8교시, 총 400분) 기준 한국어교육(1일 2교시, 100분)과 직무교육(1일 6교시, 300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1일 교육시간을 법정 상한(480분)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면 동일한 총 교육시간을 더 짧은 기간 내에 이수할 수 있어, 전체 교육기간이 현재의 10개월보다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7)] 재외동포청은 청년 참가자 다수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한국어교육을 배치하였다고 설명한다. 다만 한국어교육이 직무훈련을 보완하는 성격임을 감안하면, 그 시수 또한 유연하게 조정하여 전체 교육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8)]

---

4) 재외동포청 내 유사 사례로,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도 동계(冬季)연수를 익년도 1월에 실시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이월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하계·동계 순서 조정을 통한 회계연도 내 완료가 권고되었다.

5)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이 발주한 용역 제안요청서는 직업연수과정을 1일 5시간, 총 1,300시간 내외(주말 현장학습 포함)로, 한국어교육을 1일 1.5시간, 총 450시간 내외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8조제1호나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훈련시간이 1,200시간 이상인 과정의 100분의70 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해 기능사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1,200시간을 1일 8시간·주5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개월이면 이수가 가능하다.

8) 이 외의 공통프로그램으로 토요일에는 월 1~2회씩 현장체험(역사문화체험 중심)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직무교육으로 전환할 경우 주당 교육일수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전체 교육기간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 2026년 교육 커리큘럼]

구분	직무 교육		한국어 교육
	단계	한식조리, 제과제빵	
1개월	기초적응	실습실 적응·위생안전·기기 사용	초급
2~4개월	직무기초	직무별 기초공정 실습	지속
5~7개월	실무심화	직무별 심화제품·공정 실습	지속
8~10개월	자격대비 ·취업준비	자격시험 대비 및 응용과정	지속
주중 1일 기준	300분(50분×6교시)		100분(50분×2교시)

자료: 재외동포청

이처럼 선정절차 등 준비기간을 압축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 사업 전체를 해당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여지가 있는 만큼, 2027년도 사업 착수 전에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2026년과 같은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일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동일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 사업은 10개월여의 직무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을 통한 재외동포 청년의 국내정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만큼, 매년 공모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 일관된 기준 하에 직무구성을 교육대상자의 수요 및 국내 취업시장 동향과 연계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서비스 전문성이 축적된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동 사업의 교육 내용은 한식조리와 제과제빵으로 2개 과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참가자 다수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을 요건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육시간과 최소 2개 과정 이상 운영이라는 조건만 제시하고 구체적 교육분야는 지원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하였다.[9] 그 결과 한식조리·제과제빵 교육과정을 제시한 운영기관(재단법인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이 최종 선정되었다.

9)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외동포청년 취업지원사업 위탁운영 용역 제안요청서」(2026.4.)에서 제과제빵·호텔식음서비스·한식조리·뷰티(미용) 4개 과정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예시 외 과정 제안도 허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희망 직종·진로에 대한 직접 수요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10] 재외동포청은 동포청년의 한국어 능력과 국내 취업·정착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증 취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하나, 2026년 현재 운영 중인 훈련직종은 위탁기관이 제안한 교육과정에서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현행 훈련직종이 재외동포청년이 실제로 원하는 진로와 부합하는지, 2년의 국내체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 사업은 재외동포청년의 국내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단순히 국내 노동시장의 구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외국인력·계절근로자 도입정책과는 접근의 성격이 다르다. 단기간의 취업 성사 여부보다 장기적인 경력 형성과 안정적 국내정착 가능성을 기준으로 교육 직종을 선정해야 하며, 이는 사업 목적에 따른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직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연구용역('25년 11월~'26년 2월)을 진행하였으며, 기업 구인수요·지역 산업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11개 직종을 도출하였다.[11] 한식조리·제과제빵은 최종 도출된 11개 직종에 포함되지 않았다.[12]

[사전 연구용역으로 도출된 재외동포청년 취업직무교육 분야]

영역(대상유형)	선정 직종
첨단·지식기반(해외예비유입형)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주력수출·고숙련제조업(국내정착준비형)	조선해양공학기술자, 항공기·선박조립및검사원, 무역사무원, 생산및품질관리사무원
일반·기초산업(경력도약형)	물품이동장비조작원
지역기반·중숙련서비스업 (경력도약형/국내정착준비형)	요양보호사·간병인, 미용사, 동물사육사·관리사 / 보건의료서비스종사원, 통역가

자료: 재외동포청의 연구용역(김민규 외, 2026) 보고서를 기반으로 재구성

10) 재외동포청은 국내 주요 동포단체장 등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동포청년의 취업수요와 여건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고 설명한다.

11) 다만 이 용역연구 역시 전문가 자문·FGI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재외동포청년 당사자의 수요를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12) 재외동포청은 한식조리·제과제빵이 용역연구가 제안한 최종 11개 직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외동포청년 적합 후보 직종군(34종)에는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재외동포청은 매년 신규로 위탁기관을 공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훈련직종을 정책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고정하지 않고 그해 공모에 응한 기관이 제시하는 과정 중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직종 기준이 사전에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년 공모 결과에 따라 훈련직종이 좌우되는 현재의 구조가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구성 재설계에는 국내 노동시장 분석, 교육기관 선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구인기업 연계 등 고용서비스 전반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이 공모로 선정한 위탁기관 1개소가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을 전담하는 구조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심층상담, 기업 맞춤형 서비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청년 미래플러스 등 관련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13] 이러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만큼, 재외동포청이 동포청년 취업지원에 필요한 전문 기능을 별도로 구축하기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청은 예산·사업관리와 재외동포 모집·선발 등 특화 기능에 집중하고, 교육기관 선정·교육프로그램 개발·취업알선 등 전문적 운영은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수행하는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동 사업은 취업교육 지원 종료 후 2년간 국내체류 의무가 부과[14]되고 국내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원기간 종료 후 안정적 취업 실현이 사업 성과의 핵심 요건이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희망 직종·진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현재 제공 중인 훈련직종 간의 정합성을 점검하여 직무구성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전문성이 축적된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3) 고용노동부 유관사업은 다음과 같다(2027년도 예산안 기준)
1.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일반회계 1070-300, 11,028백만원)
- 구직자 취업지원: AI 기반 1:1 심층상담, 운영관서 55개소
- 기업 맞춤형 서비스: 운영관서 49개소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집단상담·취업특강 등 37종
-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운영: 2026.2.20. 7개소 출범, 2027년 10개소 운영 계획
2. 청년 미래플러스(일반회계 1051-308, 3,451백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사업으로, 구직·재직 청년(만 15~34세)을 대상으로 산업계 관련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직무교육·멘토링·취업연계를 진행한다.

14) 재외동포청은 모집공고 당시 수집한 전화·이메일 주소 등을 활용해 수시로 연락하여 체류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증액 편성에 부합하는 결과보고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1]은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권익신장 활동 및 동포사회 결속력 강화, 동포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단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3,300만원이 증액된 44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6,537	6,796	6,796	9,499	2,703	39.8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3,150	3,150	3,150	4,483	1,333	42.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재외동포청

나. 분석의견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은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관리체계 이행 미흡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편성에 상응하는 결과보고 이행·심의 반영체계의 실효성 제고 계획을 확인하고 집행·관리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은 재외동포단체(한인회·문화예술단체·경제단체·차세대단체·언론단체 등)가 추진하는 사업을 공모 심사를 거쳐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율을 신청 사업 총 소요액의 최대 50~80% 이내로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2] 2027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5034-301의 내역사업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년도 예산안은 지원단가와 지원건수를 증가하여 2026년 본예산(3,150백만원) 대비 42.3% 증액된 4,48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2027년도 예산증액 현황]

(단위: 원, 건, %)

구분	2026년(A)	2027년(B)	B-A	B-A/A
지원 단가	5,239,600	6,000,000	760,400	14.5
지원 건수	580	728	148	25.5

자료: 재외동포청 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동 사업은 정산·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이에 따른 부적절 지원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3] 재외동포청은 그때마다 제출기한 준수 안내, 중간점검, 지원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제시해 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기한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 관련하여 재외동포청 수요조사 안내문도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실적이 미비한 경우를 지원불가 사유로 명시하고, 특히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미비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 결과보고서 제출률은 2023년 85.6%에서 2025년 99.6%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2023년 결과보고서 미제출 90건 중 2024년 선정에서 배제된 건은 11건, 2024년 미제출 10건 중 2025년 선정 배제는 6건에 그쳐,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이 차년도 선정절차에 온전히 반영되고

3)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주요 시정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는 회계연도 내 지원단체의 정산·결산보고 이행 필요를 지적 받고, 결산 관리·감독 강화 예정을 조치 사항으로 보고하였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는 지원사업 관리체계 강화 필요(국내 단체 실적보고서 지연제출, 해외단체 기념성 행사 지원 시 심의 강화)를 지적 받고, 제출기한 준수 안내, 중간점검, 사업계획 구체성 검토 등을 조치 사항으로 보고하였다. 2023년 감사원 감사에는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교부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 정비 필요-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에도 부적절하게 지원한 사례확인을 지적 받고, 필수서류 제출 여부에 따른 지원기준 마련을 조치 사항으로 보고하였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제33조제1항제3호(요건 미비 시 반환 명령), 제33조제3항(일정 기간 지급 제한, 재량)

5) 2024년 1차·2차, 2025년 1차·2차 수요조사 안내문 모두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실적 미비를 지원 불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2023~2025년 사업에서 지원금 환수 실적도 없다. 법령과 자체 지침상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미제출에 대한 배제·환수가 일관되게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환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년도 미제출로 인한 해당연도 배제건수	사업선정 건수	결과보고서			
			제출 수	미제출 수 (미확인 수)	제출률	지원금 환수 건수
2023	5	628	538	90	85.6	0
2024	11	709	699	10	98.6	0
2025	6	685	682	3	99.6	0

자료: 재외동포청

사업 수행일정 구조상의 한계도 있다. 동 사업의 수행기간은 연중이며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익년도 1차 신청은 전년도 12월에 마감('25.12.3.~12.19.)되고 심의위원회는 2월 중('26.2.11.~12.)에 개최된다.[6] 특히 2차 수요조사는 매년 7월 시작되고 보조금 지급이 9월 중에야 이루어져(2025년 보조금 지급일은 9월 4일) 사업 개시 자체가 9월 이후로 늦어지는 구조이므로, 2차 지원분을 받아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는 다음 해 1차 신청·심의에 반영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 후 '즉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공관에 안내하고,[7] 즉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신청 단체가 직접 확인하는 '25~'26년 수요조사 안내문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라는 기준만 있을 뿐 연말 종료 사업의 즉시 제출이나 심의 전 제출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8] 신청 단체가 심의 일정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렵다.

---

6) '25년 1차 신청은 '24.11.27.~12.13.에 신청접수를 받았고, 심의위원회는 '25.2.17.에 개최되었다.

7) 재외동포협력총괄과-4503('25.11.28.) 「2025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공관 대상 공문)에 따르면, 사업(행사) 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 연말 사업은 종료 후 즉시 제출, 지연·미제출 시 차년도 심의에서 불이익(지원금 감액·지원 제외 등) 부과로 명시했다.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연간 추진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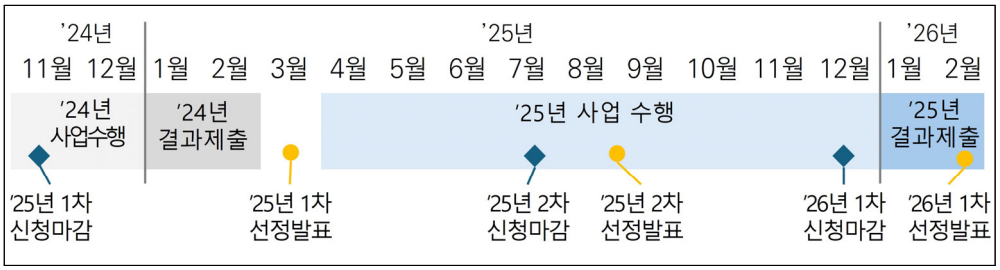

자료: 재외동포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종합하면 동 사업은 결과보고 미제출 및 이에 따른 부적절 지원에 대해 지적이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조치가 제시되었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치의 실효성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더욱이 2027년도 예산안은 지원단가와 지원건수를 동시에 늘려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관리체계가 보완되지 않은 채 규모가 확대될 경우 결과보고 미제출 및 부적절 지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될 우려가 있고, 이는 증액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증액 편성에 상응하는 결과보고 이행·심의 반영 체계의 개선계획을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증액된 지원 규모의 집행·관리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8) '25~'26년 1·2차 수요조사 안내문 모두 결과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연말 사업의 즉시 제출 및 심의 전 제출 기한에 대한 내용은 없다. (추가로 '24년 1차 안내는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 제출, '24년 2차 안내는 제출 기한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예산 확정 전 지자체 사전선정 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국내체류 동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굴한 맞춤형 사업을 경상보조 방식(국고보조율 5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600만원이 감액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883	1,311	1,311	1,045	△266	△20.3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690	956	956	690	△266	△27.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재외동포청

나. 분석의견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주기를 이유로 국회의 예산이 심의·확정되기 전에 차년도 예산 지원 대상 지자체를 사전 공모하여 확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차년도 지원대상자 선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집행 방식을 재정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2025년 15개 지자체 16개 사업, 2026년 17개 지자체 20개 사업을 추진했으며,[1] 2027년에는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18개 사업으로 축소 운영될 계획이다.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1) 2025년 추진 사업 기준, 맞춤형 생활교육(한국어, 노무, 세무, 금융 등), 직업훈련, 체육대회, 문화행사, 법률상식 및 범죄예방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연속 참여한 지자체는 12개로, 매년 신규 공모로 사업을 선정함에도 실질적으로는 계속사업에 가까운 운영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결과를 정량적으로 연계하여 평가하는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2025~2026년도 선정 현황]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2025년	2026년
경기	시흥시	○	○
	안산시	○	○
	안성시	-	○
경남	김해시	○	○
	양산시	○	○
경북	본청	○	○
	경주시	○(2개)	○(2개)
광주	본청	○	○
	광산구	○	○
인천	본청	○	○(2개)
	인천교육청	-	○
전북	본청	○	-
	군산시	○	○
충남	본청	-	○(2개)
	아산시	-	○
충북	청주시	○	-
	음성군	○	○
	제천시	○(2개)[1)]	○(2개)[1)]
사업 수		16개	20개

주. 1) 제천시는 제천시 단독 사업 1개와 충청북도·제천시 광역-기초 매칭 사업 1개로 구성됨
1. ○는 해당연도에 선정되어 본사업을 추진한 경우
자료: 재외동포청 자료를 재구성

재외동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일정(사업추진 전년도 10월 이전)을 이유로, 국회 예산이 심의·확정되기 이전인 전년도 하반기에 차년도 지원 지자체를 사전 공모·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2] 이에 따라 사업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업성과가 부진하더라도 그 결과가 차년도 선정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실제로 A지자체는 2025년도 사업결과 사업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성과지표 6개 중 4개를 미달성하였음에도 이미 2026년도 지원 대상으로 사전 확정되어 있었기에 2026년도 공모에 동일하게 재선정되었다. 또한 4개 지자체는 2025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내 결과보고 내용(보조사업의 목표, 사업수행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2026년도 사업에 재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사업 성과를 차년도 선정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결과보고서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므로 이를 반영하려면 차년도 지원 지자체 선정 시기가 지연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외동포청은 현행과 같이 사업추진 전년도에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되, 향후 연중 수시점검과 차년도 지원 지자체 공모 전 일괄 중간 성과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선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가 정해지기 전에 지원할 지자체부터 사전에 선정하는 방식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서는 수시점검과 중간 성과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사업 종료 전 일부 실적에 한정되어 최종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채 차년도 지원 지자체 선정이 이루어지므로, 성과 반영 절차(부실·미흡 시 감점 또는 신청자격 배제 등)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사업의 집행 방식(선정체계)을 재정비하여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 지원대상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가 당해연도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선정 이후 교부된 국비는 성립전예산으로, 매칭 지방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각각 집행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재정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328호, 2026.2.5., 일부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통일부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통일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기금(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된다.

통일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527억 7,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21억 5,000만원(29.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6억 8,100만원, 남북협력기금 510억 9,300만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통일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278	1,545	1,545	1,681	136	8.8
- 일반회계	1,278	1,545	1,545	1,681	136	8.8
기 금	20,636	39,079	39,079	51,093	12,014	30.7
- 남북협력기금	20,636	39,079	39,079	51,093	12,014	30.7
합 계	21,914	40,624	40,624	52,774	12,150	29.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통일부

통일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조 2,548억 7,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1억 7,300원(0.8%)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433억 7,900만원, 남북협력기금 1조 114억 9,500만원이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2027년도 예산안 통일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06,627	242,356	242,356	243,379	1,023	0.4
- 일반회계	206,627	242,356	242,356	243,379	1,023	0.4
기 금	19,134	1,002,345	1,002,345	1,011,495	9,150	0.9
- 남북협력기금	19,134	1,002,345	1,002,345	1,011,495	9,150	0.9
합 계	225,761	1,244,701	1,244,701	1,254,874	10,173	0.8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통일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통일부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통일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6억 8,1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3,600만원(8.8%) 증가하였다.

[2027년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78	1,545	1,545	1,681	136	8.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통일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2,433억 7,9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억 2,300만원(0.4%) 증가하였다.

[2027년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06,627	242,356	242,356	243,379	1,023	0.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통일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협력기금으로만 구성된다.

통일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1,819억 6,200만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2,458억 1,200만원(17.2%) 감소하였다.

[2027년도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남북협력기금	744,927	1,427,774	1,427,774	1,181,962	△245,812	△17.2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1,030억원이 전출된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347억원을 예수받고, 다시 688억원을 원금 및 이자로 상환한다.

[2027년도 통일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 통일부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통일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2026년 94억 2,500만원 → 2027년 102억 800만원)과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2026년 28억 6,000만원 → 2027년 33억 6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2026년 49억 1,300만원 → 2027년 68억 1,900만원)과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2026년 39억 5,700만원 → 2027년 106억 2,400만원)의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③ 동북아평화자료원 개관에 대비하여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고(2026년 15억 6,500만원 → 2027년 156억 6,200만원), ④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29억 1,600만원), 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다(36억 6,600만원).

2027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 개발·추진 사업은 한반도 평화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정책 판단과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평화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새로이 구축하려는 한반도 평화데이터는 기존 북한 관련 정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공개방식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은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한 동북아평화자료원의 개관 후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기획전시실 설치는 전시계획과 콘텐츠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조성계획과 개관 일정을 바탕으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부는 제2하나원을 (가칭)지역적응 통합지원센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내역이 세부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통일부의 기존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 전환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통일부는 통일교육위원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는데, 사업 규모 급증에 따른 집행가능성과 관리·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기존 학교통일교육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검토 및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통일부는 남북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2027년도 경협기반(융자) 사업의 계획액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하였으나, 2023년 이후 집행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7년 중 대규모 융자 집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남북 간 협의 진전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현 단계에서의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통일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88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사업은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에 대한 현장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적응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은 남북교류 및 분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체험형 평화공존 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다. 또한, 위성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과 통일부 누리집 운영(정보화) 사업은 2026년도에 다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던 정보화 사업을 각각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DMZ 평화적 이용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정보화 사업 개편에 따라 기존 DMZ 평화적 이용 사업에서 DMZ 통합시스템 운영과 판문점 견학 홈페이지 운영 등 정보화 사업을 따로 분리하여 신설한 사업이다.

[통일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4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2,916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3,666
	위성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02
	통일부 누리집 운영(정보화)	1,151
남북협력기금 (1개)	DMZ 평화적 이용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963

주: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6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자료: 통일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정세분석 역량 강화, 북한자료센터 운영,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경협기반(융자) 사업 등이 있다.

①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은 북한방송 수신관리시스템 구축 및 저장장치 증설 비용과 북한자료 공개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②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은 2027년 상반기 동북아평화자료원 개관에 따라 해외자료 수집 및 디지털 콘텐츠 확충, 기획전시실·전시체험실 운영, 자료원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어 예산이 대폭 증액 되었다. ③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은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12개교에서 22개교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지원을 늘리기 위한 비용이 반영되었고, ④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은 통일교육위원 위촉 규모 확대 계획에 따른 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경비 지원 등이 반영되어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내역사업이 증액되었으며, ⑤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당국 간 합의한 경협 사업의 단계적 추진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가 확대 반영되어 계획액이 증액되었다.

[통일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9개)	정세분석 역량 강화	3,332	3,674	342	10.3
	북한자료센터 운영	1,565	15,662	14,097	900.8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80	504	124	32.6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386	503	117	30.3
	학교 통일교육 강화	4,913	6,819	1,906	38.8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3,957	10,624	6,667	168.5
	통일교육 자료개발	2,424	3,259	835	34.4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484	976	492	101.7
	정책연구개발	438	600	162	37.0
남북협력기금 (1개)	경협기반(융자)	59,051	199,428	140,377	237.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II 주요 사업 분석

1 한반도 평화데이터의 차별성 확보 및 공개방안 구체화 필요

가. 현 황

한반도 평화공존전략 개발·추진 사업[1]은 한반도 평화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정책 판단과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평화데이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4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통일정책추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통일정책추진	976	1,330	1,330	1,575	245	18.4
한반도 평화공존전략 개발·추진	-	-	-	459	459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통일부

한반도 평화공존전략 개발·추진 사업은 한반도 평화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정책연구비 4억 5,300만원, 일반수용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다.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새로이 구축하려는 한반도 평화데이터가 기존 북한 관련 정보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공개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한반도 평화데이터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1031-300)의 내역사업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방향 및 상호 관계와 한국 국민들의 평화 인식을 정량화·구조화하여 정책 판단 및 학술연구에 활용가능한 공공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2] 이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증거 기반 정책 분석 및 결정을 통해 정책 일관성 확보, 대국민 대상 객관적 정보 제공 및 공론환경 조성, 평화 데이터 기반 학술·연구 생태계 구축 등을 도모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데이터 구축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ㅇ 한반도 평화 환경을 정량화·구조화하여 정책 판단 및 학술연구에 활용가능한 평화 데이터 인프라 구축
2. 필요성
   - ㅇ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기반 부재
     - 기존 평화 논의는 담론 중심으로 구성, 정책적으로 활용가능한 데이터 부족
   - ㅇ 데이터 기반 정책 대응 및 활용 체계 미흡
     - 한반도 현안의 민감성에 따른 해석 논쟁 및 신뢰성 공격 방지를 위해 객관적·중립적 분석 체계 마련
3. 구축 방안
   - ㅇ (방향) 담론 차원의 한반도 평화를 측정가능한 방식으로 구체화
   - ㅇ (대상) 한반도 평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방향 및 상호 관계 △한국 국민들의 평화 인식
     - ☞ 한반도 평화의 4대 분석 차원(갈등 및 긴장 관리, 사건 데이터, 인식 및 담론 변화, 평화 기반 및 역량)을 설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 ㅇ (방법)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국가 공식 문서와 언론 기반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자료 수집·축적 및 분석
   - ㅇ (공개 방식) 전체 데이터를 코드화하여 단계적으로 공개하고(저작권, 민감 정보 제외), 주기적으로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대국민·언론 제공
     - ☞ 상호작용형(인터랙티브) 웹사이트 개발(5백만원)
4. 기대효과
   - ㅇ 증거 기반 정책 분석 및 결정을 통해 정책 일관성 확보
   - ㅇ 대국민 대상 객관적 정보 제공 및 공론환경 조성
   - ㅇ 평화 데이터 기반 학술·연구 생태계 구축

자료: 통일부

2) 통일부는 2026년 한반도 평화 데이터 구축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의 4대 분석 차원(① 갈등·긴장 관리, ② 사건 데이터, ③ 인식·담론 변화, ④ 평화 기반·역량)을 설정하고, 한·북·미·중 공식문서와 국내외 언론, 인터넷·소셜미디어 자료를 수집·가공하여 한반도 평화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 측정을 위한 자료의 유형별 수집 체계]

국가	자료	주요 출처 (웹주소)	생산주기
[국가 공식문서]			
북한	최고지도자 연설	당대회·전원회의 등	비정기
	외무성 담화	http://www.mfa.gov.kp	비정기
	기타 공식문건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	비정기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https://www.whitehouse.gov	3~5년
	국방전략(NDS)	https://www.defense.gov	3~5년
	백악관 성명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	매일
	국무부 브리핑	https://www.state.gov/department-press-briefings	주 2~3회
	의회자료	https://www.congress.gov/	-
중국	국방·외교 백서	http://www.scio.gov.cn	수년 단위
	당대회 보고서	共产党员网(www.12371.cn)	5년
	외교부 브리핑	https://www.fmprc.gov.cn	매일
한국	정부 발표(통일부 등)	https://www.unikorea.go.kr	수시
	대통령실 발표	https://www.president.go.kr	수시
	국회 회의록	https://likms.assembly.go.kr	정기(회기별)
[언론 기반 빅데이터]			
국내 미디어	주요 일간지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매일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KCNA)	http://www.rodong.rep.kp http://www.kcna.kp	매일
국제 미디어	GDELT	https://www.gdeltproject.org	실시간
인터넷 검색	구글트렌드 네이버데이터랩	https://trends.google.com/trends/ https://developers.naver.com/docs/serviceapi/datalab/search/search.md	실시간
소셜 미디어	트위터(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https://x.com/ https://www.facebook.com/ https://www.instagram.com/	실시간

자료: 통일부

그런데 새로 구축하려는 한반도 평화데이터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요국의 정책 방향, 사건, 국민 인식 및 담론 등을 폭넓게 수집·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북한정보와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구체적인 수집대상 중 상당 부분이 통일부가 기존에 수집·관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북한·통일 관련 정보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요 수집경로가 공개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존 정보의 단순한 수집·재가공을 넘어 정책 판단 및 학술연구에 어떠한 차별화된 활용이 가능한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데이터가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북한 관련 데이터와 기능 및 활용 면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수록 범위, 수집·가공 방식, 구축 형식 등을 구체화하여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형(인터랙티브) 웹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나, 이와 관련된 세부 계획과 예산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통일부는 구축한 한반도 평화데이터 전체를 코드화하여 저작권 및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책방향, 국내 평화 인식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시각화하여 국민과 언론에 제공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부처 내부의 정책 판단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므로,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공개 시스템의 활용도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획한 데이터 공개 및 시각화 기능을 구현하기에 적정한 규모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 개발비가 정책연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3]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적정 비목에 편성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일부는 현재 '북한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동북아평화자료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도 새로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스템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3)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서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비용은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정보 공개 관련 시스템]

세부사업	사업목적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535-503)	◦ 동북아평화자료원 건립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운영관리체계를 위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26~'27년) 및 운영('27년~계속) ◦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료(북한, 일반 등)의 체계적 관리, 특수자료 취급기관 간 연계,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서비스 확대 등 추진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1533-502)	◦ 북한정보의 특수성·저작권 등을 고려, △비공개 자료를 포함한 「내부 분석 시스템」 △대국민 공개용 「북한정보 포털」 등 이원화하여 운영 ◦ 북한 「AI·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① 내부적으로 통일·북한 관련 AI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② 대외적으로는 「북한정보포털」을 통해 AI·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북한정보서비스 확충

자료: 통일부 자료 재편집

따라서 통일부는 기존 북한 관련 정보와 구별되는 평화데이터 고유의 성격과 구축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새로 구축하는 웹사이트가 북한정보포털이나 동북아평화자료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동북아평화자료원 기획전시실 설치 예산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가. 현 황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1]은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한 동북아평화자료원 건립이 완공되어 2027년에 개관함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0억 9,700만원이 증액된 15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북한자료센터 운영	874	1,565	1,565	15,662	14,097	900.8%
전시 및 홍보	-	-	-	4,141	4,141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2022년 2월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2024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6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2026년 10월 1일 현재 공정률은 86%이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535-308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동북아평화자료원 개관 기획전시실 설치를 위해 2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시계획과 콘텐츠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었고, 실내·외 공간에 동일한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조성계획과 개관 일정을 바탕으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자료센터[2]는 북한 발행 자료 및 국내외 통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하고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통일부는 북한자료센터를 북한 전문도서관이자 동북아 평화공존의 100여 년 역사를 전시·교육·연구·기록·공개·열람하는 평화 아카이브로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동북아평화자료원을 건립하고 있으며,[3][4] 2027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6월 말에 개관할 예정이다.

[동북아평화자료원 개요]

□ (건립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6(킨텍스 제2전시장 부근)
□ (건립규모) 부지 4,120㎡(1,246평), 건축연면적 8,463㎡(2,557평), 지하1·지상3층
□ (주요기능)
◦ (기록·아카이브) 100년의 동북아 평화공존 역사와 북한자료를 망라한 세계적 아카이브
◦ (전시) 동북아 평화 관련 기획·전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공존 공감대 확산
◦ (교육) 객관적 북한 이해 교육, 북한자료 특성을 고려한 평화 문해력 교육
◦ (연구) 동북아 평화와 북한전문가 육성, 연구 생태계 지원
◦ (공개) 북한자료(문헌·영상 등) 재분류와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열람) 일반국민·청소년·언론인·연구자 등 맞춤형 북한자료 열람서비스

자료: 통일부

2) 서초동 소재 국립중앙도서관 5층(259평)에 위치해 있는데, 2017년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이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3) 통일부는 향후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북한자료센터의 명칭을 동북아평화자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정세분석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통일부는 동북아평화자료원의 개관 및 운영을 위하여 자료확충 및 이용지원에 63억 7,700만원, 전시 및 홍보에 41억 4,100만원, 일반운영비에 18억 6,700만원, 시설운영비에 32억 7,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다.

[2027년도 북한자료센터 운영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상세내역	예산안
자료확충 및 이용지원 (6,377)	해외자료 수집	1,639
	유물자료 구입	1,000
	북한자료 구입	424
	자료 복원 및 수리	30
	개관장서 구입	400
	디지털콘텐츠 확충	2,884
전시 및 홍보 (4,141)	기획전시 운영	2,989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602
	개관행사	250
	자료원 홍보	300
일반운영비 (1,867)	북한자료 심의 재분류	126
	프로그램 운영	248
	공무직 인건비	412
	개인소장 희귀자료 구입	150
	지역 교육·문화시설 연계	50
	취급기관 및 지역 도서관 자료지원	210
	희망도서 구입	50
	개관 물품 구입	401
	기타 운영비	220
시설운영비 (3,277)	2년차 인테리어 사업	1,415
	시설운영 용역비	835
	각종 공공요금 납부	120
	보존서고 모빌렉 설치	633
	북한자료센터 이전	274
합 계		15,662

자료: 통일부

이 중 전시 및 홍보 내역사업에서는 동북아 평화 및 북한 발행 자료 등의 기획전시를 위해 기획전시실 설치 공사비 29억 8,900만원[5]을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획전시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공사비 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획전시실은 별도의 구조 변경이나 부지 조성 없이 로비·복도 및 중앙계단 등 실내 공용공간 175평과 주 출입구 진입광장, 조경 연계 유휴공간 등 실외 공간 161평을 활용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기획전시의 구체적인 구성 및 조성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공종별 세부 산출내역 대신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기획전시 10개 사업의 평균단가인 평당 890만원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북아평화자료원 기획전시 활용 공간 및 산출근거]

(단위: 평)

구분	활용공간	면적	조성방향
실내	지상 1~3층 로비·복도 중앙 계단(수직형 아트리움)	175	3개 층을 관통하는 수직형 아트리움 전시 현수형 설치물·다층 미디어 연출 중심
실외	주 출입구 진입광장 대지 내 조경 연계 유휴공간	161	진입 동선과 연계한 야외 전시 공간 조성 상징 조형물·야외 미디어·파빌리온형 전시
합계		336	

주: 1. 산출액 29억 8,900만원은 공사비(29억 8,000만원)와 조달수수료(900만원)의 합계와 같음
2. 통일부는 현재 계획 미확정으로 전시 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자료: 통일부

5) 조달수수료 900만원 포함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기획전시 사업 예산 및 평당 단가]

(단위: 평, 천원)

사업명(발주기관)	연도	면적 (a)	예산 (b)	평당예산 (b/a)
정읍시립미술관 개관10주년 특별기획전 대행	2025	54	290,000	5,370
성호박물관 기획전시 전시연출용역(경기 안산시)	2026	18	130,000	7,222
국립부산과학관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특별기획전(부산과학관)	2022	33	260,400	7,890
자원순환체험센터 홍보관 기획전시(서울 은평구)	2026	137	1,120,000	8,175
DDP 기획전시 설치·운영(서울디자인재단)	2025	97	800,000	8,247
용산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설계·제작(서울 용산구)	2023	18	149,500	8,305
자연사박물관 기획전(공룡 등) 제작·설치(서울 서대문구)	2024	17	147,000	8,64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앙아시아 기획전시 제작·설치(문체부)	2024	195	1,727,500	8,858
서울대학교 역사기록관 기획전시 설계·전시장 조성	2026	60	650,000	10,833
국립항공기상과학관 기획전시관·전시체험시설(기상청)	2024	53	800,000	15,094
10개 사업 평균				8,907

자료: 통일부

그러나 기획전시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단가 비교에 한계가 있다. 비교 사례 10개 사업의 평당 단가는 537만원에서 1,509만원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각각의 전시 방식이나 공간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기획전시 면적 336평 중 약 48%에 해당하는 161평이 실외 전시 공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실내·외의 공간 구성 방식이 다를 수 있음에도 단가가 동일하게 산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기획전시 사업의 평균단가가 예산안 산출의 적정성을 판단할 충분한 정보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획전시는 전시 내용과 조성방식에 따라 설치·제작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콘텐츠와 공간별 조성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통일부는 전시기획과 관련하여 2026년 12월에 조달청 발주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와 같은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1월에는 전시계획과 콘텐츠, 공간별 조성방식 등이 대부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기획전시 내용을 바탕으로 2027년 6월 말 개관 일정에 맞추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획전시실 설치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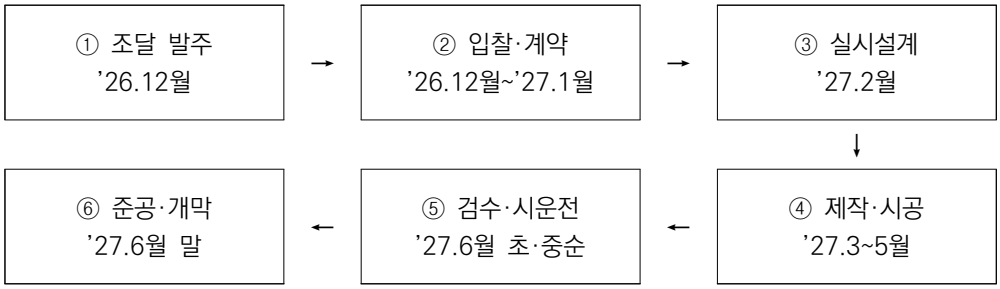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구체화된 기획전시의 공간별 조성계획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실내·외 등 공간의 성격에 따른 세부 산출근거를 확인하고, 2027년 6월 말 개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한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제2하나원 기능 전환에 따른 사업 운영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사업[1]은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 현장 관리 총괄 및 서비스 제공 인력 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29억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	-	-	2,916	2,916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제2하나원 관련 내역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제2하나원을 (가칭)지역적응 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신설하였으나, 일부 내역이 세부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통일부의 기존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 전환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2337-304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하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원 안성본원에서는 여자 교육생, 화천분소에서는 남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의 감소로 하나원 교육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남성 교육생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2026년 2월부터 남녀 기초교육생을 하나원 본원(안성)에서 통합 교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에서 제2하나원 교육훈련·시설 운영 내역사업을 폐지하고 제2하나원(화천)을 '(가칭)지역적응 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13~'25년 하나원 교육이수자 인원 및 성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남(화천분소)	여(안성본원)	합계	여성비율
2013	417	1,219	1,636	74.5
2014	362	1,179	1,541	76.5
2015	292	1,019	1,311	77.7
2016	330	1,198	1,528	78.4
2017	271	1,081	1,352	80.0
2018	198	991	1,189	83.3
2019	232	935	1,167	80.1
2020	127	310	437	70.9
2021	31	42	73	57.5
2022	29	30	59	50.8
2023	49	127	176	72.2
2024	27	227	254	89.4
2025	26	215	241	89.2
합계	2,391	8,573	10,964	75.42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으로 북향민 위기대응 현장 관리 3억 5,842만원, 북향민·지역사회·종사자 역량 강화 3억 566만원, 북향민 등 건강 지원 1억 1,960만원, 시설 운영 21억 3,242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 운영이 전체의 73.1%를 차지한다.

[제2하나원 관련 예산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예산	2027 예산안	증감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2,778	-	△2,778
- 제2하나원 교육훈련	768	-	△768
- 제2하나원 시설운영	2,010	-	△2,010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2337-304)	-	2,916	2,916
- 북향민 위기대응 현장 관리	-	358	358
- 북향민·지역사회·종사자 역량 강화	-	306	306
- 북향민 등 건강 지원	-	120	120
- 시설 운영	-	2,132	2,132
합 계	2,778	2,916	138

자료: 통일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국 초기 보호대상자(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 1년, 거주지 보호기간 5년)에게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는 시설인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감소와 5년 이상 장기 거주자 비중(97.5%)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설의 성격을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2)]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제5조(보호기준 등)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3.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프로세스]

구분		지원 사항
입국 전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 보호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입국 후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 보호조치 실시 • 조사 종료 후 사회적응교육 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하나원 정착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 심리상담, 우리사회 이해증진, 진로지도, 기초직업 훈련 • 초기 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5년)	• 사회안정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취업지원: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재단·민간 참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전국 25개소) 지정·운영 • 정착도우미(자원봉사자) 운영, 초기전입 및 적응지원 • 전문상담사 센터·재단 배치,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자료: 통일부

그런데 제2하나원의 기능을 지역적응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외에 지역주민을 포함하고 있는데, 동 시설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이라는 점에서 제2하나원의 전환되는 기능 및 목적과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4.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5.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편의시설 개방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4,800만원)의 문화예술 전시, 지역 인플루언서 대담, 열린 문화공간 운영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북향민 등 건강 지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으로서 의료 사각지대인 강원(화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의료봉사활동 정도의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약 65%가 수도권에 거주하여 화천 소재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7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세부 내역
북향민 위기대응 현장 관리 (358)	• 북향민 위기대응 관리체계 구축 98 - 지역자원 연계 거버넌스 구축, 지역자원 맵핑 조사 • 북향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260 - 취약계층 북향민 실태조사, 위기가구 정서안정 프로그램 운영
북향민·지역사회·종사자 역량 강화 (306)	• 지역적응 관련 지자체·민간 종사자 역량 제고 130 • 북향민 자격증 취득 교육 176
북향민 등 건강 지원 (120)	• 일반의원 개원 및 운영 43 • 공중보건의 진료장려금 24 • 촉탁의 및 대체진료 사례비 27 • 전산·보험청구 시스템 유지보수 20 • 진료 의약품 및 검사·처치 소모품 3 • 의료인 교육훈련비 3
시설 운영 (2,132)	• 편의시설 개방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48 - 문화예술 전시, 지역 인플루언서 대담,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활동, 열린 문화공간 운영 등 • 시설관리(인건비, 차량관리, 청사시설관리) 2,084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통일부의 기존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과 지원 내용이 중복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향민 위기대응 현장 관리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지역적응 관련 지자체·민간 종사자 역량 제고는 정착지원 종사자 교육, 편의시설 개방 및 소통 프로그램은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과 사업 성격이 유사해 보이고, 취약계층 북향민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남북하나재단이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3]와 조사 대상·내용 등이 중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의 조정·통합 및 협의 등을 통해 차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7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사업과 기존 사업의 유사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내역사업	예산안	내역사업	예산안
북향민 위기대응 현장 관리	358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117
지역적응 관련 지자체·민간 종사자 역량 제고	130	정착지원 종사자 교육	45
편의시설 개방 및 소통 프로그램	48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327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7.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이 외에도, 제2하나원 관련 내역사업의 폐지가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이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하나원과 제2하나원을 통합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감액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4] 비록 위기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된 두 내역사업의 예산 규모와 유사하게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제2하나원의 기존 시설을 활용할 필요성을 전제로 신규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분포와 실제 이용수요 등을 바탕으로 제2하나원의 기존 정착지원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시설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내역을 조정하는 한편 기능 전환 및 시설 개방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은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해 하나원과 제2하나원을 통합 운영하여 예산 절감 필요”, “예산편성 시 교육생의 실질적 인원 감소 폭이 예산에 반영 필요” 등의 사유로 감액 판정을 받았으며, 통일부는 후속 조치로 제2하나원 내역사업 폐지를 제시하였다.

4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 점검 및 운영체계 정비 필요

가. 현 황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사업[1]은 통일교육위원의 위촉·운영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사회통일교육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억원이 증액된 8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3,545	3,957	3,957	10,624	6,667	168.5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1,408	1,291	1,291	8,291	7,000	542.2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2]	50	52	52	7,052	7,000	13,461.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사업은 2026년 통일교육위원 운영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 확대·개편된 사업임
자료: 통일부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사업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억원이 증액되었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5031-309)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첫째, 통일부는 통일교육위원의 규모와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200만원에서 70억 5,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위원 위촉이 지연되고 있고 대규모 위원 운영에 따른 관리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집행가능성과 관리·운영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학교 통일교육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검토하여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기존 안보 중심 통일교육을 평화공존·민주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통일교육위원[2]을 학교 교사·교수 등 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위원 수를 기존 약 1천명에서 1만명 내외로 확대할 계획인데, 2026년 6월 현재 3,940명을 위촉하였으며, 연내 미위촉 교원·교수, 예비 교원(사범대, 교육대), 통일·북한학 전공자 등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2) 통일부는 2026년 6월 출범식 당시 25기 위원으로 3,940명을 우선 위촉했으며, 하반기에 6,000여 명을 추가 위촉하여 당해 연도에 우선 '1만 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제25기 통일교육위원 위촉 주요 내용]

□ 구성 방향
- 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의 통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교수 등 교육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

□ 주요 역할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전달자로서 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

□ 위촉 근거: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위촉 규모: 약 10,000명[1)]

□ 위촉 경과
- 교사·교수 등 교육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3,940명, 6월)하였음.
- 연내 미위촉 교원·교수, 예비 교원(사범대, 교육대), 통일·북한학 전공자 등 추가 위촉 예정

구분	인원	대상	활동 중점
24기	1,000명 내외	•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강사, 연구원 등 647명, 교수·교원 353명 등 1,000명 • 20대 이하 45명, 30대 99명, 40대 189명 50대 이상 669명	지역사회 통일 인식 제고
25기	10,000명 내외 (계획)	〈2026년 6월 위촉된 위원 기준〉 • 초중고 교원 3,086명, 대학교수 546명, 해외 한국학교 70명, 해외 한글학교 238명 • 20대 이하 151명, 30대 494명, 40대 932명, 50대 이상 2,363명	현장 교육 전문가 등이 교육할 수 있는 일반 국민대상 (청소년·청년 중심) 평화·통일·민주 시민교육 실시

주: 1) 당초 통일교육위원을 15,000명 내외로 위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만명으로 변경하였음
자료: 통일부 보도자료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편집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통일교육위원 활동경비 45억원(민간위탁사업비)을 중심으로 전체대회 및 역량강화, 교보재 지원, 포상금 등 총 7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6년 예산(5,200만원)이 위촉물품 제작과 활동 사례비 등 최소 경비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신규 사업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2027년도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위원 활동경비 (4,500)	• 강의·특강: 10만원×3,000명×4회 • 체험학습: 20만원×3,000명×3회 • 동아리 지도: 9만원×2,500명×4회 • 연구모임: 20만원×1,500명×2회	1,200 1,800 900 600
위탁사업비 (300)	• 위탁기관 운영비: 인건비 2.1억원, 운영비 0.9억원	300
전체대회 및 역량강화 (1,020)	• 전체대회(3천명 기준): 3억원 • 시도별 역량강화 연수: 18개 시도×200명×20만원	300 720
교보재 및 1030 프로젝트(550)	• 교육자료: 1만명×3만원 • 1030 평화공감 프로젝트: 40팀×500만원 + 사례 발표회	300 250
위원 관리시스템	• 위촉·활동실적·포상 관리 및 소통 플랫폼 구축	350
포상금	• 최우수 30명, 우수 60명, 장려 80명	230
기타	• 심사·모니터링 사례비, 안내자료, 여비 등	102
합 계		7,052

자료: 통일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동 사업은 위원 규모를 단기간에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 내용도 확장되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의 집행 가능성과 기존 학교 통일교육 사업과의 관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위원 위촉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내용과 예산을 일시에 대폭 확대한 만큼, 편성 규모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2026년 3월 15,000명 내외의 위원 위촉을 추진하면서 4월 중 위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6월에 3,940명을 우선 위촉하였고 하반기 추가 위촉을 통해 연내 1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3)]

3) 통일부는 2026년 6월 출범식 당시 25기 위원으로 3,940명을 우선 위촉했으며, 하반기에 6,000여 명을 추가 위촉하여 당해 연도에 우선 '1만 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제25기 통일교육위원 위촉 추진 경과]

시기	주요 내용
2026.3.	위촉 계획 발표: 15,000명 내외(국내 13,000명, 해외 2,000명), 4월 중 위촉 완료, 임기 5.1.부터 2년
2026.6.	출범식 및 1차 위촉: 3,940명(국내 3,632명, 해외 308명) 하반기 6,000여 명 추가 위촉으로 연내 1만 명 규모 확대 방침
2026.9.~	2차 위촉 후보자 추천 진행(임기 2026.11.1.~2028.5.31. 예정)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편성 규모의 타당성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위원에게 대규모 활동경비를 지원한 선례가 없고, 위원 위촉 자체는 2026년 예산 규모와 별개로 확대되고 있으나 2027년부터는 위촉에 그치지 않고 강의·특강, 체험학습, 동아리 지도, 연구모임 등 대규모 활동경비를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므로 실제 활동수요와 집행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촉·연수·활동 확인·정산·포상 등 관리 업무가 함께 늘어나는 만큼 사업을 일시에 확대할 경우 집행 부진이나 활동 실적의 확인·관리 및 정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관리·운영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25기 위원 구성과 활동 내용을 고려할 때 기존 학교 통일교육 사업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4] 지역협의회 사업과 일부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4) 「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5기 위원 1만 명은 초·중·고 교원, 교수, 예비교사 등 현장 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5] 기존 학교 통일교육 사업과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의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전담 강사를 통해[6] 민간 통일교육 전문가를 강사로 학교에 보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이 사업도 7억 7,900만원에서 15억 6,40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하였다.

위원 활동경비는 강의·특강, 체험학습, 동아리 지도 등을 지원하는 데 집행되고, 이는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활동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업은 제도적 성격에는 차이가 있으나,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고취에 사업 확대의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대상이나 활동 방식이 유사하여 사업 간 중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역할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과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비교]

구분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세부사업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2027년 예산안	활동경비 45억원(2026년 미편성)	15억 6,400만원(2026년 7억 7,900만원)
수행 인력	통일교육위원(국내 위원의 약 85%가 초·중·고 교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전담 강사
주요 활동	강의·특강, 체험학습, 동아리 지도, 연구모임	초·중·고 방문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산출 규모	강의 3,000명×4회, 체험학습 3,000명×3회 등	840개교×4명×2회
지원 단가	강의 회당 10만원, 체험학습 20만원, 동아리 지도 9만원	강사료 회당 17만 8,060원, 여비 6만 4,202원
최근 실적	신규	2,477회(2025년), 1,506회(2026.7월)

자료: 통일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5) 통일부, 「교육 현장과 함께하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제25기 통일교육위원 15,000명 위촉 추진」, 보도자료, 2026.3.13.

6) 코드: 일반회계(5031-308)의 내역사업

또한 민주평통은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7]을 통해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3억 4,800만원), 평화통일 시민교실(2억 4,400만원) 등 청소년·지역주민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7년에는 "자문위원·청소년·일반국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사업 확대"를 편성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해외 주니어평통 등 글로벌 평화통일 리더 양성 사업(8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8] 통일교육위원 역시 국내 학생과 해외 동포 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두 기관의 사업이 같은 대상에게 각각 추진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일교육위원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간 겸직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위원 규모 확대에 따라 겸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과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관련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통일부)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민주평통)
근거 및 성격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 통일교육 실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제29조, 대통령 자문·건의
수행 조직	통일교육위원(교사 중심, 해외 한국학교·한글학교 교사 포함)	국내 229개·해외 45개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주요 대상	초·중·고 학생 등 1020세대, 해외 동포 청소년	청소년, 지역주민, 해외 동포 청소년
2027년 관련 사업(예산안)	위원 활동경비 4,500 (강의·특강 1,200, 체험학습 1,800, 동아리 지도 900, 연구모임 600)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348 평화통일 시민교실 244 글로벌 평화통일 리더 양성 831(신규)
겸직 제한	없음	없음

자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 코드: 일반회계(1131-302)의 내역사업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7년도 예산안 개요」, 2026, 3쪽

둘째, 통일교육위원의 명칭 변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의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현재 모집하고 있는 통일교육위원에 대하여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하위규정의 정비를 통해 위원 운영 및 활동경비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9]는 '통일교육위원'을 법률상의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으로 변경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개정 등 적절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부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위원 활동경비의 지급·정산 및 활동실적 관리 업무를 사단법인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위탁하고,[10] 협의회 사무국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련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중 위탁기관 운영비]

□ 민간위탁사업비(320-02): 48억원
- 통일교육위원 활동비: 45억원
  - 활동 후 사후정산 지급
- 위탁기관 운영비: 3억원
  - 인건비(2.1억원): 사무총장(1명), 팀장(1명), 실무자(3명)
  - 운영비(0.9억원)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10)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런데 협의회는 약 70~90개의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연합기구로, 상임의장 1명, 이사 4명, 감사 1명과 상근 행정인력인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통일교육위원 1만 명 내외의 활동경비 지급·정산과 활동 실적 관리 등 지속적이고 대규모인 업무를 위탁받을 예정임을 고려할 때, 유사 업무 수행 경험과 현재의 인력·조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회가 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위탁기관의 수행 역량을 면밀히 점검하고, 학교 통일교육 및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사업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동일·유사 활동에 대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일교육위원의 명칭 변경을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와 위원 활동의 확인·정산을 위한 관리체계를 사업 시행 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교육·학술 협력사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필요

가. 현 황

교육·학술협력사업 지원 사업[1]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의 추진을 위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당초 계획 및 수정 계획 대비 13억 4,600만원이 증액된 3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회문화교류 지원	3,394	10,368	10,368	12,315	1,947	18.8
교육·학술 협력사업 지원	2,486	2,604	2,604	3,950	1,346	51.7

주: 1)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2028년 4월 법정 사업기한 내에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2027년도 계획액을 전년 대비 51.7% 증액하였으나, 현재 남북교류가 제한되어 공동편찬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동안 남북 공동편찬이라는 당초 취지에 따라 법정시한을 연장해 온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남북협력기금 2040-401의 내역사업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되어 2015년까지 남북 공동편찬회의가 25차례 개최되었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남북 공동편찬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남측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기존 합의원고를 정리하고 종이사전 가제본을 제작하는 한편, 전자사전 구축을 위한 원고 전산화와 교열 등을 계속해 왔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1. 사업 개요
   - ○ 사업 기간: 2005~2028.4.26.(23년)
   - ○ 사업 주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 사업상대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북측위원회
   - ○ 사업 내용: 《겨레말큰사전》편찬, 《전자 겨레말큰사전》구축, 대국민 홍보사업 등

2. 추진실적
   - ○ (남북 공동 사업)'04년 南 통일맞이-北 민화협간 합의, '05년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결성, 남북 공동 편찬작업 진행(공동편찬회의 '05~'15년 25회)
   - - 편찬사업회 설립('06.1월), 「편찬사업회법」 제정('07.4월), 남북협력기금 지원('05~) 등
   - ○ (종이사전 가제본 제작) '15년 이후 남측 단독으로 집필·교열·교정, 합의원고 정리 작업을 지속, 이를 토대로 대북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 제작('21.3월)
   - ○ (종이사전 편찬 준비) 남북 공동 올림말 선정(30만 7천 개), 올림말 집필(30만 7천 개), 남북 합의원고 작성(12만 5천 개), 교열(238,065개), 삽화(11,041점), 말뭉치 구축(3억 어절)
   - ○ (전자사전 편찬 준비) ISP 수립, 전자사전 모델 시안 연구, 언어정보 DB 구축, 교열 시스템 개발, 원고 전산화 및 교열(238,065개) 등
   - ○ (대국민 홍보사업) 도서 출판(6종), 앱 '남녘말 북녘말' 출시, 국제학술포럼(6회), 겨레말 TV, 교과서 수록(42종, 10과목) 등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7년도 교육·학술 협력사업 지원 계획액을 3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편찬사업비 17억 8,800만원과 경상경비 21억 6,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편찬사업비는 2026년 3억 6,200만원 대비 14억 2,600만원 증가(4.9배)한 반면 경상경비는 8,000만원 감소하여 증액분 전액이 편찬사업비에 집중되었으며, 편찬사업비 중에서는 종이사전 편찬비가 12억 5,700만원(70.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7년도 교육·학술 협력사업 지원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 계획(A)	2027 계획안(B)	B-A	(B-A)/A
편찬사업비[1)]	362	1,788	1,426	393.9
경상경비	2,242	2,162	△80	△3.6
합 계	2,604	3,950	1,346	51.7

주: 1) 2027년 편찬사업비 세부: 종이사전 편찬비 1,257, 전자겨레말큰사전 편찬비 286, 전문용어사전 편찬비 50, 남북공동회의비 및 남측편찬위원회비 38, 북측편찬비 60, 홍보사업비 97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학술협력사업 지원(겨레말큰사전편찬) 세부 산출내역]

세부내역	2026년	2027년	증감
종이사전편찬비	-	1,257	1,257
전자겨레말큰사전 편찬비	92	286	194
전문용어사전 편찬비	-	50	50
남측편찬위원회비	10	10	-
남북공동회의비	28	28	-
북측 편찬비	135	60	△75
홍보 사업비	97	97	-
경상경비	2,242	2,162	△80
소 계	2,604	3,950	1,346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사업기한이 2028년 4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어[2)] 사업 종료 전 종이사전 완간 및 전자사전 개통 등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8년에는 사업기한까지 4개월 정도만 남게 되므로 2027년이 사실상 마지막 회계연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 사업의 목적은 겨레말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을 도모하는 데 있으나,

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부칙 〈제8392호, 2007.4.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1년간 효력을 가진다.

남북 공동편찬회의는 2015년 12월 제25차 회의 이후 10년 가까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남측 단독으로 올림말 30만 7천 개에 대한 집필·교열을 진행하여 가제본을 제작하였으나, 이 중 남북 합의를 거친 원고는 12만 5천개(40.7%)에 그친다.

통일부의 향후 계획은 가제본을 토대로 북측과 일괄 합의하여 완간본을 발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2024년 중 이 사업의 최초 합의 주체였던 민족화해협의회를 포함한 대남 교류기구를 폐지하는 등 남북 교류에 호응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2028년 4월까지 북측과의 일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측편찬비, 남북공동회의비 등은 집행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북측과의 추가적인 합의 없이 기한 내 종이사전을 발간할 경우 남북 공동편찬이라는 사업의 당초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은 제정 당시 유효기간이 7년(2014년 4월까지)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편찬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3년, 2018년, 2021년 세 차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21년(2028년 4월 26일까지)으로 연장하여 왔는데, 이는 동 사업의 목적이 남북 공동편찬에 있는 만큼 남북 협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편찬사업회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되므로, 기한 내 결과물을 도출하더라도 전자사전의 운영·갱신 등 사후관리에 대한 검토도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남북 간 공동편찬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기한 내 결과물 도출을 위해 단기간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보다는, 남북 협의 가능성과 현재까지의 편찬 성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 남측에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결과물의 활용방안, 사업 종료 이후 전자사전 등의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라 2027년도 사업 규모 및 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6 경협기반(융자) 사업의 증액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경협기반(융자) 사업[1]은 사업의 공공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선사업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당초 계획 및 수정 계획 대비 1,40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99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경협기반(융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		B-A	(B-A)/A
경협기반(융자)	-	59,051	59,051	199,428	140,377	237.7

주: 1)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남북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2027년도 경협기반(융자) 사업의 계획액을 전년 대비 237.7% 증액하였으나, 2023년 이후 집행실적이 없고 2027년 중 대규모 융자 집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남북 간 협의 진전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현 단계에서의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철도·도로 등 대규모 사업에 신속히 재정을 투입하기 위하여 2027년도 동 사업의 계획액을 전년 대비 237.7%가 증액된 1,99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남북협력기금 3040-402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3·2024·2025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었고 2026년도에도 현재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집행 부진 사유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경색에 의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5년도에는 남북관계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동 사업에서 308억 3,100만원이 감액된 바 있다.

[경협기반(융자) 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3	180,025	-	180,025	-	180,025	-	-	180,025
2024	99,014	-	99,014	-	99,014	-	-	99,014
2025	59,051	△30,831	28,220	-	28,220	-	-	28,220
2026	59,051	-	59,051	-	59,051	-	-	59,051

자료: 통일부

또한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경협사업에 관한 남북 당국 간 협의 재개나 구체적인 융자 대상 사업의 확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도 유지되고 있다. 통일부 역시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2027년 중 대규모 융자 집행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여건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협의와 준비 상황, 사업 재개에 대비한 최소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 또한, 향후 남북관계 변화로 추가적인 융자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협의와 준비 상황, 사업 재개에 대비한 최소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 통일부는 기금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집행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 국회 보고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300만원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다.

[2027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	13	13	13	-	-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407억 3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5억 3,200만원(9.5%) 증가하였다.

[2027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4,840	37,171	37,171	40,703	3,532	9.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였고(2026년 61억원→2027년 70억원), ② 지출구조조정으로 기관지 제작, 평화통일 시민교실 등 5개 사업에서 15억원이 감액되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등이 있다.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증액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1)]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지역협의회 운영	13,382	13,382	15,789	2,407	18.0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6,093	6,093	7,006	913	15.0
	정보화사업 추진	437	437	446	9	2.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방위원회

국방부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군인연금기금, 군인복지기금)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조 7,761억 500만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6,363억 4,800만원(29.7%)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624억 5,300만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9,539억 9,200만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60억 5,500만원, 군인연금기금 8,125억 8,200만원, 군인복지기금 6,210억 2,300만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국방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592,591	722,017	722,017	1,342,500	620,483	85.9
- 일반회계	333,201	374,472	374,472	362,453	△12,019	△3.2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37,041	313,172	313,172	953,992	640,820	204.6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2,349	34,373	34,373	26,055	△8,318	△24.2
기 금	1,433,914	1,417,740	1,417,740	1,433,605	15,865	1.1
- 군인연금기금	809,447	840,139	840,139	812,582	△27,557	△3.3
- 군인복지기금	624,467	577,601	577,601	621,023	43,422	7.5
합 계	2,026,505	2,139,757	2,139,757	2,776,105	636,348	29.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방부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50조 415억 9,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조 8,098억 2,500만원(5.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4조 1,400억 6,100만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700억 8,200만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40억 7,400만원, 군인연금기금 4조 8,645억 9,400만원, 군인복지기금 5,927억 8,300만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국방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9,230,211	41,948,998	41,948,998	44,584,217	2,635,219	6.3
- 일반회계	38,593,265	41,394,109	41,394,109	44,140,061	2,745,952	6.6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554,472	498,402	498,402	370,082	△128,320	△25.7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82,474	56,487	56,487	74,074	17,587	31.1
기 금	5,067,783	5,282,771	5,282,771	5,457,377	174,606	3.3
- 군인연금기금	4,551,425	4,709,931	4,709,931	4,864,594	154,663	3.3
- 군인복지기금	516,358	572,840	572,840	592,783	19,943	3.5
합 계	44,297,994	47,231,769	47,231,769	50,041,594	2,809,825	5.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방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4,998억 5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294억 1,900만원(18.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628억 8,700만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9,774억 9,700만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594억 2,100만원이다.

[2027년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34,345	381,782	381,782	362,887	△18,895	△4.9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615,122	530,336	530,336	977,497	447,161	84.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92,906	358,268	358,268	159,421	△198,847	△55.5
합 계	1,542,373	1,270,386	1,270,386	1,499,805	229,419	18.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50조 1,982억 9,9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조 4,107억 8,900만원(7.3%)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9조 613억 8,100만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9,774억 9,700만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594억 2,100만원이다.

[2027년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2,669,084	45,898,906	45,898,906	49,061,381	3,162,475	6.9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601,601	530,336	530,336	977,497	447,161	84.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85,969	358,268	358,268	159,421	△198,847	△55.5
합 계	43,856,654	46,787,510	46,787,510	50,198,299	3,410,789	7.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국방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인연금기금, 군인복지기금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조 4,217억 5,800만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3,387억 8,800만원(5.6%)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군인연금기금 5조 3,865억 3,200만원, 군인복지기금 1조 352억 2,600만원이다.

[2027년도 국방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군인연금기금	4,668,174	5,099,683	5,099,683	5,386,532	286,849	5.6
군인복지기금	1,178,601	983,287	983,287	1,035,226	51,939	5.3
합 계	5,846,775	6,082,970	6,082,970	6,421,758	338,788	5.6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3,410억원, 군인연금기금으로 4조 5,240억원, 군인복지기금으로 564억원이 전출되며,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4억원이 전입된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458억원을 예수원리금 상환, 1,616억원을 예탁하며, 기금예탁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235억원을 회수한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 0원(상환기일 미도래), 853억원의 예수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334억원을 예수한다.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주거지원계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0억원의 예수원금과 25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한다.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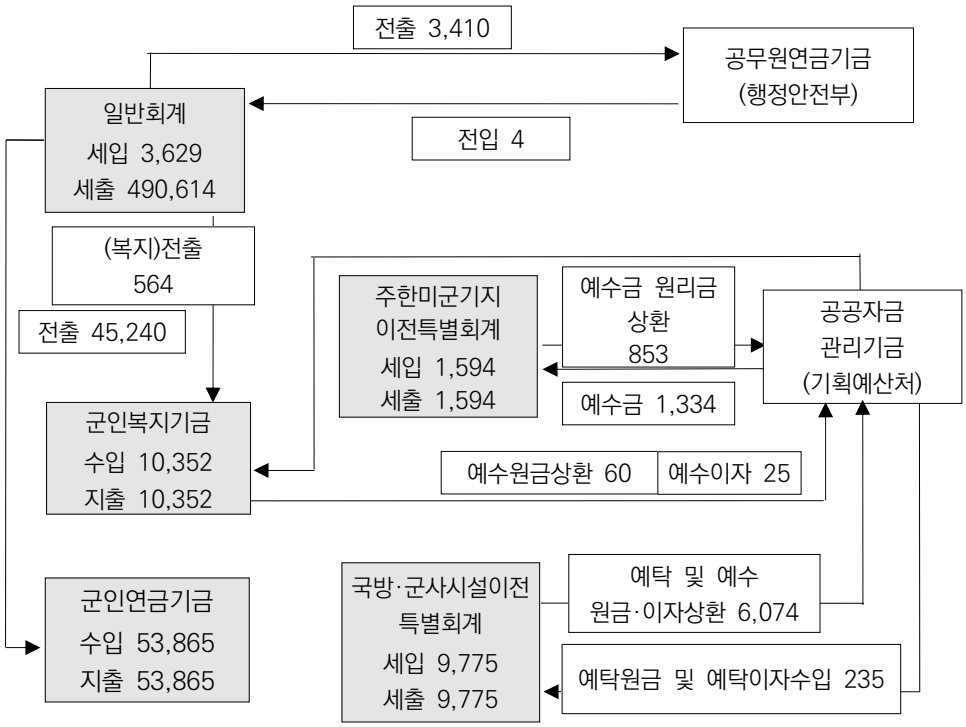

주: 총계기준
자료 : 국방부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국방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간부 처우와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병사에 대한 복지를 강화(초급간부 처우개선율 5.9%, 영외 거주간부 급식비 '26년 13만원→' 27년 16만원, 병 단체 상해보험 도입)하였으며, ② 드론/대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26년 6,788억원→'27년 8,061억원)하였으며, ③ 첨단전력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AI 및 유·무인 복합체계 예산을 증액('26년 4,986억원→'27년 7,727억원)하였다.

2027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병역자원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군 간부 처우개선이 중장기적 계획보다는 단년도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금성 지원 확대방식으로 진행되어, 정책의 일관성·예상가능성 및 재정소요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중 장기적 시계열 하에서 일관성 있는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력지원체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로 제출하기 이전에 선행연구, 사전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하지만, D.AX프로젝트 중 다족형로봇 구매사업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구매물량의 적정성, 다족형 로봇의 성능, 장기적인 활용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영역별 성격을 고려하여 확대속도를 조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책임의 범위, 위탁구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국방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24개 사업, 6,467억 2,2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은 단기복무 부사관 획득을 위하여 적금가입과 연계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AI서비스 확산, AI데이터/플랫폼 구축(정보화), AI인프라구축(정보화), AI인프라구축(일반), AI생태계조성, D.AX 프로젝트, 전력지원체계개발(직접), 전력지원체계개발(출연), 민군기술협력(R&D)(국방부), 교육훈련용 드론장비, 작업/업무지원용 드론장비, 실증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은 국방부 내 AI기술, 피지컬AI, 드론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 분산편성된 사업들을 국방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재편성하면서 반영된 세부사업들이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사업 중 민통선 조정 및 초소 이전사업은 지형적·작전적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인통제선을 북상 조정하기 위하여 초소이전 및 경계펜스,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2개)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18,902
	수방사 사령부 작전지휘시설 신축	16,966
	항작사 작전시설 신축	703
	진해기지 수상함 계류시설 증설	46,827
	1함대 동해항 및 포항항 부두 증설	3,344
	16비 복수활주로 건설	20,073
	18비 활주로 재포장 및 유도로 포장	152,111
	19비 동편 활주로 재포장	2,331
	군수사 병탄창 지하형 탄약고 신축	4,003
	항공사 항공정비여단 71항정대대 신축	1,741
	AI서비스확산	5,000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AI데이터/플랫폼구축(정보화)	55,136
	AI인프라구축(정보화)	36,585
	AI인프라구축(일반)	23,773
	AI생태계조성	23,652
	D.AX 프로젝트	43,015
	전력지원체계개발(직접)	5,272
	전력지원체계개발(출연)	7,507
	민군기술협력(R&D)(국방부)	28,060
	교육훈련용 드론장비	86,401
	작전/업무지원용 드론장비	41,141
	실증지원	5,500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2개)	민통선 조정 및 초소 이전	14,062
	방첩사·사이버사 이전	4,617
합 계		646,722

자료: 국방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군무원인건비, 항공장비(유지),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사업 등이 있다.

① 군무원인건비는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항공장비(유지) 사업은 고정익항공기 및 회전익항공기의 정비에 필요한 수리부속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증액되었으며, ③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사업은 국민의 안전보장, 훈련 소요 등을 고려하여 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1]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2개)	장교인건비	5,026,083	5,026,083	5,192,748	166,665	3.3
	부사관인건비	7,172,239	7,172,239	7,289,389	117,150	1.6
	군무원인건비	2,840,117	2,840,117	3,027,461	187,344	6.6
	건강보험부담금	485,022	485,022	496,529	11,507	2.4
	기본급식	1,811,925	1,811,925	1,852,675	40,750	2.2
	민간조리원운영	111,824	111,824	129,951	18,127	16.2
	진료지원	135,848	135,848	148,265	12,417	9.1
	의무시설개선	13,029	13,029	38,935	25,906	198.8
	기동장비	329,069	329,069	389,229	60,160	18.3
	항공장비	26,460	26,460	40,811	14,351	54.2
	함정장비	27,759	27,759	41,290	13,531	48.7
	일반장비	59,488	59,488	74,013	14,525	24.4
	병참물자	308,757	308,757	393,281	84,524	27.4
	물자유지	59,022	59,022	71,358	12,336	20.9
	기동장비(유지)	1,013,825	1,013,825	1,082,397	68,572	6.8
	항공장비(유지)	2,210,381	2,210,381	2,586,784	376,403	17.0
	함정장비(유지)	536,338	536,338	606,419	70,081	13.1
	통신전자장비(유지)	262,576	262,576	307,370	44,794	17.1
	특수장비(유지)	328,130	328,130	468,041	139,911	42.6
	정보체계(유지)	78,166	78,166	99,839	21,673	27.7
	장비연료	760,873	760,873	782,878	22,005	2.9
	포장용기 및 기타	2,222	2,222	2,969	747	33.6
	비군사화	11,275	11,275	15,485	4,210	37.3
	군수정책지원	5,073	5,073	9,718	4,645	91.6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247,866	247,866	371,204	123,338	49.8
	간부확보장려사업	159,993	159,993	208,116	48,123	30.1
	병영기본지원시설	230,745	230,745	266,844	36,099	15.6
	환경보전시설	166,578	166,578	177,221	10,643	6.4
	정비 및 보급시설	420,460	420,460	518,978	98,518	23.4
	일반지원시설	624,117	624,117	721,773	97,656	15.6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2]	-	-	33,245	33,245	순증
	동원훈련	51,371	51,371	76,807	25,436	49.5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1)]		2027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예비전력운영지원	43,089	43,089	57,466	14,377	33.4
	해군3수리창 사업 및 지원비	380	380	575	195	51.3
	인건비	645,700	645,700	675,049	29,349	4.5
	군수분야	232,581	232,581	330,595	98,014	42.1
	정책기획지원	10,036	10,036	15,663	5,627	56.1
	주요기관 기본경비	165,037	165,037	190,539	25,502	15.5
	민간보상	8,010	8,010	12,768	4,758	59.4
	부대운영지원	295,067	295,067	350,210	55,143	18.7
	군 배상금	20,012	20,012	50,301	30,289	151.4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 (2개)	환경조사 및 치유	46,694	46,694	62,991	16,297	34.9
	기타이전지원	1,515	1,515	2,139	624	41.2
군인연금 기금 (1개)	퇴직급여	4,148,927	4,148,927	4,299,938	151,011	3.6
군인복지 기금 (1개)	복지시설운영	400,579	400,579	432,064	31,485	7.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2)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은 2016년부터 계속된 사업이나, 사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1.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Ⅱ 주요 사업 분석

1 군인 처우개선 현안분석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남성인구 감소로 인한 입영인원의 감소, 초급간부 모집율 저하, 중견간부 이탈 심화 등으로 상비병력의 유지가 국방분야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어서 군 처우개선 및 인력 확보를 위한 각종 현금성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설/확대된 처우개선 관련 주요 현금성 지원사업 현황]

구분	내용
인건비	- 병 인건비 인상(병장기준 2022년 67만 6천원→2025년 150만원/월) - 초급간부(하사·중사·소위·중위 등) 인건비 인상 ① (하사·소위) 2026년, 2027년 각각 전년대비 기본급 단가(1호봉 기준) 6.6%, 5.9% 인상 ② (중사·중위) 2026년, 2027년 각각 전년대비 기본급 단가(1호봉 기준) 6.0%, 5.9% 인상
자산형성제도	- 병내일준비지원 사업(2022년 월 14.1만원→2025년 월 55만원 매칭 지원금 인상) - 장기복무지원금(2026년 신설, 월 30만원 매칭지원금) -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2027년 신설, 월 30만원 매칭지원금)
지원/복무장려제도	- 장교 단기복무장려금(단가 인상: 2022년 600만원→2024년 1,200만원, 2026년 대상 확대: 졸업 후 사관후보생 포함) -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단가 인상: 2026년: 1,000만원→2027년: 1,200만원
당직비	~2023년: 평일 1만원 / 휴일 2만원→2024년: 평일 2만원 / 휴일 4만원→2026년~: 평일 3만원 / 휴일 10만원
주택수당	~2022년: 8만원→2023년~: 16만원
상해보험	- 병 단체 상해보험 2027년 신규도입 추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반영되거나 증액된 주요 현금성 지원사업들에는 ① 초급간부 처우개선율 5.9%, ②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1,000만원→1,200만원), ③ 단기복무 부사관 적금 매칭지원금 신설(월 최대 30만원, 3년 지원), ④ 병 단체상해보험 등이 있다.

참고로 자산형성제도와 지원/복무장려제도는 신분별·임관경로별로 지원대상이 구분되어 있는데, 2026~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인원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자산형성 및 지원/복무장려제도 입직경로별 지원인원]

(단위: 명)

구분	입직경로	예산(안) 편성 기준	
		2026년도 지원인원	2027년도 지원인원
장기복무지원금	임관시 장기	1,436	'26년 인원+1,703
	장기복무 선발	8,793	'26년 지원+7,640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단기복무 선발	-	9,600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학군, 학사)	4,821	4,794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부학군, 부사후)	444	443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사관후보생	2,096	2,157
	학사사관후보생	1,130	1,093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부사관후보생	106	210
	민간모집부사관후보생	3,646	5,745
	단기전환(임기제부사관)	1,175	2,390
	현역부사관	388	1,255

자료: 국방부

1-1.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군인 처우개선 정책 추진 필요 등

가. 현 황

국방부는 장교 및 부사관 인건비 편성과정에서 초급간부(하사·중사·소위·중위)를 위한 처우개선율 5.9%와 중견간부 등을 위한 공통 처우개선율 3.9%를 적용하였다. 그에 따라 2027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66억 6,500만원 증액된 5조 1,927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7년도 부사관인건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71억 5,000만원 증액된 7조 2,89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장교인건비 및 부사관인건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장교인건비	4,867,668	5,026,083	5,026,083	5,192,748	166,665	3.3
부사관인건비	6,753,022	7,172,239	7,172,239	7,289,389	117,150	1.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또한 국방부는 간부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복무지원금,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간부확보장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복무지원금[1]은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5억 2,600만원이 증액된 531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2]은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부사관에게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89억 2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242-305

2) 코드: 일반회계 2242-306

간부확보장려사업[3]은 중기복무장교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산복무 지원금과 단기복무 간부 지원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1억 2,300만원이 증액된 2,081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장기복무지원금,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및 간부확보장려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장기복무지원금[2]	-	20,581	20,581	53,107	32,526	158.0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	-	-	18,902	18,902	순증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159,993	159,993	208,116	48,123	30.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 장기복무지원금은 2026년도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의 내역사업에서 별도 세부사업(2242-305)으로 이관하여 신설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첫째,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군 간부 처우개선이 중장기적 계획에 기반한 구조적 접근이 아니라, 초급간부 위주로 하여 적금연계형 사업 등 일시적 수단이 활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병무청의 20세 남성인구 전망에 따르면, 20세 남성인구는 2024년 24.4만명에서 2040년 1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35년 이후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입영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 코드: 일반회계 2439-301

[20세 남성인구 전망]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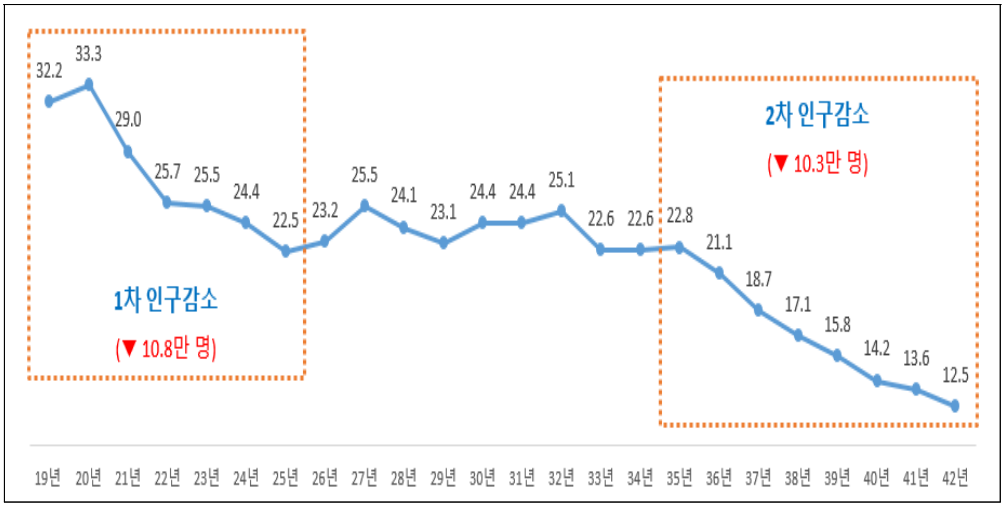

주: 통계청의 인구추계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
자료: 병무청

이와 함께 중도 이탈간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2021년에는 총 2,899명이었던 희망전역자가 2025년에는 5,543명으로 증가하였다.

[2021~2025년 전체 간부 중 희망전역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장교	1,002	1,285	1,425	1,422	1,481
준사관	256	332	375	373	413
부사관	1,641	2,137	2,908	3,697	3,649
합계	2,899	3,754	4,708	5,492	5,543

자료: 국방부

그에 따라, 상비병력 운영률도 감소하는 추세로서, 전체 운영률은 2023년 95.5%였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89.2%로 하락하였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의 운영률이 모두 100%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준사관, 부사관의 운영률은 각각 89.2%, 82.2%로 특히 낮은 편이다.

[계급별 상비병력 운영률 추이]

(단위: %)

구분		운영률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상비병력	장교	100.4	100.7	99.6	99.9
	준사관	93.3	92.1	91.1	89.2
	부사관	91.8	87.7	83.8	82.2
	병사	96.2	95.8	92.5	90.2
	합계	95.5	94.2	91.0	89.2

자료: 국방부

입영인구의 감소, 간부의 중도이탈, 상비병력 운영률 감소 추세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는 군 구조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시에 군인들을 위한 각종 처우개선 정책들도 계속 마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시되었던 간부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운용현황 등을 살펴보면, 하사·중사·소위·중위의 기본급(1호봉) 단가 인상, 자산형성제도의 도입 및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단가 인상 등 초급간부를 위한 지원정책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은 정책들의 효과가 작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2021~2023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였던 초급간부 지원율이 2025년에는 학사·학군·부사관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2021~2025년 초급간부 지원율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학사	2.61:1	2.40:1	2.06:1	2.26:1	3.28:1
학군	2.53:1	2.33:1	1.56:1	2.03:1	3.94:1
부사관	3.25:1	2.77:1	1.54:1	1.28:1	1.62:1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만, 중견간부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다. 초급간부에게 적용된 처우개선율은 공통 처우개선율('27년 3.9%)에 더하여 가산분('27년 2.0%p)이 반영되어 왔으나, 중견간부에게 적용된 처우개선율은 공통분만이 적용되었다. 이로 인하여, 초급간부들이 중견간부로 승진한 이후에는 과거 시행되었던 임금인상의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장기복무에 대한 유인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23~2027년 초급 및 중견간부 기본급(1호봉) 단가 인상률]

(단위: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초급간부	3.8	6.0	6.6	6.6	5.9
중견간부	1.7	2.5	3.0	3.5	3.9

자료: 국방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적금연계형 사업, 단기복무장려금 및 가산복무지원금 등은 초급간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숙련된 중견간부의 지속적인 복무를 유도할 별도의 지원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중견간부들의 희망전역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2024년 장기복무 간부의 계급별 희망전역자]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사	480	430	580	920	1,140
상사	290	230	310	480	810
대위	220	170	320	370	360

자료: 김영곤, 「중견간부 이탈 증가의 원인과 개선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25

KIDA의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견간부들이 희망전역을 결심한 사유로는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 수준'이 1순위(22.54%),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로 복무의 보람 상실'이 2순위(20.14%), '병 봉급 상승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3순위(10.55%),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가 4순위(9.59%)로 나타났다.

[중견간부 희망전역 결심 사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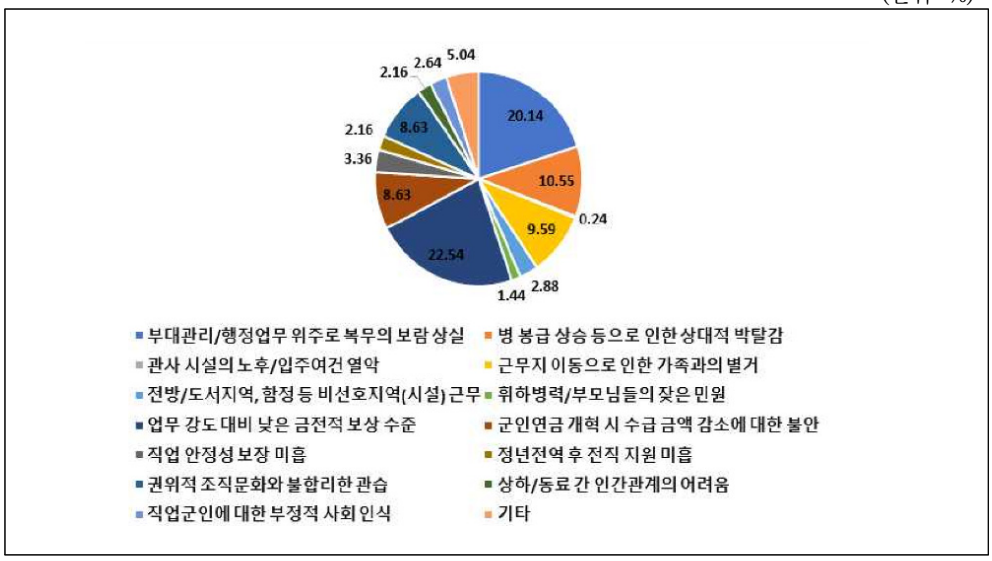

자료: 김영곤, 「중견간부 이탈 증가의 원인과 개선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25

한편, 같은 연구에서는 중견간부 이탈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봉급·수당의 인상 등 금전적 보상확대'가 1순위(36.45%)로 제시되었고, 그 다음으로 '불필요한 부대관리·행정업무의 축소'가 2순위(25.9%), '병 복무 책임감 향상을 위한 조치시행'과 '근무지 이동 자체의 최소화'가 동일하게 3순위(6.71%)로 나타났다.

[중견간부 이탈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우선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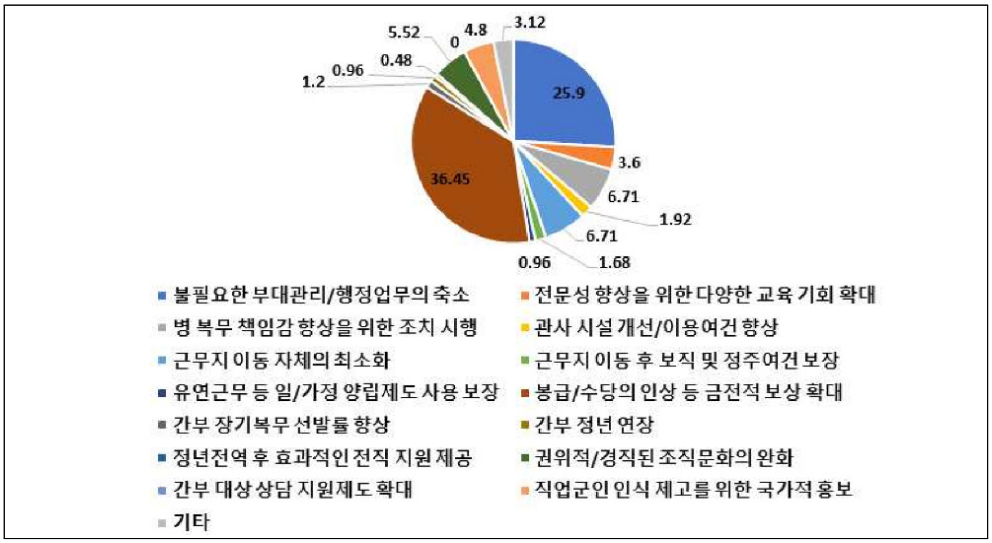

자료: 김영곤, 「중견간부 이탈 증가의 원인과 개선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25

미래 전장환경 하에서 첨단 과학기술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투 전문가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핵심장비를 운용할 숙달된 인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전투력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4]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으로 무기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전장환경에서 AI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종 운용권은 전문성을 보유한 간부들에게 있으므로, 중견간부들의 중도이탈을 최소화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급간부들에 대한 각종 현금성 지원정책을 통해서 2025년 학사·학군·부사관 지원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그와 같은 지원정책들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3년) 동안만 지속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이들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전환 시점에 제공할 별도의 지원책 등이 필요한데, 단기복무지원금과 장기복무지원금의 중복수혜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그와 같은 지원정책이 현재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군 간부 처우개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방향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자료: 김영곤, 「중견간부 이탈 증가의 원인과 개선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25

둘째, 군 간부 처우개선이 중장기적 계획보다는 단년도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금성 지원 확대방식으로 진행되어, 정책의 일관성·예상가능성 및 재정소요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중장기적 시계열 하에서 일관성 있는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신규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책의 취지, 정책 간 관계 설정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직전년도 신규사업의 취지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초급간부들의 입장에서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임관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선, 장기복무지원금과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의 중복 수혜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를 유도하고자 했던 장기복무지원금의 취지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장기복무지원금은 '임관시 장기 간부(장교 + 부사관)'를 위한 정책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5)]

2026년 초급간부의 중·장기복무를 유도할 목적으로 장기복무지원금을 도입하였는데, 바로 다음 해인 2027년에 신규사업으로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이 동일한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장기복무자로 전환할 단기복무 부사관의 획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기복무지원금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두 사업 간 중복수혜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단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은 부사관들에게 장기복무지원금은 실효적인 장기전환 정책이 될 수 없다. 해당 인원들의 입장에서는 지원금액과 기간이 동일한 두 사업 중에서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단기복무 부사관들을 위한 장기전환 지원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5) 단기복무 장교에게도 단기복무지원금이 적용되고 장기복무지원금과 중복수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장기복무지원금은 사관학교 졸업생만을 위한 제도로 사실상 변경된다. 이는 특정 입직경로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서 균형있는 인력획득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장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사관 장교의 장기복무를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장기복무지원금 및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제도 비교]

구분	장기복무지원금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도입시기	2026년	2027년
지원대상	① 임관시 장기 간부(장교 + 부사관) ② **장기복무 선발 간부(장교 + 부사관)**	① **단기복무 선발 부사관**
지원금액	월 최대 30만원 매칭	
지원기간	최대 3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현재 단기복무 장교를 위한 적금연계형 사업은 없지만, 향후 이들에게도 적금연계형 사업이 도입되고 장기복무지원금과 중복수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단기복무 장교의 장기전환을 유도할 정책적 수단 역시 없는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장기복무지원금은 임관시 장기복무하는 것이 확정된 사관학교 출신들만을 위한 제도로 남게 될 전망인데, 이는 2026년에 장기복무지원금을 도입한 당초 취지를 형해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우개선정책의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초급간부 획득을 위한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급간부 지원자에게 신뢰성 있는 중장기 정책계획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전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대상들이 처우개선정책을 신뢰하고 향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초급부사관 획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을 도입하였고, 1인당 지원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사업을 2027년에도 계속 추진하면서, 1인당 지원금액을 1,200만원으로 인상하였는데, 부사관 충원을 위해서 그와 같은 증액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지원단가]

2026년	2027년
1,000만원	1,200만원

자료: 국방부

그런데 2026년 11~12월 임관자와 2027년 1~2월 임관자는 임관시점이 최대 4개월 밖에 차이나지 않음에도, 2026년 임관자에게 지급할 장려금은 2027년 임관자에게 지급할 장려금보다 200만원이 적어서 과거 임관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문제가 있다.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임관집단 간 적용되는 지원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그 혜택도 크게 차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인상계획이 대상집단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었다면, 현금성 지원의 규모가 다르더라도 각 개인들의 수용성은 높을 수 있다. 예컨대, 병 봉급인상의 경우, 수혜대상에게 중장기 인상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었기 때문에, 입영시점에 따른 월급차이에 대하여 병사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었다.

[연차별 병 봉급 인상내역]

(단위: 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계급	병장	676,100	1,000,000	1,250,000	1,500,000
	상병	610,200	800,000	1,000,000	1,200,000
	일병	552,100	680,000	800,000	960,000
	이병	510,000	600,000	640,000	768,000
전년대비 인상률 (병장 기준)		11.1	47.9	25.0	20.0

자료: 국방부

이상을 종합하면, 군 간부를 위한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지원제도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과거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거나 기존 제도 하에서 지원받았던 인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등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인사법」의 개정('26.2.)으로 졸업 후 선발된 사관후보생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 특수사관을 위한 단기복무장려금 재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군인사법」의 개정('26.2.)으로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에게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6] 개정취지는 대학교 졸업생은 대학 재학생과 동일한 전형에 선발되더라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단기복무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군의·법무·군종 등 특수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해당 인원들을 위한 단기복무장려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에 특수사관 470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56억 4,000만원(=470명 × 1,2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졸업 후 선발된 사관후보생으로서 특수사관들에게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사항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6) 「군인사법」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2. 적금 미가입자에 대한 2년차 정부지원금 감액 필요 등

가. 현 황

장기복무지원금[1]은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5억 2,600만원이 증액된 531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2]은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부사관에게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89억 2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3]은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획득이 어려워진 단기복무 부사관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부사관지원을 유도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20억 5,000만원 증액된 1,152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장기복무지원금 및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장기복무지원금	-	20,581	20,581	53,107	32,526	158.0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	-	-	18,902	18,902	순증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159,993	159,993	208,116	48,123	30.1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	53,150	53,150	115,200	62,050	116.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단기복무지원금과 장기복무지원금의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단기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단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향후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더라도 장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242-305

2) 코드: 일반회계 2242-306

3) 코드: 일반회계 2439-301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첫째, 적금 가입기간이 1개월로 제한되어 2026년 9월 말 기준 적금 미가입자는 추가가입이 불가능하므로, 2027년도 예산안 중 해당 인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계획한 2년차 정부지원금은 불용될 예정이기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신규 도입된 장기복무지원금(舊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의 경우, ① 임관시 장기복무인 자에 대해서는 임관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② 단기복무 중 장기복무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선발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추가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기복무지원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선발 장교 및 부사관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특히 2026년 9월 말 기준 장기선발 부사관들의 적금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장기복무지원금 가입현황(2026년 9월 말 기준)]

(단위: 명, %)

신분	군	임관	2026년 9월 말 기준			
			가입대상	가입자	미가입자	가입률
장교	육군	육군사관학교	250	250	-	100.00
	해군	해군사관학교	113	112	1	99.12
	해병대	해군사관학교	20	20	-	100.00
	공군	공군사관학교	176	175	1	99.43
	육군	육군3사관학교	305	300	5	98.36
	육군	국군간호사관학교	71	71	-	100.00
	해군	국군간호사관학교	3	3	-	100.00
	공군	국군간호사관학교	3	3	-	100.00
	육군	장기선발장교	1,512	1,464	48	96.83
	해군	장기선발장교	151	140	11	92.72
	공군	장기선발장교	169	154	15	91.12
	해병대	장기선발장교	55	53	2	96.36
부사관	공군	공군항과고	118	118	-	100.00
	육군	장기선발 부사관	2,785	2,255	530	80.97
	해군	장기선발 부사관	540	415	125	76.85
	공군	장기선발 부사관	712	686	26	96.35
	해병대	장기선발 부사관	338	281	57	83.14
합 계			7,321	6,500	821	88.79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방부는 적금가입 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2026년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2년차 지원금은 불용될 것이므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4] 국방부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불용 예상액은 80억 4,900만원이다.

[2027년도 소요 예산 재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2027년도 예산안(A)	재추계 결과(B)	불용 예상액(A-B)
53,107	45,058	8,049

자료: 국방부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따라서, 2026년에 적금에 가입할 인원들을 위한 2년차 정부지원금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2026년 9월 말 기준 미가입자가 821명 발생하였으므로, 이들을 위한 2년차 정부지원금은 불용될 예산이므로 이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사관 목표인원 대비 실제 임관인원 비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및 단기복무장려금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부사관을 충원할 목적으로 2026년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을, 2027년에는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단기복무장려금은 임관 후 일시금으로 1,200만원('27년 기준)을 지급하는 것이고, 단기복무지원금은 부사관이 적금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에 매칭하여 최대 월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7년에 부사관 9,600명을 충원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두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적금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3제5항에서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재정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관/선발 시점으로부터 1개월로 한정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복무지원금 및 단기복무장려금 예산(안)기준 인원, 지원액 현황]

구분	2026			2027		
	인원	지원액	예산	인원	지원액	예산안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			9,600명	최대 월 30만원	189억 200만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5,315명	1,000만원	531억 5,000만원	9,600명	1,200만원	1,152억원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런데, 2021~2026년 부사관의 실제 임관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2022년 동안은 충원율이 81.2~88.8% 수준이었으나, 2023~2025년 동안에는 47.6~57.0% 수준이었다.

[2021~2027년 부사관 계획 및 실제 임관인원]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반기)	2027
계획(A)	9,800	10,100	10,700	10,300	9,700	10,100	12,000
실제(B)	8,700	8,200	6,100	4,900	5,400	4,700	-
B/A	88.8	81.2	57.0	47.6	55.7	-	-

주: 1. 임기제부사관 및 재임용자 제외
2. 인력현황은 군사기밀임을 고려하여 100명 단위 표기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26년에 최종적으로 약 7,000여명이 실제 임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5년(2027~2031년) 동안 매년 9,600명을 충원해야만 2031년에는 부사관 운용률을 100%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단기복무장려금의 금액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9,600명을 충원할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다만 2024~2025년 대비 2026년 상반기 임관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임관인원을 포함하더라도 2026년에는 약 7,000여명이 실제 임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비슷한 추세가 2027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인원 9,600명보다는 적은 인원이 임관할 것으로 보인다.

[2024~2026년 부사관 분기별 임관 현황]

(단위: 명)

구분	계획	실적				
		소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4	10,300	4,900	1,300	2,000	900	700
2025	9,700	5,400	1,100	2,100	1,400	800
2026	10,100	4,700	1,500	3,200	-	-

주: 인력현황은 군사기밀임을 고려하여 100명 단위 표기
자료: 국방부

또한 병역자원의 감소, 병 봉급 인상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의 요인으로 단기복무 부사관의 충원이 저조한 상황에서, 실제 충원현황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거 충원현황을 고려하여 단기복무장려금 및 단기복무지원금의 계획인원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기복무지원금을 도입하였으나 예산한도를 이유로 특별한 사정없이 부사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교를 제외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단기복무자로 임관한 장교와 부사관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기복무 장교에게도 적금연계형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신규사업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학군부사관후보생, 민간모집부사관후보생 등 단기복무 부사관들은 단기복무장려금과 동시에 적금 연계형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임관시 최소 6~10년 복무가 확정된 사관학교(육사·해사·공사, 간호사관, 3사관) 졸업자, 단기복무 중 장기복무로 선발된 장교 등은 장기복무지원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① 학군사관, ② 학사사관, ③ 특수사관 등 단기복무 장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금 연계형 사업이 없는 문제가 있다.

장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은 임관시 장기, 장기선발 장교 및 부사관으로 구성된다.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을 도입하면서도 중복수혜를 허용하지 않아서, 2027년에 임관할 단기복무 부사관이 장기전환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장기복무지원금 지급대상 중 장기선발 부사관이 제외된다. 이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입장에서, 향후 장기선

발된 이후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임관 즉시 단기복무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단기장교를 대상으로 단기복무지원금이 도입될 경우, 장기복무지원금 지급대상 중에서 장기선발 장교가 추가로 제외될 것이고, 장기복무지원금은 사관학교 출신 등으로 구성될 '임관시 장기복무 장교'만을 위한 제도로 남게된다.

국방부는 단기복무자의 장기선발이 3년차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한 후,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정부지원은 3년 동안 시행되므로, 장교/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은 2027~2029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30년부터 장기복무지원금 지원대상자에는 '임관시 장기' 인원들만 남게되므로 지원금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복무장교를 위한 적금도입 시 재정소요('27~'31)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현행	장기복무지원금	53,107	89,208	101,035	88,752	68,679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18,902	53,462	88,022	103,680	103,680
	소계(A)	72,009	142,670	189,057	192,432	172,359
단기장교 추가	장기복무지원금	53,107	89,208	101,035	86,679	60,594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18,902	53,462	88,022	103,680	103,680
	장교 단기복무지원금	11,386	40,554	44,535	44,535	44,535
	소계(B)	83,395	183,224	233,592	234,894	208,809
추가 재정소요(B-A)		11,386	40,554	44,535	42,462	36,450

주: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경우는 선발시점부터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위 추계는 단기복무 3년차에 장기선발된 사례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운영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방부 추계결과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국방부는 단기복무 장교를 위한 적금을 추가로 도입할 경우 2027년 이후 5년간 평균적으로 350억 7,7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였다. 단기장교에 대한 적금연계형 사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처우개선정책과 관련한 계급별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적금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3. 병 단체 상해보험 추진 시 고려사항

가. 현 황

병 단체 상해보험[1]은 군 복무 중 건강·재해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사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68억 9,7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2027년도 병 단체 상해보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진료지원	133,217	135,848	135,848	148,265	12,417	9.1
병 단체 상해보험	-	-	-	6,897	6,897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첫째, 민간보험을 통해 전체 병사들의 건강·재해 위험에 대한 추가적 보상을 도입할 계획인데, 격오지, 함정 등에서의 상해위험이 현실화되고 경증 상해·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부는 상해보험상품과 관련한 제도적 설계를 면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건강·재해 위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병 단체 상해보험 사업을 2027년에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명의자는 국가(국방부)이며, 피보험자는 현역 및 상근예비역 전체로 설정된다. 2027년도 예산안은 사업자 선정 및 보험설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분의 보험료만을 반영하였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231-301의 내역사업

[2027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293,489명 × 47,000원 × 0.5년 = 68억 9,700만원

자료: 국방부

국방부에 따르면, 1인당 월 보험료 및 보장범위는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는데, 1인당 연 47,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사망 5,000만원(영외 교통상해/사망 최대 2억원), 후유장해(상해/질병) 최대 5,000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만원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화상, 골절, 외상성 절단 등에 대한 진단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진단서 발급대상으로는 군병원과 민간병원 모두를 포함한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상해/질병)	5,000만원	화상 진단금	25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상해/사망	최대 2억원	골절 진단금	3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원
후유장해(상해/질병)	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만원

주: 음영은 기존 제도(「군인 재해보상법」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자료: 국방부

일반 병사들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정부는 민간병원 자율진료비의 지원한도 확대, 재해보상제도의 개편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것 대신에 상해보험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보험료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측면도 있으나, 격오지나 함정 등에서의 상해위험과 경증상해/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증가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실제 재정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2026.9.,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군병원 인력 및 인프라 등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군병원 무상진료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민간병원 자율진료비의 경우 지원한도 및 최소 2만원의 자부담으로 인하여 개인부담이 여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의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은 비교적 심한 상해·장애로 제한되어 있어서 경증 상해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점과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은 보장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을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군 복무 중 상해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

구분	지원내용	한계
군병원 무상진료	복무 중 발생한 상해(골절, 화상 등)·질병에 대해 무상 진료	군병원 진료의 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제한적 인력·인프라 등 여전히 한계
민간병원 자율진료비	병사가 원하는 경우, 민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	지원한도 및 자부담금(최소 2만원)으로 개인부담 여전 * (금액) 복무 중 1인 100만원 (범위) 비급여·치과·한방 미지원
재해보상제도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장애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 사망(1.4억원~), 장애(1,700만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비교적 심한 상해·장애로 제한되어 있어, 경증인 상해에 대해서는 지원 한계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재해보상제도가 미치지 않는 부대 밖(휴가·외출·외박) 상해에 대해 보완적으로 보험금 지급	보장범위 협소(최근 5년간 지급된 보험금이 32건, 총 10억원) * 부대 밖 보장에 집중, 부대 내에서는 폭발·화재 등 제한적 상황에 대해서만 보장

자료: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2026.9.3.)

정부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개선[2]하는 대신에, 상해보험 방식을 사용하여 복무기간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을 지원하고자 한다. 예컨대, 민간병원 자율진료비의 지원한도 등으로 개인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원한도를 증액하기 보다는 민간보험사와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경증상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지출규모를 민간보험사에게 지급할 보험료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기존 제도를 개편할 경우에는 지원부담을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군 복무 중인 전체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방지역, 함정, 잠수함 등과 같은 특수근무지에서의 상해위험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를 홍보함에 따라 보험자격을 보유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며, 경증상해 및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민간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향후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병 단체 상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사실상 동일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3][4]을 살펴보면, 2018~2019년 동안에는 지급률이 102.0%를 기록하여 민간보험사들이 손실을 보았다. 반면에 2020~2022년 동안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군에서 훈련이 제한적으로만 시행되었기에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 이후 2023년부터는 지급률이 60~7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5]

---

2)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1~4급까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경미한 장애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5급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5.~12.)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3)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들은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참고로 경기도는 국방부 소관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5)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최초진단일)로부터 3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에 따라, 2024~2025년에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업의 경우,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서 보험금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2020~2022년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군에서 훈련 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상대적으로 보험금 지급률이 낮은 편이었으며, 2023년부터는 지급률이 7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한다.

[2018~2026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급현황]

구분		계약금액 =보험료수입 (A)	보험금 지급금액			지급률 (B/A)	소멸시효
			합계(B)	계약기간 내	계약기간 이후		
시효 종료	2018 ~2019	25억원	25.5억원	13.5억원	12억원	102.0%	'21.10.31.
	2020	25억원	14.9억원	6.8억원	8.1억원	59.2%	'23.1.14.
	2021	28억원	7.8억원	7.6억원	0.2억원	27.9%	'24.1.14.
	2022	30억원	10.8억원	10.3억원	0.5억원	36.0%	'25.1.14.
	2023	30억원	21.4억원	14.7억원	6.7억원	71.3%	'26.1.14.
시효 유지	2024	33억원	21.8억원	12.6억원	9.2억원	66.1%	'27.1.14.
	2025	31억원	18.9억원	12.5억원	6.4억원	61.0%	'28.1.14.
	2026	31억원	3.8억원	3.8억원	-	12.3%	'29.1.14.

주: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최초진단일)로부터 3년이므로, 계약기간 이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
자료: 경기도

그러나 이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병사들만을 대상[6]으로 한 것으로서, 전체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방부 사업에서는 지급률이 더 상승할 수 있다. 대상집단이 확대되고 국방부 차원의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보험금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보험사의 미청구이익도 축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수근무지 관련 상해위험이 현실화되고 관련 보험금지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증 상해·질병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 수 있으며, 민간보험시장과 유사하게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민간보험사들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정부의 보험료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병사들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상품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6) 경기도의 경우, 2021~2023년 가입인원은 83,912명이고, 2024년에는 68,624명, 2025년에는 58,882명, 2026년에는 63,438명이었다.

둘째,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들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20대 청년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카드 발급자에게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국가에서 직접 병사 전체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군인공제회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은 2010년 2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3기 나라사랑카드 사업자인 하나은행,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이 각각 다른 보험사와 계약하여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기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운영현황]

구분	1기	2기	3기
기간	2010년 2월 ~2015년 12월	2015년 12월 ~2025년 12월	2026년 1월~현재
운영사	• 신한은행 (현대해상)	• 국민은행 (KB손해보험) • IBK기업은행 (현대해상)	• 하나은행 (하나손해보험) • IBK기업은행 (현대해상) • 신한은행 (신한EZ손해보험)

자료: 국방부

3기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들은 서로 다른 보험사와 계약하여 상해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3개 상해보험상품들의 보장범위는 동일하지만 보장금액은 보험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현재 3기 나라사랑카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나라사랑카드 연계 상해보험을 통해서 병사들에게 두터운 보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3기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현황]

구분		하나은행 (하나손해보험)	IBK기업은행 (현대해상)	신한은행 (신한EZ손해보험)
3기	보상금액	최대 8.5억원	최대 5억원	최대 5억원
	영외[1]	• 일반상해: 최대 0.5억원 • 대중교통 상해사고: 최대 4억원(추가)	• 일반상해: 최대 1억원 • 대중교통 상해사고: 최대 3억원(추가)	• 일반상해: 최대 1억원 • 대중교통 상해사고: 최대 3억원(추가)
	영내·외[2]	• 화재(벼락), 폭발, 붕괴: 최대 4억원(추가)	• 화재, 폭발, 붕괴 : 최대 1억원(추가)	• 화재, 폭발, 붕괴 : 최대 1억원(추가)

주: 1) 임무수행과 관계된 영외 체류 중 발생되는 상해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대장 승인이 있는 '외출, 외박, 휴가 등'이 해당됨
2) 임무수행 중이거나 휴가 중이더라도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 시에는 모두 해당됨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만 병사들에 대한 두터운 재해보상을 실시할 필요성은 있으나, 국방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과 나라사랑카드사업(군인공제회 운영대행)과 연계한 상해보험을 동시에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3기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운영 업무를 군인공제회에 맡기고 있으며, 군인공제회는 각 은행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상해보험 서비스를 포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포함하였다.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통해서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위한 전자통장, 실물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카드는 현역복무부터 예비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자병역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나라사랑카드 사업은 사실상 국가사업의 성격을 갖는다.

은행사들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입영예정인 청년들이 각 회사의 카드상품에 가입할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입금되는 병사월급 등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예치이자수익과 카드결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20대 고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전역 이후 고객유치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위한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는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은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손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여 병사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2개의 상해보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 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을 운영하는 비용을 추계한 후,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을 중지하는 대신에 해당 예산만큼을 '병 단체 상해보험'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국방부가 군인공제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군인공제회에서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과 병 단체 상해보험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는 있다. 그 과정에서 군인공제회,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등 여러 주체들 간 긴밀한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군인공제회 정관 등 관련 법령체계와의 정합성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 차원에서 병 단체 상해보험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므로, 국방부는 기존에 제공되었던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하여 군인공제회,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2 국방부 인공지능 프로그램 현안 분석

국방인공지능 프로그램[1]은 국방정보화(2100), 군수지원 및 협력(2300), 군인사 및 교육훈련(2400), 예비전력관리(2600) 예산에서 AI 등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을 분리이관하여 편성한 것으로, 3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예산안은 3,610억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국방인공지능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AI확산	-	-	-	187,161	187,161	순증
AI서비스확산	-	-	-	5,000	5,000	순증
AI데이터/플랫폼구축(정보화)	-	-	-	55,136	55,136	순증
AI인프라구축(정보화)	-	-	-	36,585	36,585	순증
AI인프라구축(일반)	-	-	-	23,773	23,773	순증
AI생태계조성(일반)	-	-	-	23,652	23,652	순증
D.AX프로젝트	-	-	-	43,015	43,015	순증
국방기술개발	-	-	-	40,839	40,839	순증
전력지원체계개발(직접)	-	-	-	5,272	5,272	순증
전력지원체계개발(출연)	-	-	-	7,507	7,507	순증
민군기술협력(R&D)	-	-	-	28,060	28,060	순증
유무인복합체계고도화	-	-	-	133,042	133,042	순증
교육훈련용 드론장비	-	-	-	86,401	86,401	순증
작전/업무지원용 드론장비	-	-	-	41,141	41,141	순증
실증지원	-	-	-	5,500	5,500	순증
합 계	-	-	-	361,042	361,042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800

2-1. 사전타당성 검토 미진행 상태에서 국회 제출된 다족형 로봇 사업 문제점 등

가. 현 황

D.AX프로젝트 사업[1]은 병역자원 감소와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전력유지예산을 활용하여 피지컬 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430억 1,5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2027년도 D.AX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D.AX프로젝트	-	-	-	43,015	43,015	순증
사업출연금	-	-	-	13,015	13,015	순증
자산취득비	-	-	-	30,000	3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D.AX프로젝트 예산안은 사업출연금 130억 1,500만원과 자산취득비 3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출연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 교부할 계획이며 UGV 4대, 다족형 로봇 2대, 월드모델 3세트 등의 구매비용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군에서 직접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다족형 로봇 200대 구매비용을 반영하였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831-306

[D.AX프로젝트 비목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주체	세부내역	2027(안)
사업출연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UGV 4대	3,900
		다족형 로봇 2대	1,060
		월드모델 구축 3세트	5,400
		휴머노이드 로봇 2대	1,000
		밀폐형 AMR 6대	600
		매니퓰레이터 2대	400
		도킹설비 2대	400
		기획평가관리비	255
		소 계	13,015
자산취득비	육군	다족형 로봇 200대	30,00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전력지원체계 예산안(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을 편성하여 국회로 제출하기 이전에 선행연구, 사전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하지만, 다족형 로봇 구매사업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구매물량의 적정성, 다족형 로봇의 성능, 장기적인 활용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지속지원·경계/경비·위험물취급의 3가지 위험·비전투 임무를 선정하여, 민간 피지컬 AI 기술을 시범도입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에 따라 D.AX(Defense AI Transformation) 세부사업이 2027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관련 예산 430억 1,500만원이 반영되었다.

국방부는 UGV, 휴머노이드, 월드모델 등을 활용하여 국방 분야에서 활용할 피지컬 AI를 실증할 필요가 있으며, 군에서 직접 구매할 다족형 로봇 200대의 경우에도 부대별 배치계획이 수립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다수의 다족형 로봇을 동시에 운용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 축적속도도 가속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부연하였다.

[지속지원·경계/경비·위험물 취급 분야별 구매 및 배치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물량	단가	예산안	배치계획
지속지원	탄약 수송로봇 실증	UGV	2개	1,550	3,100	포병대대 내 2개 포대(포대별 1개)
		다족형 로봇	2개	530	1,060	
		월드모델 구축	1세트	3,000	3,000	-
	다족형 로봇 실증	다족형 로봇	96대	150	14,400	[A.T. 시범부대] 16대, [실증부대] 42대, [운용개념발전] 38대
경계/경비	경비 로봇 실증	휴머노이드 로봇	2대	500	1,000	각 군 본부 등 건물 내 2대
		경비용 UGV	2대	400	800	
		월드모델 구축	1세트	1,200	1,200	-
	다족형 로봇 실증	다족형 로봇	88대	150	13,200	[A.T. 시범부대] 20대, [실증부대] 48대, [운용개념발전] 20대
위험물 취급	의무 로봇 실증	밀폐형 AMR	6대	100	600	입원병동 5개층 각 1대, 응급실 1대
		매니퓰레이터	2대	200	400	수도병원, 외상센터 각 1대
		도킹설비	2대	200	400	2개소
		월드모델 구축	1세트	1,200	1,200	-
	다족형 로봇 실증	다족형 로봇	16대	150	2,400	[A.T 시범부대] 12대, [운용개념발전] 4대
합 계					42,760	-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방부에 따르면, 2027년에는 위험임무 및 비전투 임무에 민간의 피지컬 AI를 시범적용하면서, 군 전용규격(Mil Spec)에 맞게 HW·SW 업그레이드, 군 환경 강화학습으로 피지컬 AI 임무에 숙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향후에는 2028~2030년 동안 민간 아웃소싱 대상 비전투임무 분야(지속지원 및 경계 등)를 피지컬 AI로 전환하고, 2031~2035년 동안 위험임무 등 작전지속지원 임무도 피지컬 AI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D.AX 프로젝트 향후 추진계획]

구분		내용
1단계	2027년	위험임무 및 비전투 임무에 민간의 피지컬 AI 시범적용 * Mil Spec(군 전용 규격)에 맞게 HW·SW 업그레이드, 군 환경 강화학습으로 피지컬 AI 임무 숙달
2단계	2028 ~2030년	민간 아웃소싱 대상 비전투임무를 피지컬 AI로 전환 * 지속지원 및 경계 등 민간에서 이미 성숙된 로봇 분야부터 피지컬 AI 전환
3단계	2031 ~2035년	위험임무 등 작전지속지원 임무를 피지컬 AI로 전환 * 자율주행 기술 및 휴머노이드 로봇의 행동 고도화 등이 완성된 이후 탄약물 운반, 위험물 취급 등 위험임무 대체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방부는 2028년 이후에 실시할 본사업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2027년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며, 2027년도 신규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D.AX 프로젝트 사업타당성 조사 추진 계획]

2027년	→	2027년 하반기	→	2028~2030년
시범·실증		사업타당성 조사 추진		본사업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러나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다족형 로봇 구매 사업비는 300억원이므로, 전력운용체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진행해야 하는 선행연구,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일반 중앙관서에서 물자를 구매·배치하는 것과 달리, 군에서 활용할 전력지원체계는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획득부터 도태까지 전체적인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다른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와의 상호운용성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사전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은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D.AX프로젝트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운용지침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으로 규정[2]하고 있다. 이때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세부사업이며, 내역사업 중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역사업이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검토 대상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사유발생 시점의 다음연도 신규예정 사업에 대해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치기 전에 선행연구를 수행해야 하도록 규정한다.[3]

---

2)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
제7조(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① 사전타당성 검토는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전타당성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다만,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포함)
2.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사업
③ 기획예산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
제14조(사전타당성 검토의 요구) ① 각 부대(기관)의 장은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 전전년도 3월 31일 또는 8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구하여야 한다. 단, 사업 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시점에 다음연도 신규예정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부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서에는 사업의 배경,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위치,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선행연구 내용, 사전타당성 검토 필요성 및 사업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 부대(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없다.
1.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2.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3.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4.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검토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5.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선행연구 세부 고려요소 및 고려요소별 분석항목은 별표와 같다.)
6. 국방부 내 사업부서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D.AX프로젝트는 NIA로 출연하여 추진할 분야별 실증시범사업(130억 1,500만원)과 군에서 직접 취득하여 운용할 다족형 로봇 구매사업(300억원)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연구기관에서 실증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사전타당성 검토의 실익이 낮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다족형 로봇을 200대 구매하는 것으로서 시범사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육군에서는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국방 서비스로봇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서 유사한 형상의 다족형 로봇에 대한 시범사업[4]을 진행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대의 다족형 로봇을 내구연한 동안 지속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타당성 검토를 생략하는 것은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참고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만 수행하면 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다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전타당성 검토 및 사업타당성 조사 비교]

구분		사전타당성 검토	사업타당성 조사
주관기관		국방부	기획예산처
일반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대상	비대상
	500억원 이상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친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 제외 가능	대상

자료: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상을 요약하면, D.AX프로젝트 세부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300억원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사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나,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4) 실증기간은 2024년 9월~2025년 3월이었으며, 2025년 7월~2028년 3월까지를 성과활용 기간으로 두면서 현재 11사단에서 2대의 다족형 로봇을 운영중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피지컬 AI 메가프로젝트('26.6.29.) 추진의 일환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선행연구 등을 사전에 진행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며, 현재 선행연구('26.10.~11.)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선행연구, 사전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는 것은 대규모 신규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므로, 국회로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관련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

특히 다족형 로봇과 같은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모듈화[5]·공통화·개방화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 운용방안, 전력유연성 확보, 원활한 유지보수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8조의2[6]에서도 모듈화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D.AX프로젝트의 경우 선행연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그와 같은 검토작업이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족형 로봇 구매사업의 경우 국회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선행연구, 사전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다족형 로봇 구매물량 적정성, 성능의 수준 등을 심의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나라장터를 활용한 단순구매로 다족형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일반 물자와 달리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작전목표 및 환경을 고려한 운용성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내구연한 동안 군에서 지속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안서평가, 시험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최종 납품 이후에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사항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5) 모듈화는 계열화된 플랫폼에 다양한 장비가 공통으로 탈착하거나 이종 플랫폼에 호환될 수 있도록 독립기능이 가능한 단위로 탑재하는 임무장비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무인체계의 효율적 운용, 전력 유연성,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중요하다.(자료: 조정산·한상철·김진탁, 「K-MOSA 정책에 따른 다족형 로봇의 계열화 모듈화」, 국방로봇학회논문집, 2024.10.)

6)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8조의2(무인 전력지원체계 모듈화·공통화·개방화) ① 소요요청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은 제108조 및 제129조에 따라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소요를 요청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모듈화·공통화·개방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무인체계 모듈화·공통화·개방화 방안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 소요요청기관은 무인 전력지원체계의 모듈화·공통화·개방화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국기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달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작전목표 및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로봇무게, 속도, 장애물 극복능력, 작전운용반경 등)을 요구하게 되고, 작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부착하기 위한 기술변경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 첨단기술임을 고려하여 핵심 임무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소기능품으로 구매하더라도, 내구연한 동안은 실증을 포함한 여러 임무에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야전환경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은 확보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산부품 사용, 보안성 확보, 다른 전력지원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 등에 대한 점검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공개입찰 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업체들에게 제공될 제안요청서에도 반영되고, 납품 시에 요청사항들이 반영되었는지 검수함으로써 국방분야 재원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방부는 별도의 제안서평가, 시험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서, 향후 나라장터에서 판매할 다족형 로봇 중에서 필요한 모델을 선택하여 단순구매하겠다는 입장이며, 추가적으로 장비를 장착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국방부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첨단 전력지원체계를 조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야전운용성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용 모델을 도입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임무수행에 투입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또한 최첨단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부품국산화, 보안문제 등을 고려하여 인증체계를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단순구매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다.[7]

현대 전장환경에서 유·무인복합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군 내부의 실증을 통해서 다족형 로봇과 같은 무인체계를 운용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숙련도를 제고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와 동시에, 국방분야에 투입할 재원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족형 로봇에 대한 실증 뿐만 아니라 총수명주기관리의 관점에서 향후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7) 드론의 경우, 교육용 드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상용드론을 구매하고 있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안서평가도 진행하였다. 또한 부품국산화, 보안문제 등을 고려하여 '핵심부품 국산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업하여 검증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보다 체계적인 인증체계 수립을 위하여 'K-Blue UAS'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운용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속지원·경계/경비·위험물취급 분야에 필요한 다족형 로봇의 운용성능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공고 등의 과정에서 업체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족형 로봇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품국산화, 보안문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족형 로봇의 야전운용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평가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최종납품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철저하게 계약을 관리할 필요도 있다.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시험평가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납품이 2027년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감안할 때 가장 마지막에 지급할 잔금은 2028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족형 로봇을 통한 실증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 동안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단순구매가 아니라 제안서평가, 시험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서 철저한 계약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최종 납품이 2027년 연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잔금에 대해서는 2028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AI기반 의료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연계한 군 의료 AI 활용계획 구체화 필요

가. 현 황

플랫폼·서비스[1] 사업은 국방AI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AI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및 기능별 서비스 플랫폼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257억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해당 내역사업에는 AI기반 의료데이터 통합레이크 및 플랫폼 구축사업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군 의료데이터를 AI가 학습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등 통합 의료레이크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2027년도 예산안은 39억 9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2027년도 AI데이터/플랫폼구축(정보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AI데이터/플랫폼구축(정보화)	-	-	-	55,136	55,136	순증
플랫폼·서비스	-	-	-	25,704	25,704	순증
AI기반 의료데이터 통합레이크 및 플랫폼 구축	-	-	-	3,909	3,909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AI기반 데이터 구축과 병행하여 군 의료진단 및 관리시스템도 AI기반으로 개편함으로써 군 의료업무에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AI기반 데이터 구축사업만 반영되었으므로, 국방부는 내부 의료시스템 전반을 AI기반으로 재편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831-302의 내역사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대통령 직속기구)의 국가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군 의료데이터 통합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의료정보체계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AI가 활용가능한 형태로 통합·표준화·정제하기 위하여 'AI기반 의료데이터 통합레이크 및 플랫폼 구축'(이하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방부는 군 의료데이터를 AI가 활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진단보조, 의무기록 자동화, 의료영상 분석, 장병 건강관리 등 군 의료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군 내부에 축적된 의료데이터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비식별화·가명처리가 이루어진 데이터는 외부기관과의 협력연구에도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국방 의료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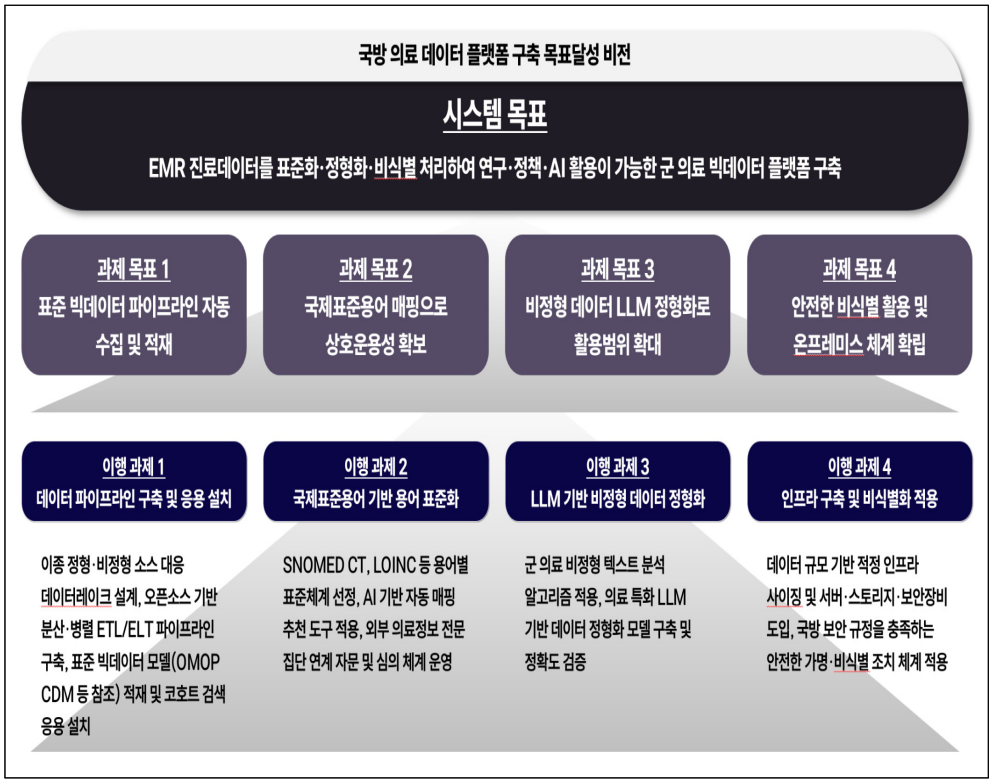

자료: 국방부

현행 국방의료정보체계(이하 'DEMIS 3.0')은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전 군 병원의 진료, 처방, 영상데이터 등을 통합 관리하는 중앙 집중형 정보시스템으로, 임상기록지 등 비정형 데이터들도 등록되어 있다. DEMIS 3.0은 진료 업무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 연구·정책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비식별화 자동화 처리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AI가 활용하기 어려운 비정형데이터들이 다수 존재하여 AI를 활용한 진료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DEMIS 3.0을 고도화하거나 대체하는 사업은 아니다.

국방부는 기존 DEMIS 3.0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AI가 활용가능한 형태로 통합·표준화·정제·비식별화함으로써 후속 AI서비스 개발 및 검증에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데이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군 병원 등에서 AI를 활용한 진료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할 데이터 레이크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관리시스템인 DEMIS 등 전반적인 시스템도 같이 AI기반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간병원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정보시스템(EMR) 고도화와 데이터레이크 구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AI 기반으로 의료정보를 원활하게 관리하면서 실제 진료업무에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장소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정보시스템도 개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경우, 2023~2025년 동안 진행한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DEMIS 3.0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DEMIS를 다시 고도화하는 것은 재정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2] 또한 AI기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를 수립해야 하며,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500억원 이상이면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본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정책, 통계업무 등에 활용하는 것만 가능하고, 실제 의료과정에서 AI를 실효성있게 활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2) DEMIS 3.0으로 고도화하는 과정에서는 AI기반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AI, AX 등의 개념이 일부 IT 기업에서 활용되었던 개념들이었기에 고도화사업 착수 이전에 수립된 사업계획에는 반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한 ISP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ISP를 사전에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사업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사전에 ISP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 내부 의료시스템 전반을 AI기반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군 의료체계에 AI를 활용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데이터 플랫폼은 향후 추진할 군 의료 AI고도화의 기반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기반을 확보한 후 AI문진, 영상판독, 응급후송 자동화 등을 개발·검증하고, 이를 DEMIS 등과 단계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AI기반의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AI기반의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간 연계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데이터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의료정보체계와의 연계방안, 후속 의료 AI 서비스의 개발·검증 및 적용계획 등을 포함한 전체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3. 국방 드론 인증기술 및 제도 운영관련 고려사항

가. 현 황

국방드론(R&D) 사업[1]은 범용 자율비행 드론 등 전력지원체계 중 민군 공통활용 가능한 다목적용 드론 시제품 및 개발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42억 1,000만원이 신규반영되었다.

[2027년도 국방드론(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민군기술협력(R&D)	-	-	-	28,060	28,060	순증
국방드론(R&D)	-	-	-	4,210	4,21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드론(R&D) 사업은 2027년에 5개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는 국방상용 드론의 모듈화·개방화·공통화를 위한 기술, 부품국산화·상호운용성·보안성등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832-303의 내역사업

[국방드론(R&D) 내 세부과제 현황]

(단위: 억원)

과제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구목표
① 군 기술수요 기반 국방상용 드론 HW·SW 모듈형·개방형 아키텍처 기반 공통 플랫폼 설계 기술개발	67.5	2027 ~2030년	드론(기체/조종기)를 모듈화·표준화하여 제조사 무관하게 상호 호환이 가능한 개방형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특정 부품이 단종되거나 파손되더라도 제조사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호환 모듈로 즉각 교체할 수 있는 지능형 개방형 플랫폼 구축
② 지능형 유·무인복합체계를 위한 온디바이스AI 기반 감시정찰임무 기술개발	52.5	2027 ~2030년	온디바이스AI 기반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용이한 공통구조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고 확정하는데 집중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용 프레임워크 기술
③ 개방형 모듈러 아키텍처 기반 GCS 플랫폼 기술개발	30.0	2027 ~2030년	특정 기체에 종속되지 않는 국방 개방형 표준(K-MOSA) 기반의 통합 GCS 플랫폼 확보를 통해 드론 운용의 기술적 파편화 해소 및 상호운용성 극대화
④ 국방 상용 드론 부품국산화·상호운용성·보안성·AI신뢰성 검증기술 및 신뢰목록 검증체계 개발	22.5	2027 ~2030년	드론 기체, 핵심 부품, SW 및 탑재 AI의 무결성을 객관적, 자동으로 평가하는 4대 검증 도구 세트를 개발하여 K-Blue UAS 검증 체계 확보
⑤ 개방형 모듈러 아키텍처 기반 민·군 공통 활용 드론 실증 모델 및 시험 기술개발	90.0	2026 ~2029년	드론용 모듈러 아키텍처 및 플랫폼 실증기술 개발 / 모듈단위, 통합시스템 적합성 검증 환경 실증모델 개발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드론장비 및 예비군 드론장비 사업[2]은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하여 교육용 상용드론을 도입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722억 6,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 코드: 일반회계 2833-301의 내역사업

드론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예산은 수송활동 세부사업[3] 내에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용 상용드론 물량을 반영하여 2027년도 드론보험료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1,500만원이 증액된 56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교육용 드론구매 및 드론보험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육훈련용 드론장비	-	-	-	86,401	86,401	순증
드론장비	-	-	-	56,669	56,669	순증
예비군 드론장비	-	-	-	15,597	15,597	순증
수송활동	122,778	133,575	133,575	136,790	3,215	2.4
드론보험료		3,637	3,637	5,652	2,015	55.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첫째, 국방 드론 부품의 신뢰성·상호운용성·보안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 및 기술이 충분하게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2026년부터 대규모로 교육용 상용드론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부품국산화 검증, 통신·암호 취약점 최소화, 상호운용성 확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2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교육용 상용드론을 11,377대 구매한 후, 2027~2029년 동안 총 48,869대의 교육용 상용드론을 구매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예산은 296억원으로 원칙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2027년부터 추진할 본사업의 총사업비는 1,466억 700만원으로 사업타당성 조사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26년 현재 KIDA 주관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2026년 10월 말~11월 초에 도출될 예정이다.

3) 코드: 일반회계 2336-301

[교육용 상용드론 확보]

(단위: 대, 억원)

구분	시범사업	후속사업			합계
	2026	2027	2028	2029~	
육군	11,184	11,184	11,184	12,102	45,654
해군	-	1,000	1,200	1,300	3,500
공군	-	580	600	1,200	2,380
해병대	81	1,600	1,600	1,700	4,981
예비군	112	2,956	162	501	3,731
합계	11,377	17,320	14,746	16,803	60,246
구매 금액	295.8	519.6	442.38	504.09	1,761.87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런데 최근 드론부품과 관련한 공급망, 보안성, 품질 검증 등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를 고려하여 미국 국방부는 성능 및 보안이 인증된 상용 드론을 군에서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Blue-UAS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인증제도를 참고하여 K-Blue UAS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해당 인증제도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국산화 및 원산지 확인, 드론 관련 보안 적합성 인증, 핵심기능 검증 등이다.[4] 현재 계획상으로 인증기술 개발은 국방부 소관 민군기술협력(R&D) 세부사업 내 국방드론(R&D) 내역사업의 과제 중 하나로 진행(2027~2030년)될 예정이다.

4) 공급망, 보안, 성능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전력체계의 인증제도에 대한 정책수립, 인증제도를 활용한 구매, 인증취소 등의 내용을 반영한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937)이 국방위원회에 회부('26.9.1.)되어 있다. 제정안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없는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임무중심의 소요결정, 유연한 협약 및 계약,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와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국방첨단전력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K-Blue UAS 주요 검증항목]

공급망	국산화 및 원산지 확인을 통한 공급망 검증
보안성	드론의 식별, 인증, 데이터 보호, 네트워크 보안 등 보안 적합성 검증
품질	드론의 기능, 성능(기본, 비행) 확인을 통한 핵심 기능 검증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에 따라, 2027년에 도입할 교육용 상용드론 물량에 대해서는 K-Blue UAS 인증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2026년 시범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의뢰하여 국산화, 성능인정 등을 수행했으며, 2027년에도 동일하게 국산화 등 인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향후 군 내 표준으로 운영될 K-Blue UAS를 위하여 인증기술을 개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6~2027년 동안 도입한 교육용 드론은 향후 운영될 K-Blue UAS 체제에서 제시한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군의 드론 숙련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교육용 드론을 조속하게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K-Blue UAS 등과 같은 인증체계 도입이 선행된 후 교육용 드론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그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되었을 필요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핵심부품 국산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안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확립된 인증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교육용 드론에 대해서도 부품국산화 및 통신보안과 관련된 사항들은 보다 면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K-Blue UAS 인증제도의 운영기관과 기술개발기관이 서로 다른데,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도입 시점과 기술 개발완료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드론기업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K-Blue UAS 인증제도의 운영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할 예정인 반면에, 그와 관련된 인증기술의 개발 등은 국방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K-Blue UAS 인증기술 개발 및 운영]

구분	인증기술 개발	인증제도 운영
소관	국방부	방위사업청
세부사업 (내역사업)	민군기술협력(R&D) (국방드론(R&D))	K-Blue UAS 인증제도 구축
주관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국방기술품질원

자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런데 제도운영 및 기술개발 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K-Blue UAS 제도의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기술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드론기업들에게 충분한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 상용 드론 부품국산화·상호운용성·보안성·AI신뢰성 검증기술 및 신뢰목록 검증 체계 개발' 과제를 통해서, ① AI 기반 4대 핵심요소[5] 자동 검증기술 및 도구 개발, ② 통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험평가기준 개발, ③ K-Blue UAS 신뢰목록 체계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자 한다. 해당 과제의 연구기간은 2027~2030년까지로 설정되었고,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2.5억원이다.

5) 이는 세부적으로 (부품·SW) X-RAY/메타러닝 기반 부품 진위 판별 및 SW 무결성 검증도구, (상호운용성·보안) 이종드론 간 상호운용성 시험 규격화 및 암호/보안 적합성 자동 평가 도구, (AI신뢰성) NPU탑재 및 군집 자율비행 AI의 판단 오류·적대적공격 취약성 평가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K-Blue UAS 제도운영을 위한 사전작업을 위하여 2027년도 신규 세부사업으로 'K-Blue UAS 인증제도 구축' 사업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안 4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다. 방위사업청의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시험인증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8년부터 핵심구성품에 대한 단위 인증도 개시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K-Blue UAS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K-Blue UAS 인증체계 추진 마스터플랜]

구분	추진목표	주요 추진 내용
2026	인증체계 초안 수립 및 운영기반 정립	- 드론체계 성능, 환경 시험방법 표준서 제정 - 핵심구성품 8종 시험방법 기준서 작성
2027	시범 인증 수행 및 인증제도 런칭	- 시험인증 수행 - 드론체계 대상 인증제도 런칭(대상: 25kg 미만 쿼드콥터)
2028	인증제도 정착 및 범위 확대	- 핵심구성품 단위 인증 시작 - 고정익/회전익 드론체계 시험방법 기준 검토
2029	인증제도 고도화	- 인증제도 보완 및 고도화 - 중/대형드론 체계 시험방법 기준 검토
2030	인증제도의 국제연계 강화	- 미국 Blue-UAS와 상호인증 추진 - 중/대형드론 인증업무 시작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는 인증제도의 총괄·기획을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K-Blue UAS의 구축을 위하여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인증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제도 정착과정에서 국가기술표준원, TTA 등이 방위사업청으로 관련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R&D 과제를 통한 기술개발과정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험방법 및 표준서 확정일정이 순연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드론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을 우려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2027년에 25kg 미만 쿼드콥터의 드론체계를 대상으로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국방부는 2027년부터 기술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므로 두 부처 간 일정이 상이한 측면이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방부가 개발할 기술을 25kg 미만 쿼드콥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2030년에는 R&D 과제에서 확보된 기술을 적용하여 25kg 미만 쿼드콥터의 시험방법 및 표준서가 개정될 수도 있으며, R&D 과제 추진 중에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표준서 등이 변경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기존 기술에 대한 진화적 개발을 통해서 인증기술을 확보하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 제도운영에 미칠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최종적으로 확보할 기술과 연구개발 착수 당시의 기술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시험방법이나 표준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당초에는 K-Blue UAS를 고려하지 않고서 개발된 기술들이므로, K-Blue UAS라는 공통 목표를 위하여 기술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도 있다.

그 과정에서 K-Blue UAS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 드론기업들은 인증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고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한될 것이므로, 국방부는 K-Blue UAS 인증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군구조개편 예산안 분석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역은 전투임무에 집중하고, 예비전력과 민간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효율적 군 인력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 GOP대대 부대종합관리, 민통초소 운영 및 주둔지 경비 등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 활용을 시범 도입하여 현역 장병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 관련 계획]

구분	내용
부대종합관리	제초, 제설, 재해예방활동 및 시설물 관리 등 대대급 부대의 일반 관리업무를 종합하여 민간에 아웃소싱
민통초소 운영	민간인 출입통제선 초소(민통초소) 근무를 아웃소싱
주둔지 경비	위병소 차량·인원 출입관리, CCTV 관제 등 부대 일반경비 업무를 민간 경비기업에 아웃소싱 (※ 유사시 상황대응은 지금과 동일하게 군의 번개조, 5분대기조 병력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

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2026.9.3.)

또한, 상비예비군을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평시부터 숙련된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상비예비군 확대 관련 계획]

구분	내용
상비예비군 확대	평시 추가 훈련을 통해 전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도록 상비예비군 운영 확대 (2026년 3,700명 → 2027년 7,000명)
예비군의 전문성 활용 및 강화와 연계	상비예비군은 군과 민간에서 이미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드론, 박격포, 지휘통제, 장갑차 운용 등 첨단·전문분야에 운용

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2026.9.3.)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3-1.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 추진 시 고려사항

가. 현 황

시설유지관리 사업[1]은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65억 5,900만원 증액된 1조 1,873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부대운영지원[2] 사업은 국방부 및 각 군의 기관, 부대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유지소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1억 4,300만원 증액된 3,50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시설유지관리 및 부대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시설유지관리	1,089,633	1,040,787	1,040,787	1,187,346	146,559	14.1
부대운영지원	218,940	295,067	295,067	350,210	55,143	18.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을 위한 예산안은 시설유지관리 세부사업 내에 부대종합관리사업, 부대운영지원 세부사업 내 민통초소 운영사업 및 주둔지 경비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3개 개별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 합계는 33억 5,000만원이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5536-301

2) 코드: 일반회계 7131-315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 관련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시설유지관리	부대운영지원	
개별 사업명	부대 종합관리	민통초소 운영	주둔지 경비
2027(안)	847	1,845	658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영역별 성격을 고려하여 확대속도를 조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책임의 범위, 위탁구조(인건비, 이윤 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안보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 세부내용으로 군의 부대와 병력구조 등 '군 구조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 각 군 일선부대를 첨단 과학기술과 무기체계로 정예화하며 병력은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역병은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는 기존에 현역들이 담당해 왔던 비전투분야의 과업을 민간으로 아웃소싱하고, 현역 병력들은 전투분야의 과업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는 3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편성하였다.

3개 분야에서의 아웃소싱 범위를 살펴보면, 부대 종합관리사업에서는 제초, 제설, 배수로 정비 등 대대급 부대의 일반 관리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할 예정이며, 민통초소 운영사업에서는 민통선 이북으로의 민간인 출입을 관리하는 초소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주둔지 경비사업에서는 CCTV 관제 및 위병소 출입통제 업무를 위탁할 예정인데, 상황발생 시 현장대응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군 병력이 담당하게 된다.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 시범사업 현황]

구분	아웃소싱 범위	시범사업 대상	운영방안
부대 종합관리	대대급 부대의 일반 관리업무 (제초, 제설, 배수로 정비 등)	GOP 1개 대대	월별 기후조건에 따른 제초·제설 등과 함께, 시설물 점검 등 연중 상시 업무도 병행
민통초소 운영	민통선 이북지역으로의 민간인 출입을 관리하는 초소 근무	6개 초소	4인 1조 3개조
주둔지 경비	CCTV 관제, 위병소 출입통제 등 (※상황발생 시 현장대응은 군 병력 담당)	육군 학생종합군사학교, 종합행정학교	(CCTV) 2인 1조 3개조 (위병소) 4인 1조 2개조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일반 병사의 충원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초급간부의 충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전투과업으로 인한 현역들의 업무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현역들이 전투과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투분야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전투분야를 민간으로 아웃소싱할 필요성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군 상생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다만, 시범사업이 진행될 3개 사업의 성격 및 대상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물량 및 속도를 다르게 설정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한 취약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향후 민간으로 아웃소싱할 비전투분야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군 내부의 보안, 국가 안보 등과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민통초소 운영사업 및 주둔지 경비사업은 비전투분야 중에서도 보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분야이므로,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전체 군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부대 종합관리사업은 급식운영과 같이 부대의 일반 관리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간 조리원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확대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다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에서 부담할 책임의 범위, 이들에게 지급할 보수 규모와 관련한 실제 운영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환류할 필요가 있다.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황발생 시 현장대응업무를 군 병력이 여전히 담당하게 되더라도 해당 상황의 발생원인 규명 및 책임의 귀속과 관련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투분야라고 할지라도 국가안보와 연관성이 높은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의 책임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부대의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상황이더라도 유관 영역에서의 책임도 같이 검토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윤, 인건비, 수당 등 보수 규모와 관련해서도 시범사업 과정에서 그 운영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업체 및 그 근로자가 수취하게 될 기본급, 수당, 이윤 등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들이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하려는 민간업체가 없는 관계로 현역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민간이 수취하게 될 이윤, 기본급, 수당 등의 규모가 현역 부사관의 보수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군 내부에서의 인력유출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특히 민통초소 운영, 주둔지 경비 등의 업무는 군 내부 인력의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민간업체들 입장에서도 채용선호가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 관련 예산안 산정근거]

(단위: 천원)

구분		부대 종합관리	민통초소 운영	주둔지 경비	
				위병소 근무	CCTV 근무
인건비	직접 (기본급, 수당)	3,570	2,868	2,870	2,701
	간접 (연금,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355	621	412	388
기타비용 (재료비, 관리비, 이윤)		3,133[1)]	782	728	728
합 계		7,058	4,271	4,010	3,817

주: 1) 제초, 제설 등에 필요한 장비의 구매,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현재 국방부는 2027년도 시범사업의 결과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에 대한 검토와 시범사업을 진행한 부대 및 민간업체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대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군 내부적인 수요, 부대의 위치 및 임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반 관리업무의 아웃소싱은 확대일정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 부대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 부대의 환경 등의 사유로 실제 운영양상은 부대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과는 다른 환경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방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비전투분야의 민간 아웃소싱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시범사업의 운영방안 및 향후 확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보안관련 문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도 있다. 또한 책임의 범위와 민간위탁의 구조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나아가 향후 군 전체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과 관련한 체계적인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상비예비군 예산안 적정규모 조정 필요

가. 현 황

예비군간부비상근복무[1] 내역사업은 미래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전시 부대전투력 유지를 위하여 비상근예비군(이하 '상비예비군')[2]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1억 3,900만원이 증액된 26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상비예비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동원훈련	42,573	51,371	51,371	76,807	25,436	49.5
예비군간부비상근복무	8,608	9,158	9,158	26,297	17,139	187.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단기 상비예비군의 평일 및 휴일 참석률, 장기 상비예비군의 실제 근무일수 등 예산안 산정근거가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비예비군 사업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평일 응소에 따른 직장인 및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632-303

2) 현행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는 비상근예비군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비상근예비군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이 개정('26.6.9.)되어 시행예정('26.12.10.)이므로, 보고서에는 상비예비군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상비예비군은 유사시 예비군으로 다수 충원되는 동원위주부대(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될 예비역(장교, 부사관, 병)을 평시에 소집 및 훈련시켜서, 전시에도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하여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제도이다.

상비예비군은 연 30일 이내 근무하는 단기 상비예비군과 연 180일 이내 근무하는 장기 상비예비군으로 구분된다. 단기 상비예비군에게는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지급하는 반면에, 장기 상비예비군에게는 평일과 휴일 모두 15만원을 지급한다.

[상비예비군 제도 요건, 기간 및 훈련보상비]

구분	단기 상비예비군	장기 상비예비군
자격요건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1]	
소집기간	연 30일 이내 (15일 내외, 월 1~2회)	연 180일 이내 (40~180일 이내 선택)
훈련보상비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15만원 (평일·휴일 동일)

주: 1) 병사는 연차 구분 없이 만 40세까지 지원가능
자료: 예비군 누리집(www.yebigun1.mil.kr)

2021~2024년 동안 상비예비군 운용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운용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26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2026년 8월 말 기준 상비예비군 규모는 3,770명이다.

[2021~2026년 상비예비군 운용현황]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8월 말)
정원	3,011	3,825	4,369	4,610	3,700	3,700
운용계획(A)	3,011	3,825	4,416	4,655	3,823	3,806
최종운용(B)	2,912	3,289	3,369	3,835	3,615	3,770
B/A	96.7	86.0	76.3	82.4	94.6	99.1

자료: 국방부

2027년도 예산안 산정근거를 살펴보면, 장·단기 상비예비군 대상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3]하였으며, 단기 상비예비군의 응소율도 10%p 높게 가정하였다. 그에 따라 상비예비군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9억 7,100만원 증액된 256억 4,100만원이다.

[상비예비군 사업의 2026~2027년도 예산(안) 산정근거]

구분	2026년도 예산	2027년도 예산안
단기	(평일) 3,500명 × 100,000원 × 4일 × 60% (휴일) 3,500명 × 150,000원 × 8일 × 60%	(평일) 6,300명 × 100,000원 × 4일 × 70% (휴일) 6,300명 × 150,000원 × 8일 × 70%
	= 33억 6,000만원	= 70억 5,600만원
장기	(평·휴일) 200명 × 150,000원 × 177일	(평·휴일) 700명 × 150,000원 × 177일
	= 53억 1,000만원	= 185억 8,500만원

자료: 국방부

다만 단기 상비예비군의 평·휴일 응소율이 과거 운용실적과 다르게 산정되었고, 장기 상비예비군의 훈련일수도 실제 운용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우선, 예산 산정근거에 반영된 단기 상비예비군의 평일 및 휴일 응소율은 70%이지만, 2024~2025년 동안 단기 상비예비군의 평일 응소율은 47.4~54.4% 수준으로 현재 예산안은 실제 대비 높게 설정되었으며, 단기 상비예비군의 휴일 응소율은 90.2~95.6% 수준으로 현재 예산안은 실제 대비 낮게 설정되었다.

국방부는 평일 응소율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일정 등으로 평일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업무일정이 없는 휴일에 참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감안할 때, 평일 응소에 대한 직장인 및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3) 국방부는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을 개정하여, 단기 5,000명, 장기 700명으로 정원이 규정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정원을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2021~2026년 상비예비군 훈련참여율]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8월 말)
단기	평일	미실시	34.0	53.8	54.4	47.4	56.6
	주말		43.8	73.7	90.2	95.6	66.3
장기			92.0	91.7	90.7	88.5	73.2

자료: 국방부

다음으로 예산 산정근거에 반영된 장기 상비예비군의 근무일수는 일괄적으로 최대 근무일수인 180일에서 동원훈련 2박 3일을 제외하고 177일로 산정되었는데, 실제로는 직위별 훈련이 필요한 일수에 따라 70·100·180일로 유형을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 등 운용현황을 면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4)]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비예비군의 응소율, 실제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상비예비군 사업의 예산안을 적정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직장인 및 기업의 평일 응소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4) 국방부는 9월 말~10월 초 정기모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기 상비예비군의 각 직위별 근무일수가 공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4 군배상금 예산안의 규모 검토 필요

가. 현 황

군배상금 사업[1]은 국가 또는 군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2억 8,900만원 증액된 503억 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일반배상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군배상금	179,426	20,012	20,012	50,301	30,289	151.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국가배상법」 제10조[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3]에 따라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기관은 국방부이며, 군배상금 예산을 사용하여 과거사 또는 군소음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국가배상금을 집행하고 있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136-301

2) 「국가배상법」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 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②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를 둔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장

나. 분석의견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무지출인 국가배상금 지급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연됨에 따라 연이율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국고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2027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실제 소송진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이·전용 등의 실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0.11.)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편성규모를 감소시켜왔으나, 과거사와 관련된 소송배상금 지급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전용 등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1,718억 7,400만원에 달하였다.

국방부는 과거사와 관련된 대규모 소송에 따른 배상판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배상금 소요액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설명한다. 일례로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5·18 민주화운동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관련 배상소송이 급증하였다고 한다.[4)]

4)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라고 결정하였다.(2021.5.27. 선고 2019헌가17)

2025년의 경우 이·전용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상황으로, 국방부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상소 취하 및 포기결정(2025년 9월),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상소 취하 및 포기결정(2025년 10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배상금 판결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이·전용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2021~2027년 군배상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	186,909	-	1,000	187,909	185,000	-	2,909
2022	82,709	-	16,294	99,003	98,908	-	95
2023	27,705	-	60,693	88,398	87,898	-	500
2024	17,689	-	118,049	135,737	135,737	-	-
2025	17,689	-	171,874	189,563	179,426	130	10,007
2026[1)]	20,012	130	71,332	91,474	89,645	-	-
2027(안)	50,301	-					

주: 1) 2026년 9월 초 기준
자료: 국방부

군배상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일반배상금의 지급인원 및 금액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2023~2024년 동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일반배상금 지급금액이 가장 컸으나 2025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삼청교육대, 보도연맹과 관련한 일반배상금 지급금액이 2023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일반배상금 지급인원 및 금액]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과거사 관련	5·18 민주화운동	1,664	56,344	1,844	85,431	430	14,597	24	1,687
	삼청교육대	18	1,174	45	2,445	837	55,953	513	30,267
	보도연맹	193	5,919	1,194	27,686	2,449	50,272	1,181	31,276
	한국전쟁	1	30	-	-	207	4,199	-	-
	여순사건	-	-	11	1,449	157	5,390	255	9,292
	녹화사업	-	-	96	5,963	186	13,060	34	1,842
	납북어민	-	-	-	-	80	3,905	4	86
	형무소사건	-	-	19	965	23	813	20	530
	제주4·3사건	56	1,176	-	-	690	14,524	222	3,840
	기타 과거사	101	5,985	17	1,385	142	4,413	80	1,964
	소계	2,033	70,628	3,226	125,324	5,201	167,126	2,333	80,784
무단점유		41	2,691	53	1,726	30	2,156	15	211
소송비용		75	545	38	225	51	319	15	96
기타 구상금		60	2,463	64	3,392	59	2,715	39	1,915
합계		2,209	76,327	3,381	130,667	5,341	172,316	2,402	83,006

주: 2026년의 경우 9월 10일 기준
자료: 국방부

2026년 9월 기준 확정판결 등으로 인한 일반배상금 소요발생액은 2,026억 1,100만원이지만 실제 집행액은 830억 600만원에 불과하여, 국가가 즉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96억 500만원이 소송당사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하였다.

[2026년 일반배상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1분기	2분기	3분기[1)]	누적
집행액	50,618	32,385	3	83,006
소요발생액	59,606	77,674	65,331	202,611

주: 1) 9월 10일 기준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에 따라 국방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5] 및 대통령령[6]에 근거하여 지연이자(= 원금 × 12% × (지연일수 / 365))가 가산된 금액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2026년 9월 기준 지연이자 실제 지급액은 27억 8,200만원이다.

[일반배상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지급액]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9월 11일)
455	2,619	8,082	6,239	2,782[1)]

주: 1) 2026년 1~3월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만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발생 중인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은 예산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음. 국방부가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2026년 지연이자 지급예상 총액은 102억 1,000만원임.
자료: 국방부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연이자 발생문제는 2027년 예산집행과정에서 재발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국방부가 추계한 2027년도 일반배상금의 예상소요액은 2027년도 예산소요액은 일반배상금 1,571억 6,900만원(= 표의 ① + ② + ③)이라고 설명한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302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실소요 추계액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방부의 2027년도 예산소요액 산정내역]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건수	청구액(A)	평균 지급률(B)	판결액 추계치 (A × B)
소송	국방부	55	23,954	37.4	8,969
	육군	802	340,884	38.9	132,649
	해군	164	19,873	31.0	6,151
	공군	17	12,559	46.2	5,800
	소계	1,038	397,270	38.7	① 153,569
변호사 위임료		② 600(= 2023~2025년 평균 집행액)			
지배심·특배심		③ 3,000(= 2023~2025년 평균 집행액)			

주: '소계'의 판결액 추계치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의 판결액 추계치의 합계로 계산
자료: 국방부

소송의 진행경과, 판결확정시점, 배상금 지급규모 등을 예산안 편성 시점에 정확하게 예측하여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소의 청구액, 과거 지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배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이용(移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액의 규모가 클수록 이용받을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시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특히 예산부족 문제가 상반기부터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들에서도 불용예상액을 추계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참고로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군 배상금에 대하여 관련 소송 경과 및 기존 피해자 통계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면밀하게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과 다른 사업으로부터 연례적으로 대규모의 이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따라서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가배상금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연지급되는 상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연이자로 인한 추가적인 국고지출을 감안한다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실제 소송 진행경과, 청구액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5 장비획득 사업의 계약 체결 현황을 고려한 감액 필요

가. 현 황

장비획득 단위사업[1]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항공장비, 함정장비 등 군수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총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11억 7,500만원 증액된 6,82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장비획득 단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장비획득	456,052	591,122	591,122	682,297	91,175	15.4
기동장비	176,119	329,069	329,069	389,229	60,160	18.3
화력장비	19,525	21,457	21,457	20,595	△862	△4.0
항공장비	30,627	26,460	26,460	40,811	14,351	54.2
함정장비	29,966	27,759	27,759	41,290	13,531	48.7
통신전자장비	61,948	56,226	56,226	63,977	7,751	13.8
일반장비	65,366	59,488	59,488	74,013	14,525	24.4
특수장비	35,182	36,717	36,717	17,046	△19,671	△53.6
정밀측정장비	11,419	10,670	10,670	12,831	2,161	20.3
정비장비	25,900	23,276	23,276	22,505	△771	△3.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331-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나. 분석의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추진되는 장비획득사업 중 일부는 2026년 체결된 계약의 2027년도 연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므로, 계약 체결에 따른 실제 예산소요를 고려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장비획득 단위사업을 통해 획득하는 장비 중 제작기간이 짧은 것은 단년도 예산사업으로 편성되나, 제작에 일정 기간 이상이 소요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므로 다년도에 걸쳐 예산이 편성된다.

그런데 2026년에 신규 편성되어 장기계속계약을 통해 획득이 이루어지는 일부 장비의 경우, 예산편성액과 실제 계약체결 금액 간 차이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사업과 사업취소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동장비 세부사업 내 2026년에 신규로 편성되어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중인 육군 작전지휘차량(버스) 획득사업의 경우, 2026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2027년도 연부액은 4억 6,200만원이나 2027년도 예산안에는 5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1억 1,200만원이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되어 있다. 또한 경화학 소방차 등 3개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로 인하여 2027년도 예산안 12억 1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종합하면, 장비획득 단위사업 내에 과다편성된 액수는 총 47억 6,400만원이다.

[장비획득 단위사업 내 낙찰차액 및 사업취소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장비명 /계약명	예산 연부액			계약 연부액			과다 편성 (A-B)
		소계	2026	2027 (안)	소계	2026	2027 (안)	
합 계		34,252	3,061.24	31,194	29,333	2,906.25	26,430	4,764
기동 장비	(육) 자동차,경호용, 2000CC	221	1	220	181	1	180	39
	(육) 이동감호차 (군사경찰용)	413	1	412	317	1	316	96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장비명 /계약명	예산 연부액			계약 연부액			과다 편성 (A-B)
		소계	2026	2027 (안)	소계	2026	2027 (안)	
	(육) 작전지휘차량(버스)	574	1	573	463	1	462	112
	(해) 대형버스, 37인승 이상	2,349	11	2,338	2,304	11	2,293	45
	(공) 인명구조 소방차 제조(K)	2,045	1,614	431	1,954	1,613	341	90
	(공) 항공기구조 소방차 제조(K)	2,069	537	1,532	1,928	537	1,391	141
	(국직) 소방차	410	1	409	380	1	379	29
	(국직) 통합형 드론관제차량 구매	880	1	879	834	1	833	46
	(해) 경화학소방차 (사업취소)	331	33	298	-	-	-	298
	(해) 굴절사다리 소방차 (사업취소)	936	94	842	-	-	-	842
	소계	10,228	2,294	7,934	8,361	2,166	6,195	1,738
화력 장비	(해) 기관단총 라이트(탐조등)(대테러)	138	1	137	95	1	94	43
	(해) 기관단총 조준경(대테러)	282	1	281	176	1	175	106
	(해) 레이저 표적지시기	579	1	578	474	1	473	105
	소계	999	3	996	745	3	742	254
항공 장비	(해) 어뢰인양기	315	4	311	258	4	254	57
	(해) 주파수변환기 (다목적 격납고)	90	1	89	69	1	68	21
	(해) 해상대테러 작전지원용 드론[1]	400	40	360	298	40	258	102
	소계	805	45	760	625	45	580	180
함정 장비	(육) 보트,15인승	268	1	267	220	1	219	48
	(육) 보트, 상륙용, 공기팽창식(SG-KM7)	237	1	236	197	1	196	41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장비명 /계약명	예산 연부액			계약 연부액			과다 편성 (A-B)
		소계	2026	2027 (안)	소계	2026	2027 (안)	
	(해) 공기압축기, 중압	598	4	594	505	4	501	93
	(해) 연료유 승압펌프 (72GPM(16.5m3/h)	161	37	124	138	37	101	23
	(해) 전원공급기 (24V 200A)	461	1	461	359	1	358	103
	(해) 항해기점장비 NAVIGUIDER-01	347	2	346	342	1	341	5
	(해) 갑판이동장치, 잠수함승무원구조정 (탐색/구조)	588	28	560	549	28	521	38
	(해) 소화 및 빌지펌프 (TE-F)	127	28	100	112	28	85	15
	(해) 흡입조절기 검사수리기(탐색/구조)	51	1	50	49	1	48	2
	(해) 헬기이송장치 (사업취소)	84	23	61	-	-	-	61
	(해병) 고속고무보트	402	0.23	402	329	0.23	329	73
	소계	3,324	125.23	3,201	2,800	102.23	2,699	502
통신 전자 장비	(육) 전파환경측정분석기	3,322	1	3,321	3,226	1	3,225	96
	(해) 무선망 원격운용장치	596	60	536	455	60	395	141
	(해) 수중3차원영상전시기	565	57	509	430	57	374	135
	(공) 소규모 독립부대 CCTV구매(u)	760	4	756	568	0.01	568	188
	소계	5,243	122	5,122	4,679	118.01	4,562	560
일반 장비	(육) 구레이다	1,617	1	1,616	1,370	1	1,369	247
	(육) 기중기 트럭탑재식, 상용	2,563	1	2,562	2,562	1	2,561	1
	(육) 포크, 지게차용 (15000파운드)	879	1	878	869	1	868	10
	(해) 공병임무용 스키드로더	1,632	50	1,582	1,423	50	1,373	209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장비명 /계약명	예산 연부액			계약 연부액			과다 편성 (A-B)
		소계	2026	2027 (안)	소계	2026	2027 (안)	
	(해) 견인용 도져	585	29	557	568	29	540	17
	(해) 대형굴삭기 (타이어형)	587	29	557	502	29	473	85
	(해) 습지도져	1,111	24	1,087	847	24	823	264
	(해) 대형굴삭기 (궤도형/롱리치)	305	15	290	285	15	270	20
	(해) 컴퓨터레이저조각기 [UV인쇄기]	136	1	135	112	1	111	24
	(해병) 모터 그레이더	457	320	137	382	320	62	75
	소계	9,872	471	9,401	8,920	471	8,450	952
정밀 측정 장비	(공) 재료분석 분광기 구매(U)	363	0.01	363	357	0.01	357	6
	소계	363	0.01	363	357	0.01	357	6
정비 장비	(육) X-선장비 (450KeV) 시스템, 비파괴 검사장비	3,418	1	3,417	2,846	1	2,845	572
	소계	3,418	1	3,417	2,846	1	2,845	572

주: 1) 해당 계약의 2027년도 예산안은 국방인공지능 프로그램 내 '작전/업무지원용 드론장비'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었음
1. 사업취소된 경우를 제외하면, 2026년에 신규로 체결한 계약 중 계약기간이 2026~2027년으로 설정된 장기계속계약만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처럼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장비획득 사업 중 계약상 2027년도 연부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되거나 사업이 취소된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금액만큼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2)]

2) '(해) 해상대테러 작전지원용 드론'은 2026년에 항공장비 세부사업에 편성되었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방인공지능 프로그램 내 '작전/업무지원용 드론장비'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었으므로,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과다편성액 1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작전/업무지원용 드론장비' 세부사업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

6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급여 관련 고려사항

국방부는 군인, 군무원 및 일반 공무원 외에도 민간근로자를 채용하여 조리,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민간근로자는 총 13,733명이며, 이는 다시 공무직근로자 11,713명과 기간제근로자 2,020명으로 구성된다.[1)]

[국방부 민간근로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방부 본부	국군 복지단	기타 국직	육군	해군	해병	공군	합계
정원(A)		44	3,274	1,874	6,989	841	576	1,192	14,790
현원	공무직	25	2,891	1,339	5,630	587	380	861	11,713
	기간제	12	165	329	941	188	130	255	2,020
	소계(B)	37	3,056	1,668	6,571	775	510	1,116	13,733
운영률(B/A)		84.1	93.3	89.0	94.0	92.2	88.5	93.6	92.9

주: 1. 2026년 7월 1일 기준
2. 기간제근로자 정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음
자료: 국방부

국방부 소속 민간근로자의 인사관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인력 소요제기, 채용 단계에서부터 인사·급여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관련 사항이 소요기관, 기관·제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에 따르면, 공무직근로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한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국방부 민간근로자 채용방식]

구분	국방부 본부	국직 / 소속기관	각 군
채용권자	장관	부대장 / 기관장	참모총장
채용 소요 제기	사업부서	운영부서	사업장별 운영부서
인력소요·정원통제	조직관리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국군조직담당관
	*복지기금 운용 공무직: 복지정책과		
채용공고 / 선발	운영지원과	인사 / 운영부서	사업장별
인사관리 / 급여	각 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운영 / 재정부서	사업장별 운영 / 재정부서

자료: 국방부

민간근로자 중에서도 비중이 큰 공무직근로자에 한정하여 인건비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일반회계 41개 세부사업, 군인복지기금 1개 세부사업에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2022~2025년 동안의 상용임금 집행률은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2~2027년 국방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상용임금	예산	460,492	490,840	509,988	516,516	565,226	626,726
	집행	410,044	445,197	472,617	484,965	-	-
	집행률	89.0	90.7	92.7	93.9	-	-
고용부담금	예산	82,035	92,184	97,227	97,634	108,602	128,096
	집행	76,494	87,156	91,005	87,390	-	-
	집행률	93.2	94.5	93.6	89.5	-	-

자료: 국방부

공무직근로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조리원이 2,833명으로 가장 인원이 많으며, 그 다음은 시설물관리 2,599명, 고객관리 2,402명, 환경미화(청소원) 1,924명 순이다.

[직종별 공무직근로자 현황]

(단위: 명)

조리원	경비원	환경미화 (청소원)	시설물관리	행정사무보조
2,833	59	1,924	2,599	567
상담관	고객관리	훈련전문평가관	기타[1)]	합계
586	2,402	-	743	11,713

주: 1) 조경관리, 차량운행, 교관(강사), 이미용, 세탁, 정비원, 시스템관리 등
1. 2026년 7월 1일 기준
자료: 국방부

6-1. 공무직근로자 적정임금 보장과정에서 체계적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가. 현 황

국방부는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7년도 상용임금 예산안은 전년 대비 615억원 증액한 6,26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7년도 고용부담금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4억 9,400만원 증액한 1,28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같은 상용임금 예산안의 증액이 발생한 이유는 매년 진행되는 일정 수준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공무직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임금에 더하여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안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는 민간조리원, 환경미화, 시설물관리 등 직종별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예산을 구분할 수 있는데, 2027년도 상용임금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환경미화이며, 그 다음은 민간조리원, 시설물관리 순이다. 군인복지기금 재원으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는 근무시설별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예산을 구분할 수 있는데, 2027년도 상용임금 계획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근무시설은 복지회관이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국방부 공무직근로자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		2027(안)		(B-A)/A
		상용임금(A)	고용부담금	상용임금(B)	고용부담금	
합 계		565,226	108,602	626,726	128,096	10.9
일반회계	소 계	354,166	66,753	399,075	82,315	12.7
	민간조리원	91,908	18,693	106,789	21,711	16.2
	환경미화(청소원)	57,222	11,330	66,923	13,484	17.0
	시설물관리	109,236	21,406	122,216	24,634	11.9
	상담관	42,661	5,499	47,551	9,563	11.5
	교육훈련평가관	21,074	3,382	23,097	3,526	9.6
	기타[1)]	32,065	6,443	32,499	9,397	1.4
군인복지기금[2)]	소 계	211,060	41,849	227,651	45,781	7.9
	체육시설	62,013	12,946	63,242	12,718	2.0
	복지회관	15,743	2,241	22,713	4,568	44.3
	휴양시설	12,433	2,502	12,481	2,510	0.4
	판매시설	112,170	22,246	120,302	24,193	7.2
	기타시설	8,700	1,914	8,912	1,792	2.4

주: 1) 조경관리, 차량운행, 교관(강사), 세탁 등
2) 직종이 아니라 시설별로 편성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공무직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각 부대별·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과 관련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예산안은 기획예산처 등이 처우개선율, 정원 및 신규 증원소요, 고용부담금 등의 총량적 요소를 반영하여 편성하고, 각 중앙관서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규정, 직종별 보수표, 단체협약·임금협약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026.4.28.)을 발표하면서 생활임금의 평균(최저임금의 118%)을 기간제근로자의 적정임금으로 설정하고, 적정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확인되어, 이들에 대해서도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안이 반영되었다. 그에 따라, 국방부 소관 공무직근로자의 2027년도 상용임금 예산안은 전년 대비 615억원 증액한 6,26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7년도 고용부담금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4억 9,400만원 증액한 1,28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다.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적용될 적정임금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2027년도 최저시급 기준 263만 8,834원이다. 정부는 월 정액임금이 2027년도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때 월 정액임금의 산정범위는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 수당 등이 포함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동일하다.

[2027년도 적정임금]

○**적정임금** = 최저임금의 118% 적용 = **2,638,834원**
○**최저임금** = 10,700원/시간 × 월 209시간 = **2,236,300원**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이와 동시에, 정부는 가족수당 및 군경력수당을 신설하여 모든 공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국방부의 경우 가족수당 및 군경력수당 지급을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141억 6,816만원을 편성하였다.

[국방부 공무직근로자 가족수당 및 군경력수당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지급기준(안)	지급 대상인원	2027년도 예산안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 첫째 자녀 5만원, 둘째 자녀 8만원, 셋째자녀 (이상) 12만원, 부양가족 2만원	10,753	9,639,720
군경력수당	▫ ~1년 이하: 3만원 ▫ 1년 초과~2년 이하: 6만원 ▫ 2년 초과: 9만원	4,641	4,528,440
합 계		15,394	14,168,160

자료: 국방부

공공부문 내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적정임금 이하로 월 임금을 지급받아왔던 공무직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보전분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국방부의 경우 다양한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기에, 각 직종별 특수성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하에서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직근로자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말 기준 공무직근로자 채용규모가 3,000명 이상인 중앙관서는 총 7개이며, 이 중에서도 1만명 이상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앙관서는 국방부 1개이다.

[2021~2025년 중앙관서별 공무직근로자 채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방부	9,819	11,230	11,404	11,597	11,4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39	6,099	5,991	5,935	6,080
경찰청	3,634	3,756	3,594	3,831	3,832
고용노동부	3,220	3,381	3,441	3,582	3,610
행정안전부	3,396	3,373	3,452	3,511	3,568
법무부	3,410	3,391	3,462	3,459	3,516
문화체육관광부	2,852	2,923	2,996	3,000	3,0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Ⅲ」(2026.7.)의 '공무직근로자 임금체계 분석' 일부 발췌

국방부의 경우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가 기관·제대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부대에서 체결한 단체·임금협약에 따라서 공무직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온 수당의 형태 및 방식도 서로 다른 상황이다.[1] 실질적으로 공무직근로자 인력관리는 각 부대 자체의 수기관리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도 상이하게 책정되었고,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도입했던 수당의 당초 취지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비를 지급해왔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교통비가 적정임금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그만큼 보전분이 적게 산정되었다. 적정임금을 보장함에 따라 민간조리원의 임금도 증액되었고 처우도 개선되었으나, 과거 교통비를 도입한 것과 같이 격오지에 근무하는 민간조리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수당지급 소요가 제기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적정임금 적용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임금 부족분 보전 예시]

(단위: 원)

구분	최저임금(A)	급식비(B)	교통비(C)	적정임금(D)	보전 (D-A-B-C)
민간조리원	2,236,300	160,000	65,100	2,638,834	177,434
교통비 미지급인원			-		242,534

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조리원의 대부분은 전일제 근무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소수인원만 있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국방부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5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였고,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안을 요청하였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지급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에 가족수당 중복수혜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상황으로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중복수혜가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여 금액이 반영되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 중 직업상담원의 경우, 2026년 이전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이들에 대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지는 않았다.[2)]

가족수당은 특정 직무의 위험성, 전문성 또는 근무환경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보조성 처우항목에 가까우므로, 가능한 모든 공무직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 하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인사관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그에 기초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각 기관·부대별로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국방부의 경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하에서 각 부대별·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은 1,928명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부양가족신고서(부양가족 직장명, 기관성격, 가족수당 수령여부 등 포함)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배우자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인지 여부를 해당기관에 확인하여 중복지급을 방지하였다고 설명한다.

6-2.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등

가. 현 황

국방부 소속 공무직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 법은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제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기관·제대별 노사 협약 등에 따라서 퇴직급여제도를 달리 운영하고 있다.

[기관·제대별 퇴직급여제도 운영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국방부·국직	육군	해군	해병	공군
합 계		343	38	207	20	9	69
퇴직금 제도		109	21	62	8	9	9
퇴직연금제도	소 계	238	17	149	12	-	60
	확정급여형(DB)	117	7	54	11	-	45
	확정기여형(DC)	121	10	95	1	-	15

주: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모두 도입한 부대도 있음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첫째, 국방부 내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관리가 통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부담금(320-09목) 예산 편성 시 상용임금 1개월분의 퇴직부담금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일 것이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자료: 고용노동부 누리집

그런데 국방부의 경우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 부대의 퇴직금 소요액 및 실제 적립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① 2018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된 인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각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그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② 다수의 부대에서 3개 유형(DB형, DC형, 퇴직금제도)의 퇴직급여제도를 혼합하여 운영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인원의 퇴직금 소요액과 실제 적립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라, 퇴직금 지출소요 대비 실제 적립금액의 부족분을 확인하고, 이를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부연하였다.[1)]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전체 부대에 적용할 수 있는 공무직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관련 작업들을 진행해왔으며, 2025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ISP 결과 사업기간은 3년으로 산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40억 8,000만원으로 도출되었다. 다만 2027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

1) 국방부는 현재 각 부대별로 퇴직급여제도 운용 현황, 퇴직금 적립현황 등의 자료를 수작업으로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방부 공무직 인사관리 플랫폼 개념도]

자료: 국방부

[공무직 인사관리 플랫폼 사업비(ISP 결과)]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합계)		260-01			430-01		210-07
		SW 개발	감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상용 SW/HW 구매	암호장비 구매	상용 SW/HW 임차
총계	14,080	7,278	701	239	5,862	-	-
2027년	1,314	728	-	-	586	-	-
2028년	10,512	5,822	-	-	4,690	-	-
2029년	2,254	728	701	239	586	-	-

자료: 국방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고용부담금(320-09목)으로 상용임금 1개월분의 퇴직부담금을 별도로 편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확정한 취지대로 퇴직부담금이 적절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검토가 불가능하다.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공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충분하게 적립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지급안정성에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른 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부대 내 다수의 퇴직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추후 예산상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기에 포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각 부대별 현황 파악에만 3~4개월이 소요되어 2027년도 예산안에 퇴직적립금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전체 군에 적용할 수 있는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부는 향후 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민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액 적립의 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는 해당 제도를 선택할 경우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적립액'의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2025년 말 기준 국방부는 117개 부대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29개 부대에서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부족액 규모는 총 12억 2,140만원이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부대 최소적립금 부족현황]

(단위: 개, 천원)

구분		합계	국방부·국직	육군	해군	해병	공군
부대 수		117	7	54	11	-	45
적립금 준수	충족	88	6	45	10	-	27
	부족	29	1	9	1	-	18
	부족액	1,221,395	11,403	827,960	3,297	-	378,735

주: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25년 말 발생한 최소적립금 부족에 대하여 2026년도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향후 퇴직연금 지급소요에 충당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대 간 예산 조정 및 이·전용 등을 통해서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 부족여부는 전년도 말 기준 재정검증을 통해서 산정되므로 당해연도에는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적립은 그 자체로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퇴직연금 적립을 위하여 매년 상용임금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고용부담금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적립금 충족 의무는 매년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2027년 말에는 최소적립금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근로자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삭제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7 광주 군 공항 임시배치를 위한 시설사업 예산안 분석

가. 현 황

광주 군 공항 임시배치 사업은 군 공항 이전사업이 선양여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체시설이 건설되기 이전에 기존 부지에서 주둔 중인 부대를 다른 기지들로 임시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예산안은 일반회계 14개 세부사업과 군인복지기금 내 1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총사업비는 6,692억 5,800만원이고, 이 중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는 3,169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내 사업들은 2030년까지만 진행될 예정이지만, 군인복지기금 내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2033년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임시배치사업은 다시 (a) 장비획득 및 이전, (b) 노후화된 통신기반보강 및 통신체계이전 (c) 생활관, 식당, 간부숙소 등 시설건설[1], (d) 임시배치될 인원들의 부양가족 지원[2] 등으로 구성된다.

[광주 군 공항 임시배치 관련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개별사업[1]	총사업비	2027(안)	향후 계획		
				2028	2029	2030
합계		669,258	316,915	203,673	108,230	38,390
일반회계	모의비행훈련장비 이전 및 설치 등	31,458	4,328	16,291	10,839	-
	수용부대 관사, 간부숙소 리모델링,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 등	108,666	78,158	30,508	-	-
	기동장비(스쿠터, 트럭 등) 획득	47	47	-	-	-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531-301, 2531-304, 2532-301, 2533-302, 2533-303, 2533-321

2) 국방부는 예천·서산·중원 3개 기지로 임시배치될 인원 중 일부는 그 가족들이 광주에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기 때문에, 부양가족들이 광주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자금 이자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개별사업[1]	총사업비	2027(안)	향후 계획		
				2028	2029	2030
	유류중대, 작차중대 생활관 증축	2,859	2,585	274	-	-
	정비지원 장비 이전	8,198	1,200	6,998	-	-
	기관정비고, 정비격납고 등 정비및보급시설	202,022	74,954	83,207	43,858	-
	다목적 체육센터, 직장어린이집 등 일반지원시설	95,973	15,673	8,482	34,111	37,707
	시험대, 항공기엔진용 등 항공장비	18,378	5,002	5,364	8,014	-
	간부 및 병사식당	20,081	523	11,825	7,734	-
	노후 정보통신기반 보강, 정보통신체계 이사, 항행안전시설 이전 등	18,738	4,313	14,425	-	-
	터미널컴퓨터 등 통신전자장비획득	353	106	106	141	-
	지게차, 산소보급기 등 일반장비획득	137	132	3	2	-
	망원경 등 정밀측정장비획득	5,554	1,440	1,266	2,848	-
	비행대대, 시뮬레이터실, 유개형 리베트먼트 등 작전및경계시설	152,192	127,950	24,241	-	-
군인복지기금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2]	4,602	504	683	683	683

주: 1) 각 세부사업 내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것들을 기능·목적별로 재분류하였음
2) 2033년까지 지원할 예정
1. 2030년까지 재원투입이 계속될 사업은 일반회계 내의 다목적체육센터,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과 군인복지기금 내 군간부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기존 전투비행단의 임시배치를 위하여 선행연구, 사전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10개 시설사업(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그와 같은 선행절차를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전에 완료하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적정성 및 시설운영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은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며,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3)]

운용지침 제9조에 따르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하되,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 내역사업 중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 내역사업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4)]

한편 임시배치사업 중 예천·중원·서산기지 내에서 추진할 시설사업[5)]의 현황에 따르면, 예천기지 내 시설사업의 총사업비는 1,595억 7,100만원이고, 중원기지의 경우는 2,229억 8,000만원, 서산기지의 경우는 1,992억 4,200만원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2029년이면 완공되지만, 예천 및 서산기지의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예천 및 중원기지의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은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

3)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
제7조(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① 사전타당성 검토는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전타당성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다만,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포함)
2.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사업

4)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
제9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국방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한다.

5) 항행안전시설 이전사업, 정보통신체계 이전공사 등 정보통신체계운영지원 단위사업도 시설사업의 성격을 가지지만, 예천·중원·서산기지 외 다른 기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제외하였다.

다음 표는 예천·중원·서산기지에서 추진할 개별 시설사업 중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들을 묶어서 정리한 것으로서, 개별 시설사업들은 세부사업 내의 독립적인 하위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천·중원·서산기지 내 건설될 시설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기지	개별 사업[1]	총사업비	예산안	계획액		
				2027	2028	2029	2030
일반회계	예천	관사 및 간부숙소 리모델링,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 신축	59,909	52,857	7,051	-	-
		정비 및 보급시설	248	224	23	-	-
		다목적 체육센터, 직장어린이집 등 일반지원시설	43,483	3,746	3,448	17,347	18,942
		시뮬레이터실 등 작전 및 경계시설	55,931	42,957	12,974	-	-
		소 계	159,571	99,784	23,496	17,347	18,942
	중원	관사 및 간부숙소 리모델링	22,857	11,848	11,009	-	-
		병영생활관 증축	953	862	91	-	-
		정비격납고, 기관정비고 등 정비 및 보급시설	103,996	41,067	41,772	21,155	-
		직장어린이집 등 일반지원시설	26,349	10,995	5,034	4,423	5,897
		간부식당	3,354	90	1,974	1,290	-
		시뮬레이터실 등 작전 및 경계시설	65,471	58,134	7,337	-	-
		소 계	222,980	122,996	67,217	26,868	5,897
	서산	관사 및 간부숙소 리모델링	25,900	13,453	12,448	-	-
		병영생활관 증축	1,906	1,723	183	-	-
		정비격납고, 기관정비고 등 정비 및 보급시설	97,778	33,663	41,412	22,703	-
		다목적 체육센터	26,141	932	-	12,341	12,868
		간부식당, 병사식당	16,727	433	9,851	6,444	-
		시뮬레이터실 등 작전 및 경계시설	30,790	26,859	3,930	-	-
		소 계	199,242	77,063	67,824	41,488	12,868
합 계			581,793	299,843	158,537	85,703	37,707

주: 1) 각 세부사업 내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것들을 기능·목적별로 재분류하였음
1. 일반회계 내 장비획득, 수송활동, 과학화훈련, 정보통신체계운영지원 단위사업과 군인복지기금 내 전세자금융자 단위사업을 제외하였음
2. 단수조정으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 중에서 운용지침에서 규정한 사전타당성 검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시설사업 10개이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시설사업]

(단위: 억원)

순번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1	주거	(서산) 다목적 체육센터	261	2027~2030
2	주거	(예천) 다목적 체육센터	299	2027~2030
3	주거	(예천) 모듈러 간부숙소 (2개동)	453	2027~2028
4	시설	(서산) 관사 리모델링 (114세대)	224	2027~2028
5	시설	(예천) 유개형 리베트먼트 (23동)	289	2027~2028
6	시설	(서산) 정비격납고 (막구조)	233	2027~2028
7	시설	(서산) 탄약고 (5동)	341	2027~2029
8	시설	(중원) 유개형 리베트먼트 (17동)	216	2027~2028
9	시설	(중원) 탄약고 (5동)	341	2027~2029
10	시설	(중원) 정비격납고(막구조)	233	2027~2028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위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행연구 및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시설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26.6.29. 발표)의 하나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부지로 광주 군 공항부지 등이 선정되었기에, 선행연구, 사전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별 시설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억원을 초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2026년 10월까지 진행할 것이라 설명한다.

그런데 「2027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예산 요구시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군/기관에 대해서는 2027년도 시설예산의 편성을 유보하거나 감액 편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시설사업의 특성상 선행연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과 같은 사전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는 무엇인지, 시설단가는 적절하게 적용하였는지, 방호기준 등 군사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완비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식별하지 못한 상태로 시설사업에 착수할 경우, 사업지연요소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설단가 등을 규정하였으나, 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시설을 건축함에 따라 과도한 시설투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예천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의 경우 「2027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기 단축을 이유로 기존 군사시설에 적용되지 않았던 구조를 적용한 사례(막구조의 정비격납고, 유개형 리베트먼트 등)도 확인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들의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하기 이전에 선행연구, 사전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들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 신축사업의 경우, 「2027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시설예산안 편성기준 대비 추가반영된 금액이 있고, 공사일정을 고려할 때 2027년 연내에 완공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총사업비 전액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모듈러형 숙소 신축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예천기지의 보유공실 및 인근지역 민간주택 임대물량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모듈러형 숙소를 신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숙소를 조종교육생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452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2027~2028년 동안 예천기지 내 조종교육생을 위한 모듈러형 숙소 140실을 건설할 계획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총사업비 전액이 반영되었다.

[예천기지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 신축사업 개요]

<table>
<tr><td>구분</td><td colspan="3">내용</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3">2027~2028년</td></tr>
<tr><td>총사업비</td><td colspan="3">452억 6,200만원</td></tr>
<tr><td rowspan="2">재원배분계획</td><td>연도</td><td>2027년</td><td>2028년</td></tr>
<tr><td>금액</td><td>452억 6,200만원</td><td>-</td></tr>
<tr><td>물량</td><td colspan="3">140실(2개동 70실)</td></tr>
<tr><td colspan="2">내부 조감도</td><td colspan="2">외부 조감도</td></tr>
<tr><td colspan="2"> </td><td colspan="2"> </td></tr>
</table>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만 「2027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시설물단가를 고려할 때 부대공사 할증지수가 높게 반영되었으며, 실제 공사종료기간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였다.

「2027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부대공사비 할증지수의 경우, 신축할 병영생활관에 대해서는 13%, 관사 및 간부숙소에 대해서는 15%, 취사식당에 대해서는 13%,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10%로 설정하고 있다.

[부대공사비 할증]

구분	세부내용	적용구분	할증지수
부대공사비 할증	병영생활관	신축시설	13%
	관사 및 간부숙소		15%
	취사식당		13%
	그 외		10%

자료:「2027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내 국방시설규모 기준

그런데 관사 및 간부숙소에 해당하는 예천기지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사업에서는 부대공사비 할증지수를 43%로 산정하여 시설기준이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산정되었다. 현재 시설면적 하에서 지침 상의 부대공사 할증지수를 적용하면, 약 71억원(= 25,362,610,000 × 0.28)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천기지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 공사비 산정근거]

(단위: ㎡, 천원, %)

구분	면적	단가(할증지수)	금액
간부숙소 신축(모듈러)	6,110	4,151	25,362,610
지역 및 지세할증		-	-
부대공사비율		43	10,985,561
제로에너지		5.89	1,493,858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602,189
지반보강비, 전기/통신인입비, 품질관리활동비,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및 시설패키지 설치비용			1,005,648
합 계			39,449,866

주: 단수조정 등으로 인하여 각 항목별 금액 및 그 합계액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또한 2028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그 해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총사업비 전액을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실제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천기지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 설계, 공사, 입주예상시점]

설계착수	설계종료	공사착수	공사종료	입주시작
’27. 2	’27. 7	’27. 10	’28. 7	’28. 8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최초로 사업비를 산정할 당시에는 모듈러형 숙소를 신축할 위치를 정하지 못하였기에 사업비 산정이 어려웠으며, 선행연구 결과[6](’26.10.) 총사업비가 436억 7,6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고 설명한다. 당초 총사업비 452억 6,200만원 전액을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인력의 추가투입을 통해서 가능한 한 2027년 연내에 신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듈러형 방식[7]을 채택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도, 해당 공법은 설계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단축시킬 수 있는 일정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설계와 모듈러형 숙소제작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두 작업 간 연계가 필요하며, 총사업비가 200억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전절차로 인하여 단축시킬 수 있는 공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설계 및 모듈러 설치과정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각종 기반설비와의 연결성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예상보다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선금으로 계약대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2027년 연내에 총사업비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천기지 조종교육생들이 거주하게 될 모듈러형 숙소의 신축 예산안이 적정한 규모로 산정되었는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6) 당초 예산안 산정에 적용한 기준 대비 부대공사비 할증이 감액되고 지역 할증이 추가로 반영되는 등 세부적인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

7) 국방부에 따르면, 기본설계 이후 곧바로 모듈러형 숙소 제작의뢰를 실시할 수 있기에 일반적인 건물 신축보다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듈러 제작과 실시설계 작업이 서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 간 논의를 진행하는 시간도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며, 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설비공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기를 추가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기단축을 이유로 엄체호의 구조를 유개형 리베트먼트로 적용하거나 정비격납고를 막구조로 건설하는 등 기존 군사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설구조가 도입되었으므로, 실제 작전수행 과정에서 문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임시배치 일정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물들의 공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설구조를 활용하여 예천·서산·중원기지에 군사시설물을 건설할 계획이다.

일례로 막구조는 원래 내구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군사시설물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국방예산안 작성지침 등에도 막구조에 대한 시설물단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투기 등을 보관할 엄체호는 전투기 보호를 위하여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상부, 측면부, 후면부가 폐쇄형인 구조로 건설되어 왔다.

그런데 중원 및 서산에 건설될 정비격납고·기관정비고 등은 상부를 막으로 덮는 형태의 막구조를 적용할 예정이며, 예천·중원·서산에 건설될 엄체호는 상부만 덮개로 덮인 유개형 리베트먼트로 지어질 예정이다.

[격납고·정비고, 엄체호의 기존 및 신규 구조 대비표]

기존	신규
격납고·정비고(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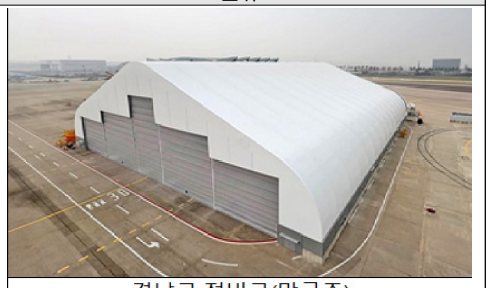 격납고·정비고(막구조)
엄체호	유개형 리베트먼트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막구조의 격납고·정비고에 대해서 민간항공사에서도 그와 같은 구조로 지어진 격납고·정비고를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으며, 유개형 리베트먼트에 대해서는 임시배치 종료 이후에는 다른 기지 소속의 전투기가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군사시설에 요구되는 내구도의 수준은 일반시설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며, 과거에 적용하지 않던 구조를 활용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식별될 수도 있으므로, 임시배치 기간 중에는 국방부 차원의 면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예정부지 내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예산안 분석

가. 현 황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1]은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시에 위치한 광주기지 영외탄약고를 現 광주 군 공항 인접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억 6,400만원 감액된 15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	5,000	5,000	1,536	△3,464	△69.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예정지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영외탄약고 이전예정지 내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주민들과의 협의 진행경과,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주대책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은 2006~2030년 동안 총사업비 3,264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광주 상무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영외탄약고를 현재 광주 군 공항 인접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2009~2015년 2월까지 이전예정부지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131-341

[(메가프로젝트 추진 이전)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계획]

주: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영역(광주군공항 625만㎡와 탄약고 이전 예정지 195만㎡)이 현재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예정부지로 지정되었음
자료: 국방부

그런데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공항 인접부지로의 영외탄약고 이전이 중복투자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당시 국방부는 이전예정부지에 대한 공사착공을 중단하였다. 그 이후 잠정보류되었던 공사가 재개된 것은 2020년으로,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되더라도 이미 매입한 토지에 대한 부지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개시하여 2023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전사업의 재개와 함께, 이전예정부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도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 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을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방부는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의 시행자로서 이전예정부지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외탄약고 이전예정부지에 거주하던 주민 146세대와 이주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그 중 82세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64세대와는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영외탄약고 이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최근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을 발표하면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부지로 현재 광주 군 공항 부지 및 그 인접부지(영외탄약고 이전예정부지)를 지정하였

기에, 영외탄약고 이전예정부지 내 주민 64세대와 이주대책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어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를 고려하여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안 15억 3,600만원(건설보상비)을 편성하였다.

다만 건설보상비의 집행을 위해서는 이주대책에 대하여 주민들과 합의를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 주민들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국방부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전예정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기존에는 현재 영외탄약고가 위치한 마륵동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희망하였으나, 최근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인근에 이주단지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영외탄약고 이전예정부지가 반도체클러스터 예정부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주대책 합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문제를 승계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주대책 협의주체가 국방부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될 경우, 법적 권리의무관계는 승계될 수 있으나 국방부 소관의 세출예산은 승계되지 못한 채로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으며, 협상 주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우려도 있다.

한편 잔여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시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는데, 영외탄약고 이전이라는 국가정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미 이주한 82세대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국방부가 건설보상비를 통해서 이주단지 조성 또는 이주정착금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해당 주민들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예정부지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법적 권리의무관계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되더라도 국방부 소관 예산은 승계되지 않은 상태로 불용처리될 것이며, 협상주체의 변경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병무청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병무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 7,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4,300만원(42.8%) 증가하였다.

[2027년도 병무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12	334	334	477	143	42.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병무청

병무청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5,249억 3,2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1억 1,000만원(1.4%) 증가하였다.

[2027년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61,038	517,822	517,822	524,932	7,110	1.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병무청

한편, 병무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병무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동원훈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이 전담하기 위하여 병무행정시스템 내 동원훈련Ⅱ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② 병역면탈 단속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 분석의 대상을 확대하고, ③ 정부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국외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2027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에이전틱 AI기반 상담·민원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와 개인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나, 사업계획 상 AI를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 등을 구현할 계획이므로 이와 관련한 우려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업체에게 학사관리를 위탁하는 사회복무요원교육(새롬교육)은 대상인원을 과소추계할 경우, 동일한 복무규정 재위반자임에도 동일한 지도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거 복무규정 위반횟수 현황과 2027년도 나래교육 개편안에 따른 영향 등을 참고하여 교육인원 추계를 면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병무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1]을 살펴보면 현역병 모집, 현역병 입영 등이 있다. ① 현역병 모집사업은 대구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청사이전을 위하여 증액되었고, ② 현역병 입영사업은 병역이음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병무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1]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현역병 모집	2,311	2,311	2,670	359	15.5
	현역병 입영	358	358	415	57	15.9

주: 1. 총계 기준
자료: 병무청

1) 병무청의 경우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된 사업들을 주요 증액사업으로 보았다.

Ⅱ 주요 사업 분석

1 에이전틱 AI기반 상담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가. 현 황

병무행정정보화 사업[1]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모집,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관리,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모든 병무행정 업무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3,800만원 감액된 123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병무행정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병무행정정보화	12,799	16,005	16,005	12,367	△3,638	△22.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에이전틱 AI기반 상담·민원신청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One-Stop 민원서비스와 개인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사업계획 상 AI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 등을 구현할 계획이므로 이와 관련한 우려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138-501

병무청은 에이전트 기반의 맞춤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병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에이전틱 AI기반 상담·민원신청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에이전틱 AI기반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병무청 챗봇 '아라'는 시나리오 기반의 답변체계를 갖고 있어서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복합민원의 처리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일상언어에 기반한 질문에 대해서 미응답하거나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에이전틱 AI기반 상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업무프로세스 기준)]

자료: 병무청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는 19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연구비 10억 5,900만원과 HW 및 SW 구매비용 8억 7,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에이전틱 AI기반 상담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2027년도 예산안
에이전틱 AI기반 상담·민원신청시스템 구축	일반연구비	1,059
HW·SW구매	자산취득비	873
합 계		1,932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HW 및 SW 구매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중화구성을 위한 SSO 솔루션, DRM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H200급 GPU 추론서버 2대를 구매하기 위하여 7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다.

[에이전틱 AI기반 상담사업의 HW 및 SW 구매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수량	단가	2027년도 예산안
SW	SSO 솔루션	이중화구성	2식	25	50
	DRM(epagesafer)		2식	25	50
	DRM(file)		2식	25	50
HW	GPU 추론서버	H200급(2GPU, Node)	2대	362	723
합 계					873

자료: 병무청

병무청[2]은 에이전틱 AI기반 상담시스템을 통해서 의도와 맥락을 이해한 지능형 상담을 구현할 수 있으며, 상담의도를 파악한 One-Stop 민원신청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병역의무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개인별 병역이행 흐름에 따른 차별화된 로드맵(통지서, 입영알림 등)을 제공하고, 학력이나 전공, 자격/면허 등 개인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병역이행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한다.

2) 병무청에 따르면, 개인별 병역상황에 따른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의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에이전틱 AI기반 상담시스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세부내용
상담 고도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민원상담체계 전면 개편	- 병무특화 학습체계(RAG)를 구축하여 정확한 근거 기반의 답변 제공[1)] - 대형언어모델(LLM) 기반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한 지능형 상담 구현
민원상담·신청	상담의도를 파악한 One-Stop 민원신청 처리체계 구축	- 상담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민원을 식별하는 무인 민원처리 체계 마련 - 에이전틱 AI 민원신청 및 처리 결과까지 일괄 서비스 구축[2)]
개인화 서비스	상담이력 기반 병역이행 로드맵, 맞춤정보 제공	- 개인별 병역이행 흐름에 따른 차별화된 로드맵(통지서, 입영 알림 등) 제공 - 개인특성(학력, 전공, 자격/면허 등) 분석을 통한 맞춤 병역이행 추진

주: 1) LLM, RAG 및 Vector DB 등 병무청 자체 AI를 구축하고, 챗봇 시나리오(약 2,500건) 및 병역 관련 법령·훈령·예규 등 학습자료 활용
2)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현역병 입영신청 등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만 실질적인 의미의 One-Stop 민원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틱 AI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대행근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시너지효과를 통한 체감성과의 제고를 위해서 현재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와의 연계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병역의무자들의 편의성을 위하여 자연어 기반의 질의가 가능한 에이전틱 AI 상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은 있으나, 해당 시스템의 최종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첫째, One-Stop 민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틱 AI가 병역의무자의 민원처리과정에 직접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민원인의 의사를 에이전틱 AI가 대행할 수 있는지와 에이전틱 AI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에이전틱 AI가 구축된다면 자연어 기반의 질의를 통해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유형을 식별하여, 민원양식,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나, 단순 안내, 정보제공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One-Stop 민원신청 처리체계 구축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질적인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민원신청부터 처리결과 알림까지 민원처리의 전 과정에 에이전틱 AI가 개입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에이전틱 AI가 민원인의 민원신청행위를 대행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신청 등 민원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행정과 달리, 병무행정은 그 처리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민원처리과정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에이전틱 AI를 통해 확인된 민원인의 의사가 실제 민원인의 의도와 동일한지, 민원인이 해당 민원의 내용 및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였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민원인의 행위대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정보시스템과 달리 AI는 민원인의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에이전틱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에이전틱 AI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게 될 경우, 민원인이 직접 입력하였거나 병무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 처리범위 및 보유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실제 민원업무에 필요한 사항만을 에이전틱 AI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른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연계시스템의 접근권한에 대한 철저한 통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면서 맞춤형 병역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에이전틱 AI가 제공할 개인별 병역설계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하고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정보제공,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는 곳으로서, 현재 11개소[3]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① 직업선호도검사, ② 병역진로상담, ③ 설명회, ④ 군보급품전시 및 군장비 모의체험 등 4개의 프로그램을 병역의무자 및 일반인에 제공하고 있다.

3)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창원, 인천, 의정부센터가 있다.

[병역진로설계 내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 내용	대상자
직업선호도검사	- 직업-흥미유형검사(204문항) ※ 검사 결과 6개 흥미 유형으로 분류, 유형별 군 특기 매칭	입영대상자
병역진로상담	- 직업선호도검사결과 활용 전문상담관 군 특기 추천 및 개별 심층 상담	입영대상자
병역이행설명회	- 병역판정검사-입영 등 병역이행과정 안내 - 군 생활 및 자기개발 등 정보제공	병역의무자, 부모, 학생 등
군 적응 전시·체험	- 군보급품 전시체험 (생활관, 전투복, 전투식량 등) - 군장비 모의체험 (레이저 사격, 해군 입체작전 VR장비 등)	병역의무자, 부모, 학생 등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센터에서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은 직업선호도 검사와 전문상담관과의 상담을 통해서 군 특기를 추천하는 등 에이전틱 AI가 제공할 개인화 서비스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두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필요도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에이전틱 AI기반 상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One-Stop 민원처리 및 개인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에이전틱 AI가 병무민원처리과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의사를 대신 표현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우려사항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사업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무요원 지도교육 계획인원에 대한 면밀한 추계 필요

가. 현 황

사회복무요원교육 사업[1]은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의식 및 봉사정신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200만원 감액된 45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교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복무요원교육	4,215	4,635	4,635	4,543	△92	△2.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외부업체에게 학사관리를 위탁하는 사회복무요원교육(새롬교육)은 계약시점에 적용할 교육계획인원 대비 실제 교육필요인원이 많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병무청은 2027년도 새롬교육의 계획인원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병역법」 제33조의2[2]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기본교육(이하 '기본교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434-319

2)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

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이하 '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자세, 책임의식 등을 함양하고, 복무규정위반자 등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수료해야 하는 기본교육과 복무규정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나래교육, 새롬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2026년까지 기본교육, 새롬교육은 4박 5일, 나래교육은 2박 3일로 운영되었으나, 2027년부터는 나래교육의 기간도 4박 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복무규정 최초 위반자에 대한 교육인 나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재위반율을 감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병무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 대상 기본 및 지도교육 기간·교육대상]

구분	과정명	기간		교육대상
		2026년	2027년	
기본	기본	4박 5일		모든 사회복무요원
	디딤	2박 3일		사회복무요원 대표, 10개월 이상 성실복무자, 미래설계·진로탐색 교육 희망자
지도	나래	2박 3일	4박 5일	- 복무규정 위반자 - 「병역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새롬	4박 5일		- 복무규정 반복 위반자 - 「병역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그 외 지방병무청장이 추천한 자 등
	이음	2박 3일		- 현역복무부적합자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로 2021~2026년 나래 및 새롬교육 수료인원의 복무규정 재위반율을 살펴보면, 매년 새롬교육의 재위반율이 나래교육의 재위반율보다 높다. 특히 2022년과 2025년에는 두 교육과정의 재위반율 차이가 각각 15.2%p, 14.8%p로 나타나는 등 두 교육의 성과달성도가 상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래 및 새롬교육 수료인원의 복무규정 재위반율]

(단위: %, %p)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8월 말)
나래(A)	16.7	16.3	20.1	21.3	15.6	16.2
새롬(B)	23.4	31.5	29.6	30.6	30.4	23.7
B-A	6.7	15.2	9.5	9.3	14.8	7.5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복무규정 최초위반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재위반율을 낮추고자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개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2026년 10월에 시범운영 후 202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나래교육 프로그램 개편계획(안)]

구분	2026년	2027년	개선 내용
교육기간	2박3일(16.5h)	4박5일(32.5h)	충분한 라포형성, 자기 성찰 및 피드백 시간 확보
강의/참여	50%/50%	20%/80%	참여형 교육 및 코칭 확대
심리상담[1)]	전체의 30% 수준	전 교육생	복무위반 원인 등 심리상담 강화
모듈	단순병렬식 (인지 → 자기회복)	행동변화모델 (인지 → 실천)	복귀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행동 탐색, 내재화·행동변화

주: 1) 상담결과를 복무지도관과 공유하여 복무관리에 활용
자료: 병무청

이와 동시에, 병무청은 2027년도 나래교육의 계획인원을 200명 증원(800명 → 1,000명)하였고, 나래교육 프로그램 개편 및 계획인원 확대에 따라 복무규정 재위반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7년도 새롬교육의 계획인원을 200명 감원(400명 → 200명)하였다.

[2023~2027년 나래 및 새롬교육 인원현황]

(단위: 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계획
나래	520	507	520	563	800	706	800	1,000
새롬	400	399	400	425	400	378	400	200

자료: 병무청

다만, 새롬교육은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업진행, 학사관리를 외부 업체에게 맡기고 있는데, 실제 교육필요인원이 계약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액 부족을 이유로 새롬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2021~2025년 동안 복무규정 위반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이상 위반자의 수는 매년 650명 이상이었는데, 이는 2027년도 새롬교육 계획인원 200명 보다 450명 이상 많다.

[복무규정 위반 횟수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8월 말)
1회	913	1,016	919	829	765	466
2회	293	340	305	240	224	146
3회 이상	405	615	641	503	434	279
합계	1,611	1,971	1,865	1,572	1,423	891

주: 복무위반 발생시기와 교육시기가 다를 수 있음
자료: 병무청

나래교육은 수업진행, 학사관리 등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전체를 병무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새롬교육은 수업진행, 학사관리 등 일부 업무를 외부 업체에게 위탁하고 있기에 계획인원의 추계가 중요하다. 병무청에서 추계한 계획인원에 비례하여 업체의 투입인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새롬교육 필요인원이 계획인원을 큰 폭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상의 이유로 새롬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은 동일하게 새롬교육을 받는 것이 교육을 통한 성실복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도교육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상의 사유로 새롬교육의 대상임에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은 과거 복무규정 위반횟수 현황과 2027년도 나래교육 개편안에 따른 영향 등을 참고하여 반복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롬교육의 계획인원 추계를 면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
(245-303 비공개)

예산안분석시리즈 Ⅳ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058-6224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506-10
ISSN 3058-6224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